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신청업무 매뉴얼

기업용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신청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신청업무 매뉴얼』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제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라 한다)」 별표 2(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별표 3(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별표 4(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신고인의 애로사항 해소 및 신고 절차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본 지침은 화학제품안전법 및 고시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며,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신청하는 품목의 다양한 환경조건과 유형을 모두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화학제품안전법 및 고시 상에서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상의 해석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나, 업무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잠정 규정한 것이므로, 향후 지침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내용 중 화학제품안전법과 고시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조항과 상충이 되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 원칙, 신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적용하며, 화학제품안전법 또는 고시가 개정된 경우에는 본 지침의 내용도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 또는 고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Contents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위한 기업회원 등록, 일반회원 등록과 신고 사항 등은 Chemp 화학제품관리 시스템(http://chemp.me.go.kr) 및 생활화학제품 고객지원센터(☎문의: 1800-049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2019년 4월말 제작되어 화학제품안전법 및 고시 개정에 따라 2020년 6월초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개요

1. 용어의 정의 6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 9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절차 10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도안 예시 10
5. 시스템 소개 11

Ⅱ.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기업회원과 일반회원 가입 안내

1. 기업회원 가입 안내 14
가. 기업회원 신청 자격 ····· 14
나. 기업회원 업무 범위 ····· 14
다. 기업회원 가입 절차 ····· 14
라. 기업회원 가입 신청 반려 및 등록 해지 ····· 17

2. 일반회원 가입 안내 17
가. 일반회원 정의 및 업무 범위 ····· 17
나. 일반회원 가입 방법 ····· 18
다. 기업회원이 일반회원 지정 등록 방법 ····· 18
라. 기업 내 실무 직원이 일반회원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 ····· 20
마. 기업 내 직원이 일반회원으로 직접 신청 시, 승인처리 방법 ····· 21
바.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관리 ····· 23

Ⅲ.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수정보완·증명서 발급

1.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 26
가.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일반사항 ····· 26
나.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서 작성 ····· 26

2.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73
가.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요청 메일 확인 ····· 73
나.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내용 확인 ····· 74
다.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 77

3.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확인 및 활용 80
가.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검토 단계 메일 확인 ····· 80
나.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메일 확인 ····· 80
다.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의 준수사항 ····· 83

Ⅳ. 파생제품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수정보완·증명서 발급

1. 파생제품 신고 신청 88
가. 파생제품 신고 신청 일반사항 ····· 88
나. 파생제품 신고 신청 ····· 89

2. 파생제품 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100
가. 파생제품 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요청 메일 확인 ····· 100
나. 파생제품 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내용 확인 ····· 101
다. 파생제품 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 103

3. 파생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확인 및 활용 106
가. 파생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검토 단계 메일 확인 ····· 106
나. 파생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메일 확인 및 활용 ····· 106

Ⅴ. 안전기준적합확인 변경신고

1. 대표제품 또는 파생제품의 변경신고 신청 112
가. 변경신고 신청 일반사항 ····· 112
나. 변경신고 대상 ····· 113
다. 변경신고 신청 ····· 114

2. 변경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126
가. 변경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요청 메일 확인 ····· 126
나. 변경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내용 확인 ····· 127
다. 변경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및 제출 ····· 128

3. 변경신고증명서 발급 확인 및 활용 130
가. 변경신고증명서 발급 검토 단계 메일 확인 ····· 130
나. 변경신고증명서 발급 메일 확인 및 활용 ····· 130

Ⅵ.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영문증명 신청 136

2. 자유판매증명신청서 접수·검토 및 발급 136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개 요

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개요

1. 용어의 정의

가.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

나.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2호)

다.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3호)

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4호)

마. **"유해생물"**이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생물을 말한다.(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5호)

바.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6호)

사.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7호)

아.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8호)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자.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9호)

차.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0호)

-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카. **"품목"**이란 고시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고시 제2조제1호)

타.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고시 제2조제2호)

파.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고시 제2조제3호)

하.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생산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시 제2조제4호)

갸. **"확인받으려는 자"**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한정된다.(고시 제2조제5호)

ⅰ) 제품의 기획·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여 자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 (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

ⅱ)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자

냐.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고시 제2조제6호)

댜.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고시 제2조제7호)

랴.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래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시 제2조제8호)

먀.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고시 제2조제9호)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고시 별표 1)

분류	품목	비고	처리기관
세정제품	세정제 / 제거제	확인 및 신고	시험검사기관 및 안전센터
세탁제품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광택코팅제 / 특수목적코팅제 / 녹 방지제 /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 접합제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 인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살균제 / 살조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승인	국립환경과학원
구제제품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기피제	확인 및 신고	시험검사기관 및 안전센터
보존·보존처리 제품	목재용 보존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초 / 습기제거제 / 인공 눈 스프레이 /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승인	국립환경과학원

※ 파란색 표기 품목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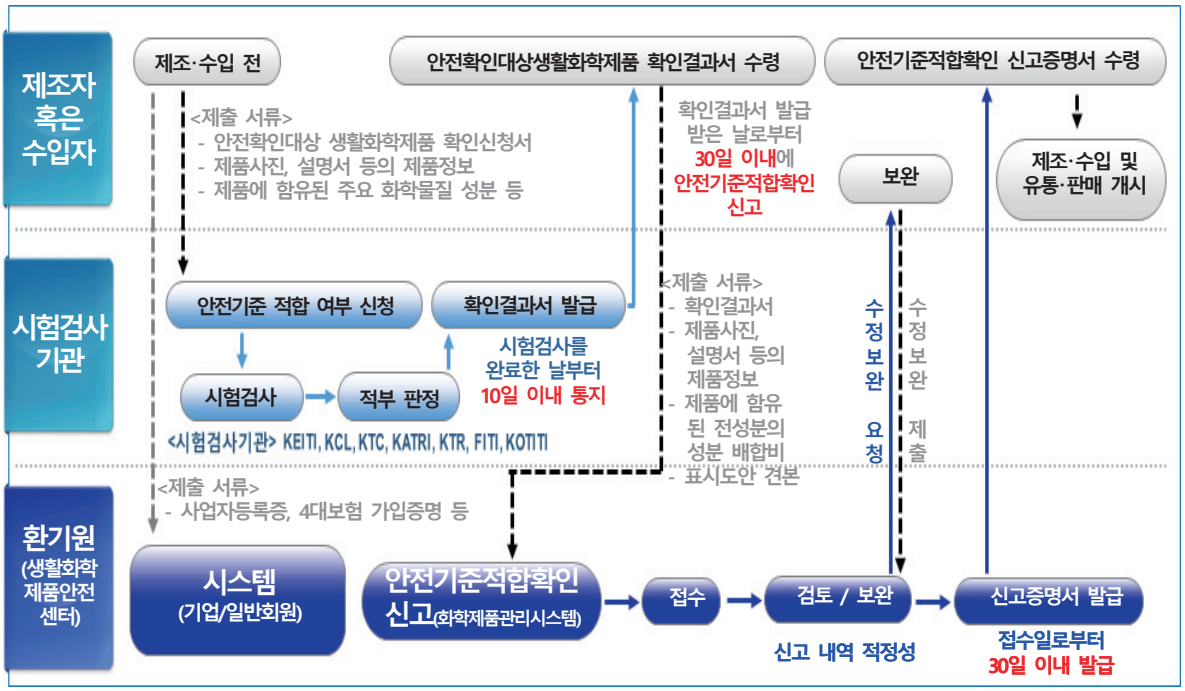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도안 예시(고시 별표 6. 부록 2)

1.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100 ㎠ 이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AA00-00-0000

·품목:섬유유연제 ·제품명:OO섬유유연제
·용도:의류·섬유용 ·제형:액체형
·제조연월:19.01. ·유통기한:21.12까지
·액성:약산성 ·중량:2.1L
·표준사용량:별도표시
·제조자, 주소, 연락처:(주)서울, 서울특별시 OOO, 02-000-0000
·판매자, 주소, 연락처:(주)서울, 서울특별시 OOO, 02-000-0000
·제조국명, 제조회사:대한민국, 코리안(Korean)

사용 물질
·주요물질:파라핀왁스, 폴리다이에틸실록산
·보존제:에탄올
·알레르기물질:아밀신남알
·계면활성제:아킬벤젠술폰산염(음이온계)
·기타물질:수산화나트륨, 이소프로필벤젠

사용 방법
·마지막 행궁시 넣어 주시고 다시 행구지 마십시오.
·보다 우수한 부드러움과 향긋한 향을 원하실 경우 사용량을 늘려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1.본 제품은 절대 먹지말 것 2. 세탁 이외의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말 것 3.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4. 계량시 눈에 튀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손세탁시 고무장갑 착용하고, 손이나 피부에 묻었을 경우 잘 씻어낼 것. 6. 세제액이 바닥에 묻어 있을 경우 미끄러질 위험 있으니 주의할 것. 7. 금속성분이 많은 지하수, 녹물 등으로 세탁할 경우 의류 손상 우려있으니 사용하지 말 것. 8. 세제가 세탁기 외부에 묻었을 경우 즉시 닦아낼 것.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AA00-00-0000

·품목:섬유유연제 ·제품명:OO섬유유연제
·용도:의류·섬유용 ·제형:액체형
·제조연월:19.01. ·유통기한:21.12까지
·액성:약산성 ·중량:2.1L
·표준사용량:별도표시
·제조자, 주소, 연락처:(주)서울, 서울특별시 OOO, 02-000-0000
·판매자, 주소, 연락처:(주)서울, 서울특별시 OOO, 02-000-0000
·제조국명, 제조회사:대한민국, 코리안(Korean)

사용 물질
·주요물질:파라핀왁스, 폴리다이에틸실록산
·보존제:에탄올
·알레르기물질:아밀신남알
·계면활성제:아킬벤젠술폰산염(음이온계)
·기타물질:수산화나트륨, 이소프로필벤젠

사용 방법
·마지막 행궁시 넣어 주시고 다시 행구지 마십시오.
·보다 우수한 부드러움과 향긋한 향을 원하실 경우 사용량을 늘려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1.본 제품은 절대 먹지말 것 2. 세탁 이외의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말 것 3.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4. 계량시 눈에 튀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손세탁시 고무장갑 착용하고, 손이나 피부에 묻었을 경우 잘 씻어낼 것. 6. 세제액이 바닥에 묻어 있을 경우 미끄러질 위험 있으니 주의할 것. 7. 금속성분이 많은 지하수, 녹물 등으로 세탁할 경우 의류 손상 우려있으니 사용하지 말 것. 8. 세제가 세탁기 외부에 묻었을 경우 즉시 닦아낼 것.

2. 표시면의 면적이 50 ㎠ ~ 100 ㎠에 표시하는 경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AA00-00-0000
·품목:섬유유연제
·제품명:OO섬유유연제
·주요물질:계면활성제, 안정화제, 산도조절제, 구연산
·제조자, 연락처:(주)서울, 02-000-0000

3. 표시면의 면적이 50 ㎠ 미만에 표시하는 경우

품목:
제품명:
신고번호: 0000

5. 시스템 소개

가. (사이트주소) http://chemp.me.go.kr

나. (운영근거) 화학제품안전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6호

다. (처리업무)

번호	업무 분야	처리기관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신청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청 접수 및 승인통지서 발급	국립환경과학원
ⓒ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 접수 및 승인통지서 발급	
ⓓ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접수 및 승인통지서 발급	
ⓔ	살생물물질 변경승인 신청 접수 및 승인통지서 발급	
ⓕ	살생물물질동등성 인정 신청 접수 및 승인통지서 발급	
ⓖ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접수 및 승인통지서 발급	
ⓗ	살생물제품 유사성 인정 신청 접수 및 인정통지서 발급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Ⅱ

화학제품관리 시스템 기업회원과 일반회원 가입 안내

II.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기업회원과 일반회원 가입 안내

1. 기업회원 가입 안내

가. 기업회원 신청 자격

ⅰ) 기업회원의 신청 자격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하며, 이 경우 제조자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제품의 기획·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여 자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

2)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자

ⅱ) 해당 기업이 본사와 공장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기업회원은 본사 또는 공장, 부설연구소 등의 부서 구분에 관계없이 기업을 대표하는 자를 등록할 수 있으나, 기업정보는 본사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기업회원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 본사 인사담당의 확인이 필요

나. 기업회원 업무 범위

ⅰ)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기업 정보의 변경 신청

2) 일반회원을 관리(등록, 승인, 삭제)에 관한 사항

3) 법에 따른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 문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ⅱ) 기업회원으로 등록자는 신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1인 사업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다. 기업회원 가입 절차

ⅰ)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초기화면에서 "기업등록"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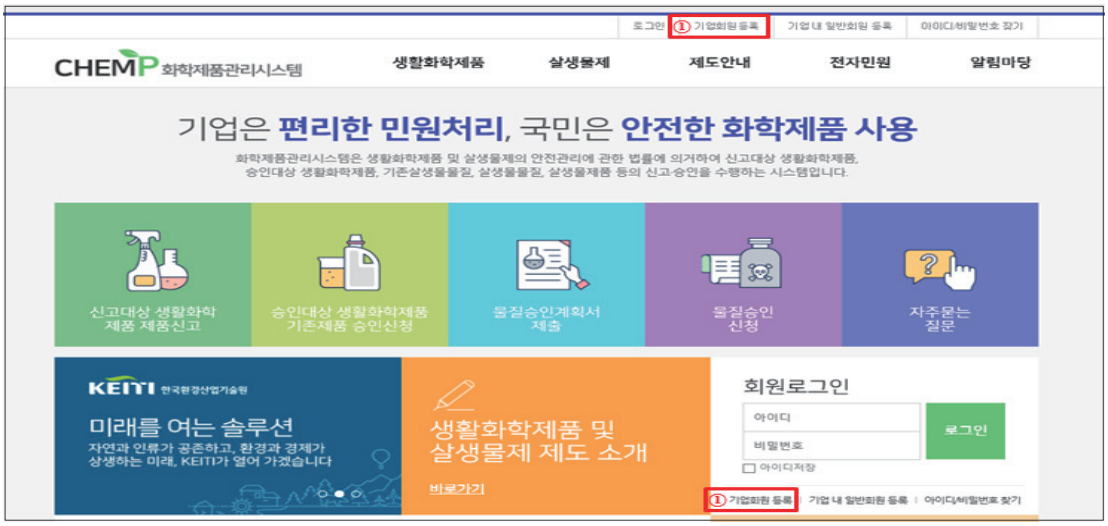

ii) 기업회원 가입신청서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필수 입력사항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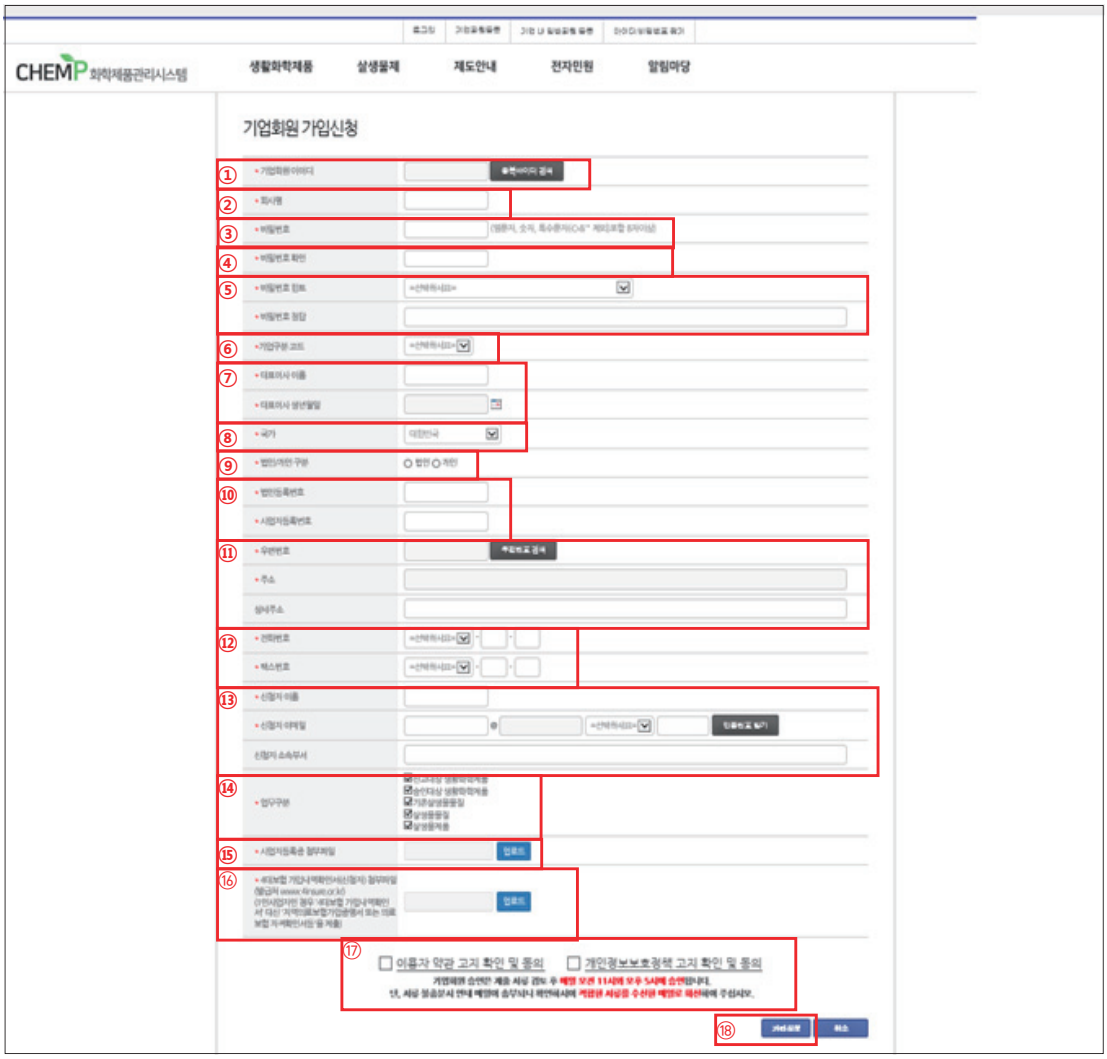

※ 작성항목 중 붉은 색으로 " * "가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번호	작성항목	작성방법
①	* 기업회원 아이디	○"중복아이디 검색"을 눌러 사용할 아이디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아이디 중복확인 결과 "사용가능한 아이디입니다."란 메시지가 표시되면 "사용"을 클릭합니다.
②	* 회사명	○회사명은 한글로 입력합니다.
③	* 비밀번호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 %, ', " 제외)"를 포함하여 8자 이상으로 설정하여 입력합니다.
④	*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입력 사항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⑤	* 비밀번호 힌트, * 비밀번호 정답	○"비밀번호"가 연상될 수 있도록 "힌트" 와 "정답"을 설정하여 입력합니다.
⑥	* 기업구분 코드	○"대기업, 다국적기업, 중소기업" 중 어느 하나의 구분을 선택합니다.
⑦	* 대표이사 이름, * 대표이사 생년월일	○대표이사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⑧	* 국가	○고시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제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선택합니다. ○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위치해 있는 국가를 선택합니다.
⑨	* 법인/개인 구분	○회사의 형태가 법인회사인지 개인회사인지를 선택합니다.
⑩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아래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⑪	* 우편번호, * 주소, * 상세주소	○"우편번호 검색"을 눌러 도로명과 지번 검색 방법을 선택하여 주소 검색 후 해당하는 주소를 클릭합니다.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⑫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전화번호는 기업의 대표 전화번호가 아닌 기업회원을 등록하는 자의 직통 번호를 입력합니다. ○팩스번호는 기업의 대표 팩스번호가 아닌 기업회원을 등록하는 자가 주로 사용하는 팩스번호를 입력합니다.
⑬	* 신청자이름, * 신청자 이메일, * 신청자 소속부서	○기업회원을 등록하는 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업회원을 등록하는 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하여 인증절차를 수행합니다. ○기업회원을 등록하는 자가 근무하는 소속부서명을 입력합니다.
⑭	* 업무구분	○신청 기업에 소속된 일반회원이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 체크합니다.
⑮	* 사업자등록증 첨부	○기업회원을 신청하는 자가 소속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자의 기업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⑯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기업회원으로 신청하는 자가 해당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1인 기업'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의료보험 자격확인서, 대표이사의 신분증 등"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⑰	이용자 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의 고지 확인 및 동의	○"이용자 약관 고지 확인 및 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고지 확인 및 동의" 사항을 각각 클릭하여 읽어 보신 후, 해당 체크 박스에 체크 합니다.
⑱	가입 신청	○"① ~ ⑰"까지 정보의 누락 및 오 표기 사항이 없는 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가입신청"을 클릭합니다.

iii) 기업회원 신청 승인은 제출 서류 검토 후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5시에 승인이 되며, 신청 내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안내 메일이 송부되니 메일 내용을 확인하여 메일로 회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일반회원 이름, 비밀번호 힌트 및 정답,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등'의 수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보완을 완료한 후 메일을 통해 보완을 완료하였음을 회신하여야 합니다.

2) 안내메일 확인결과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에 대하여 다시 업로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해당 파일을 다시 업로드한 후 기술원을 기업관리자 승인 담당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iv) 'iii)'항에 따른 신청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가입 신청 제출일로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72시간(3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라. 기업회원 가입 신청 반려 및 등록 해지

ⅰ) 기업회원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장은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기업회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와 동일 기업이 아닌 경우

2) 기업회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주문자 생산방식(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의 수탁자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3) 기업회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직원인 경우

ⅱ) "ⅰ)"항에 따라 기업회원 등록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장은 반려 또는 등록 해지 사유를 고지한 후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일반회원 가입 안내

가. 일반회원 정의 및 업무 범위

ⅰ) "일반회원"이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자와 동일한 기업(지사 및 연구소 포함)에 소속된 자로서,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ii) 일반회원의 업무범위는 "생활화학제품 신고, 생활화학제품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 등" 하나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며, 시스템을 통한 신고 또는 승인 신청의 주체가 됩니다.

나. 일반회원 가입 방법

i) "기업회원"을 등록한 자가 기업 내 실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일괄 등록하거나, 기업 내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일반회원으로 신청토록하여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ii)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1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회원 가입을 하지 아니하고, "생활화학제품 신고, 생활화학제품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 등'의 신고 또는 승인에 대한 신청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 기업회원이 일반회원을 지정하여 등록 방법

i)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시스템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의 "①알림마당"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타나는 "②일반사용자 관리"을 클릭합니다.

ii) 화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면 "①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iii) 화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면 번호 순서대로 아래의 사항을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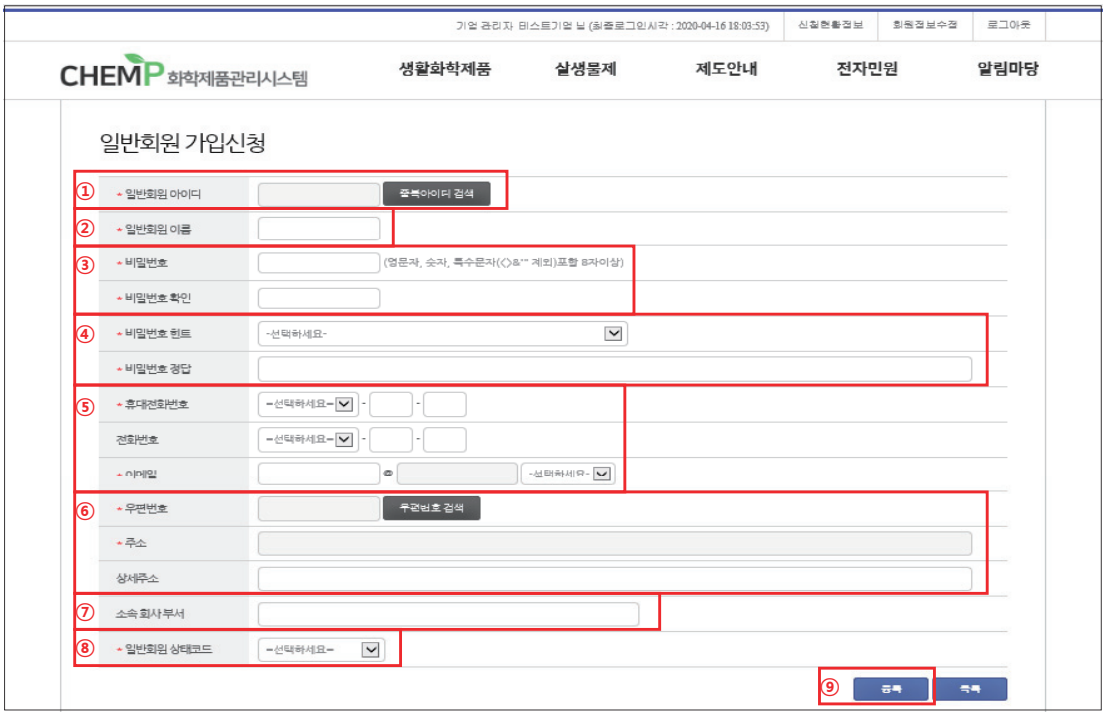

※ 작성항목 중 붉은 색으로 " * "가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번호	작성항목	작성방법
①	* 일반회원 아이디	ㅇ"중복아이디 검색"을 눌러 사용할 아이디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ㅇ아이디 중복확인 결과 "사용가능한 아이디입니다."란 메시지가 표시되면 "사용"을 클릭합니다.
②	* 일반회원 이름	ㅇ일반회원 아이디를 사용할 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③	* 비밀번호, * 비밀번호 확인	ㅇ일반회원 아이디를 사용할 자가 이용하는 비밀번호를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 %, ', " 제외)"를 포함하여 8자 이상으로 설정하여 입력합니다. ㅇ"비밀번호" 입력 사항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④	* 비밀번호 힌트, * 비밀번호 정답	ㅇ"비밀번호"가 연상될 수 있도록 "힌트" 와 "정답"을 설정하여 입력합니다.
⑤	*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 이메일	ㅇ일반회원 아이디를 사용할 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ㅇ일반회원 아이디를 사용할 자의 직통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ㅇ일반회원 아이디를 사용할 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⑥	* 우편번호, * 주소, 상세주소	ㅇ일반회원 아이디를 사용할 자가 근무하는 주소를 '우편번호 검색'을 눌러 도로명과 지번 검색 방법을 선택하여 주소 검색 후 해당하는 주소를 클릭합니다. ㅇ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⑦	소속회사 부서	ㅇ일반회원 아이디를 사용할 자가 근무하는 부서명을 입력합니다.
⑧	* 일반회원 상태코드	ㅇ일반회원 상태코드를 "회원 가입 승인 상태"로 설정합니다.
⑨	등록	ㅇ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① ~ ⑧"까지 정보가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작성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등록"을 클릭합니다.

라. 기업 내 실무 직원이 일반회원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

ⅰ)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기업 내 실무를 담당할 부서에 "문서, 이메일, 전화 등"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일반회원 가입 신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ⅱ) 기업 내 실무 담당 부서는 "생활화학제품 신고, 생활화학제품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 등" 하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실무 담당자를 정하여 일반회원으로 신청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회원 신청 인원은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의 재량에 맡깁니다.

ⅲ) 일반회원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초기화면에서 "①기업 내 일반회원 등록"을 클릭합니다.

ⅳ) 일반회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 및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필수 작성 정보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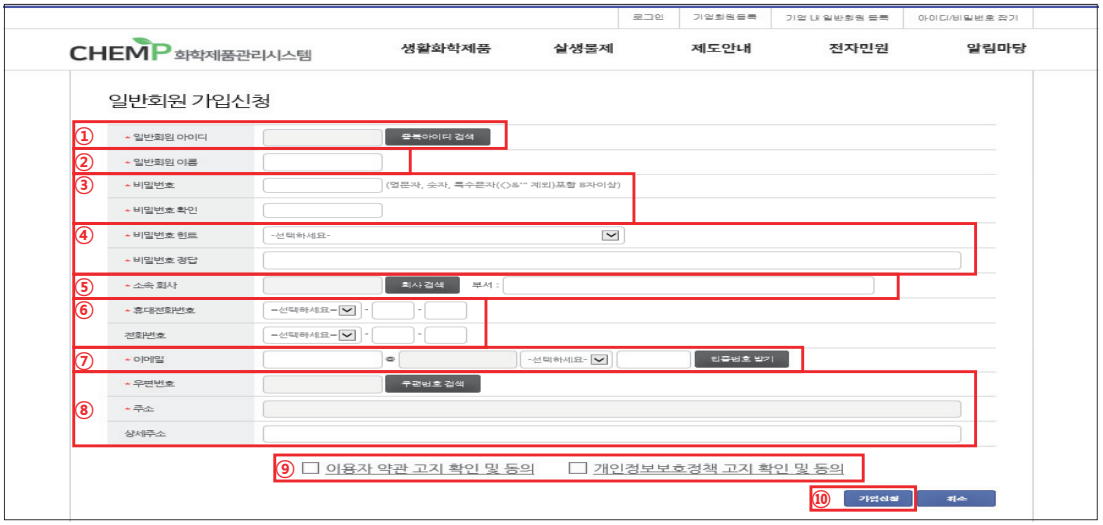

※ 작성항목 중 붉은 색으로 " * "가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번호	작성항목	작성방법
①	* **일반회원 아이디**	ㅇ"중복아이디 검색"을 눌러 사용할 아이디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ㅇ아이디 중복확인 결과 "사용가능한 아이디입니다."란 메시지가 표시되면 "사용"을 클릭합니다.
②	* **일반회원 이름**	ㅇ일반회원 아이디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③	* **비밀번호,** * **비밀번호 확인**	ㅇ일반회원 아이디를 신청하는 자가 사용할 비밀번호를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 %, ', " 제외)"를 포함하여 8자 이상으로 설정하여 입력합니다. ㅇ"비밀번호" 입력 사항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④	* **비밀번호 힌트,** * **비밀번호 정답**	ㅇ"비밀번호"가 연상될 수 있도록 "힌트" 와 "정답"을 설정하여 입력합니다.
⑤	* **소속회사,** **부서**	ㅇ"회사검색"을 클릭합니다. ㅇ사업자번호로 란에 기업등록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ㅇ'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맞는 경우 회사명을 클릭합니다. ㅇ일반회원 아이디를 신청하려는 자가 소속된 부서명을 입력합니다.
⑥	*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ㅇ일반회원 아이디를 신청한 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소속 부서의 직통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⑦	* **이메일**	ㅇ일반회원 아이디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ㅇ"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합니다. ㅇ"CHEMP"에서 수신된 이메일을 확인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⑧	* **우편번호,** * **주소,** **상세주소**	ㅇ일반회원 아이디를 신청하려는 자가 본사에 소속된 경우에는 본사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ㅇ일반회원 아이디를 신청하려는 자가 본사 이외의 장소(연구소, 지사 등)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를 입력합니다. ㅇ"우편번호 검색"을 눌러 도로명과 지번 검색 방법을 선택하여 주소 검색 후 해당하는 주소를 클릭합니다. ㅇ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⑨	**이용자 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의** **고지 확인 및 동의**	ㅇ"이용자 약관 고지 확인 및 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고지 확인 및 동의" 사항을 각각 클릭하여 읽어 보신 후, 해당 체크 박스에 체크 합니다.
⑩	**가입신청**	ㅇ일반회원 아이디를 신청하려는 자는 "① ~ ⑨"까지 정보가 누락된 사항이 없는 지, 작성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가입신청"을 클릭합니다.

v) 일반회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가입신청" 클릭 후,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에게 "문서, 이메일, 전화 등"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일반회원 가입 신청을 하였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마. 기업 내 직원이 일반회원으로 직접 신청 시,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의 승인 처리 방법

i)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시스템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의 "①알림마당"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타나는 "②일반사용자 관리"을 클릭합니다.

ii)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일반 사용관리 화면에서 가입상태 항목에 " 회원 가입 신청 상태"로 기재되어 있는 아이디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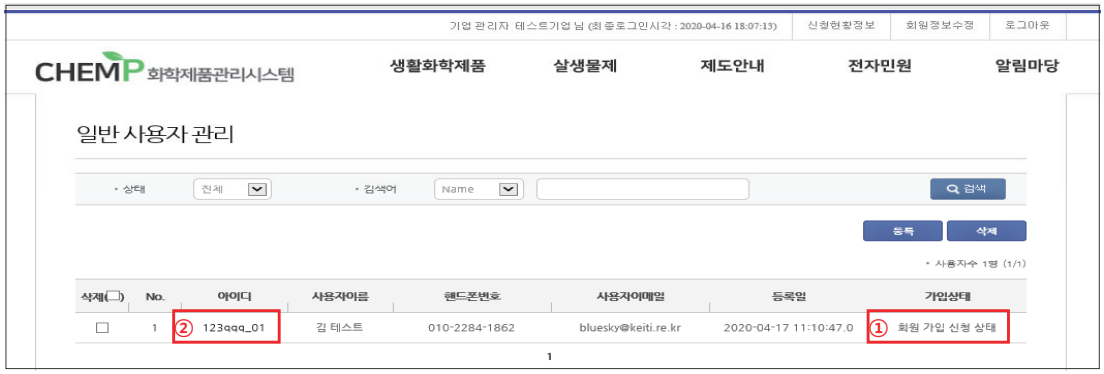

iii)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일반회원 상세조회(수정)" 화면에서 일반회원으로 신청한 자가 입력한 '①'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②일반 회원 상태코드"를 '회원 가입 승인 상태'로 변경하여 "②저장"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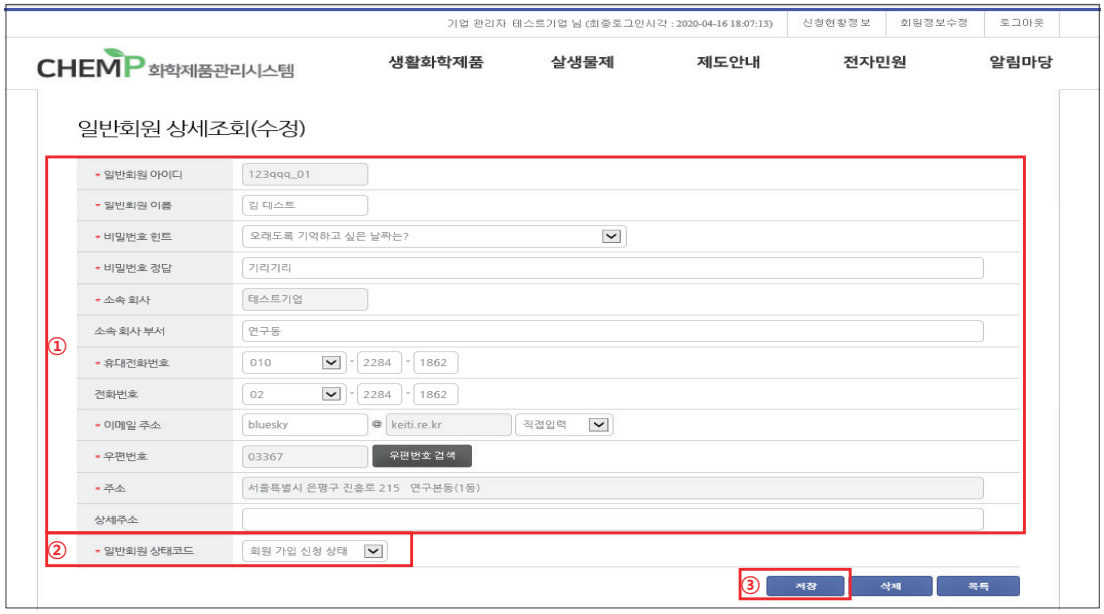

바.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관리

ⅰ) 일반회원 가입 신청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에게 모든 재량을 맡기며, 일반회원 관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장은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에게 일반회원 관리 주의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ⅱ)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퇴사, 부서이동 등'으로 더 이상 신고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의 직권으로 '①'의 해당 아이디를 선택하여 '②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Ⅲ

안전기준적합 확인 신고 신청·수정보완· 증명서 발급

Ⅲ.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수정보완·증명서 발급

1.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

가.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 일반사항

ⅰ)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가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ⅱ) "ⅰ)"항에 따른 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 신청이 접수된 날을 산입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수정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보완을 완료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보완 기간(7일)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수정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정보완 요청 공문이 발송되며, 추가 자료보완 기간(15일 이내)까지 수정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보완 기간 완료일 그 다음 날에 해당 신고 건이 반려됩니다.

ⅲ)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신고 업무를 처리하되,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ⅳ) 시스템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보완 요청, 증명서발급 요청, 증명서발급완료" 단계별로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의 메일로 안내 메일이 발송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시스템 작성 방법과 관련하여 유튜브(www.youtube.com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검색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재생목록)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대표제품 신고 중심) 신청서 작성

ⅰ) 신고의 주체

1) 신고인 정보는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고시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

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 또는 수입자를 말함)"와 동일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한정됩니다.

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여 자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자

2) "직접제조방식, OEM제조방식"에서 신고인이 되는 경우

가) 직접 제조하여 자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경우 : **제조자가 신고인**

나) 제품의 기획·설계(A사) 후 B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공급받아 A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경우 : **A사가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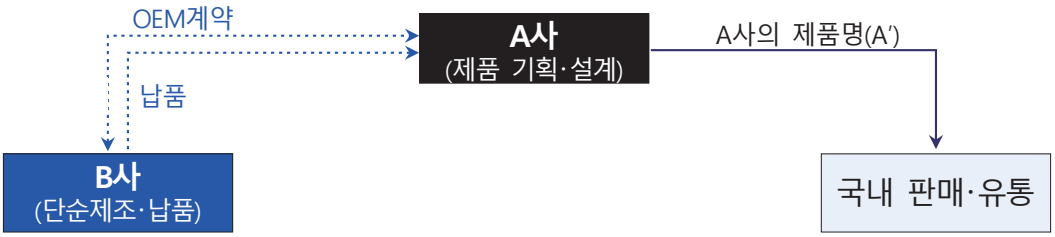

다) 제품의 기획·설계(A사) 후 B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C사를 통해 용기에 담아 포장한 제품을 공급받아 A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경우 : **A사가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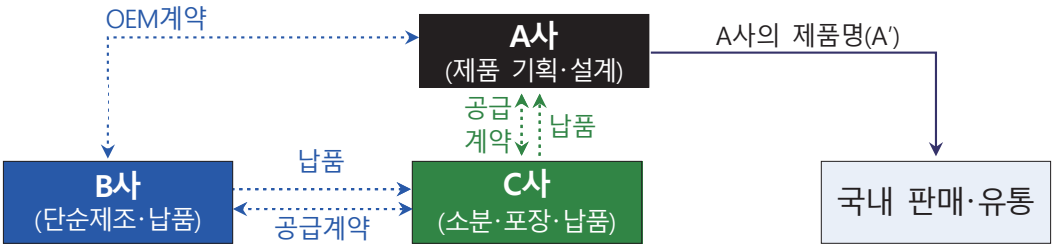

라) 제품의 기획·설계(A사) 후 B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공급받아 A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고, C사는 A 및 B사와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A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경우 : **A사가 신고인**

※ C사는 단순 판매자로 표시도안에 표시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 한함

마) 제품의 기획·설계(A사) 후 B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공급받아 A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고, C사는 A사 및 B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C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경우 : **A사가 신고인**

※ A사가 확인 및 신고의 주체가되나, A' 제품은 OEM으로 신고하고, C' 제품은 ODM 제조로 신고하여야 함

바) 제품의 기획·설계(A사) 후 B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공급받아 A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고, C사는 A사 및 B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제품을 납품받아 소분하여 C사의 상표를 부착한 후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경우 : **A사 및 C사 모두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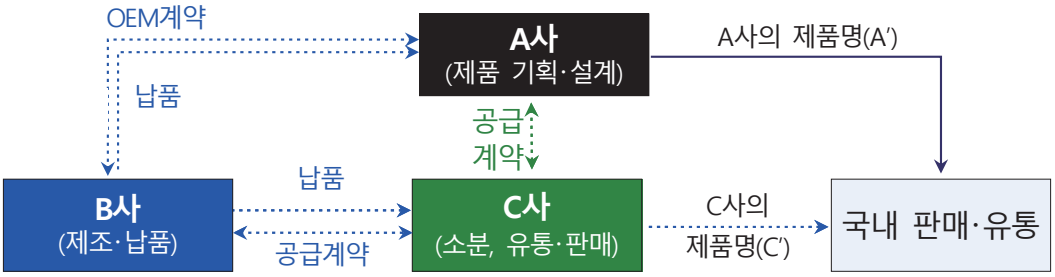

3) "ODM제조방식"에서 신고인이 되는 경우

가) 제품의 설계·개발·제조(B사)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아 A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하는 경우 : **B사가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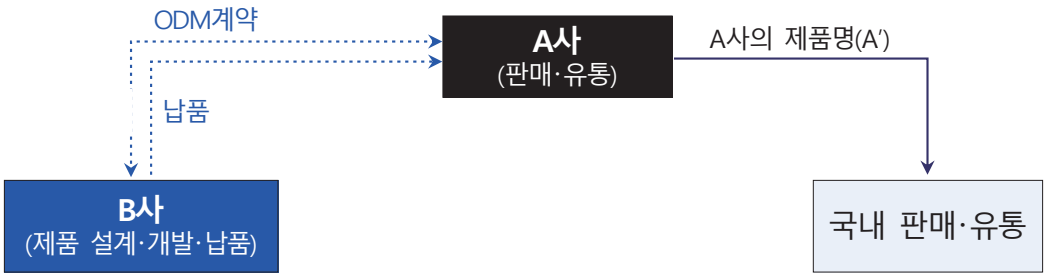

※ ㉠ 다만, 판매자 정보에 "A사"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A사 및 B사가 공동개발방식의 ODM 계약인 경우에는 A사 및 B사의 협의에 의해 A사가 신고인이 될 수 있음

나) 제품의 설계·개발·제조(B사)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아 C사를 통해 제품을 소분하고 A사의 상표를 부착 및 포장하여, A사가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경우 : **B사가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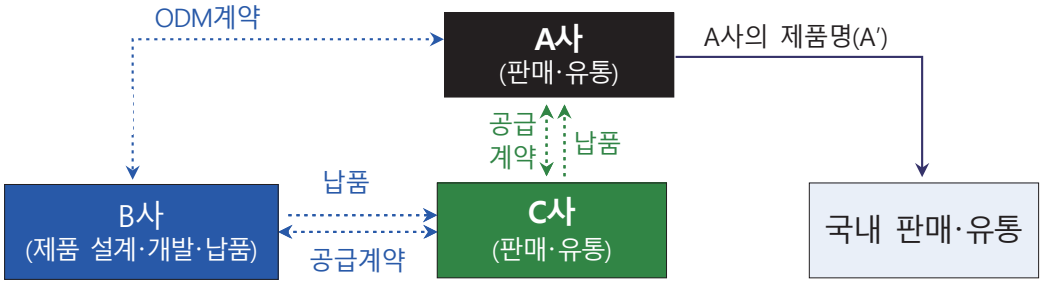

※ ㉠ 다만, 판매자 정보에 "A사"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A사 및 B사가 공동개발방식의 ODM 계약인 경우에는 A사 및 B사의 협의에 의해 A사가 신고인이 될 수 있음

다) A사 및 C사가 각각 제품의 설계·개발·제조(B사)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아 A사는 ODM 계약에 따라 A사의 제품명으로 판매하고 C사는 공급 제품을 소분하여 C사의 제품명으로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경우 : **B사 및 C사 모두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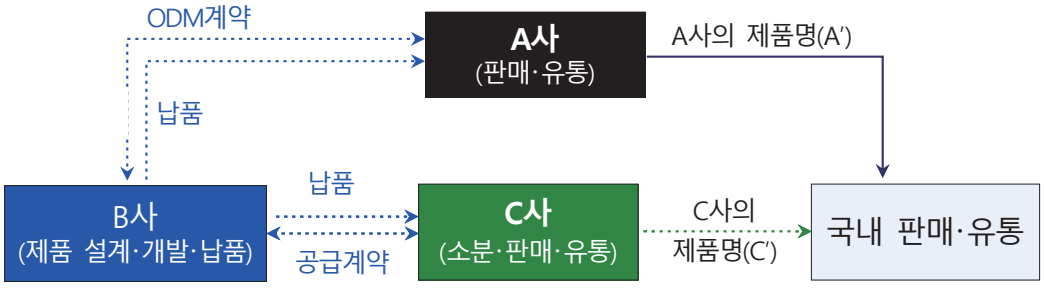

※ ㉠ 다만, B사는 판매자 정보에 "A사"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C는 "직접제조"로 신고하여야 함

라) 제품의 설계·개발·제조(B사)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아 A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하고 있는 제품을 C사 및 E사에서 B사와 ODM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C사 및 E사의 제품명을 부착하여 각각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경우 : **B사가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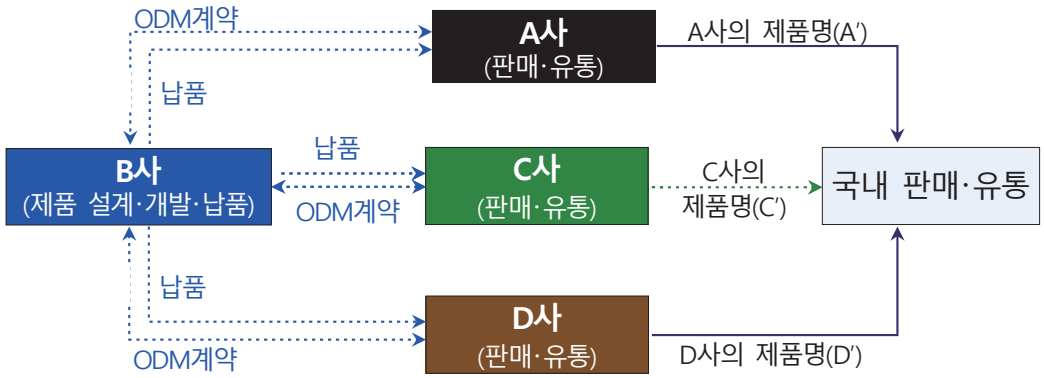

※ 다만, 판매자 정보에 "A사, C사, D사"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되, 제품명이 다르므로 " A′, C′, D′ " 중 어느 하나를 대표제품으로 신고한 후 나머지 2개 제품은 파생제품으로 신고하여야 함

4) 수입자 중에서 신고인이 되는 경우

가) 해외에 있는 B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A사가 수입하여 B사의 상표명이 부착된 상태로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경우 : **A사가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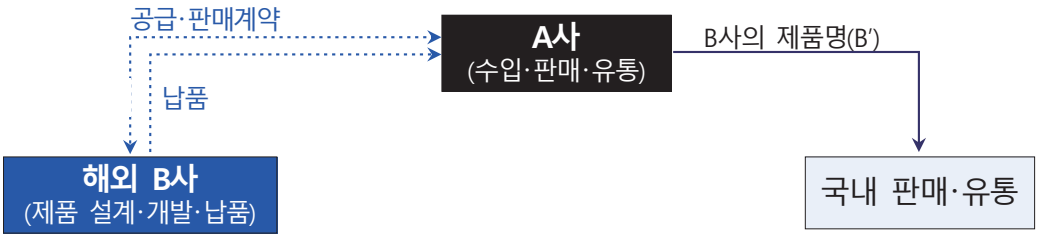

※ A사는 B사의 소재지 국가 및 기업정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나) 해외에 있는 B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A사가 수입하여 B사의 상표명이 부착된 상태로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하고 있는 가운데, C사 및 D사가 동일한 제품을 각각 수입하여 각각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경우 : **A사, C사, D사 모두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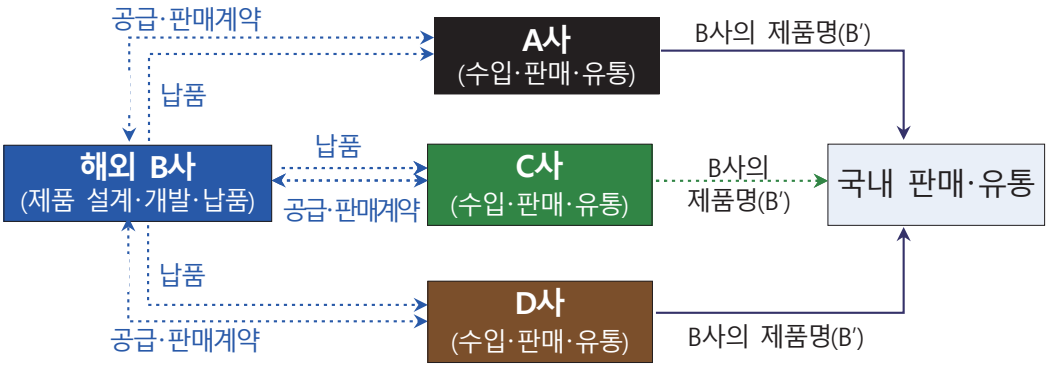

※ A사, C사, D사는 B사의 소재지 국가 및 기업정보를 각각 기재하여야 함

다) 해외에 있는 B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A사가 수입하여 C사를 통해 소분하여 A사의 상표를 부착한 상태로 A사가 공급을 받아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경우 : **A사가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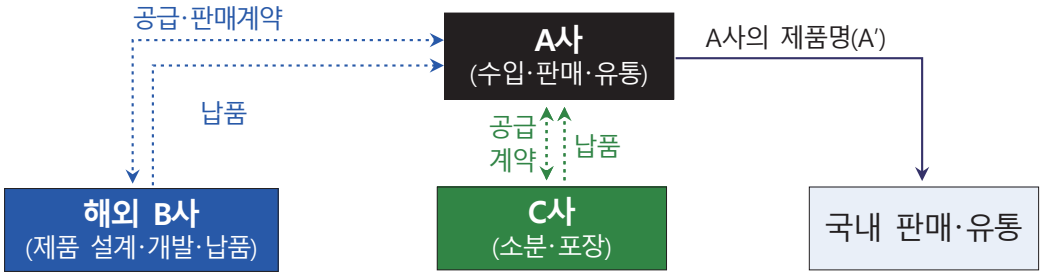

※ A사는 국내 직접제조 방식으로 신청하여야 함

라) 해외에 있는 B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A사가 수입하여 C사를 통해 소분하여 A사의 상표를 부착한 상태로 A사가 공급을 받아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하고 있으며, C사는 해외에 있는 B사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A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일부를 소분하여 C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별도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경우 : **A사, C사 모두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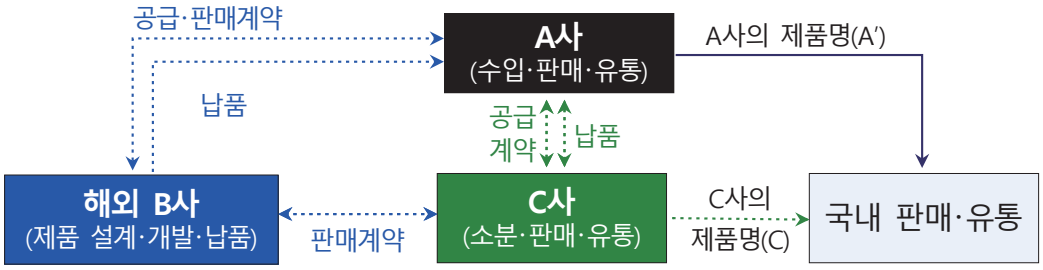

※ ㉠ A사는 신고 시, 수입으로 신고하고 해외 B사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C사는 해외 B사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품 공급은 A사를 통해 받아 제품을 단순 소분하여 판매함에 따라, 국내제조로 신고하여야 함

마) 해외에 있는 B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A사가 수입하여 B사의 상표명을 부착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제품을 해외에 있는 B사와의 계약을 통해 C사가 수입하여 소분·포장 후 C사의 상표명을 부착한 상태로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경우 : **A사, C사 모두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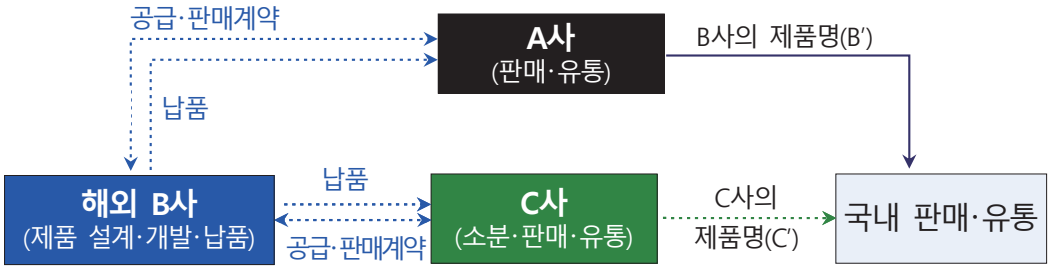

※ A사 및 C사는 B사의 소재지 국가 및 기업정보를 각각 기재하여야 함

ii)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서 작성

1) 일반회원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①생활화학제품"의 "②제품 신고"를 클릭하여야 합니다.

iii) 신고인정보

1) 신고인정보는 기업회원이 입력한 정보(①)와 일반회원이 입력한 정보(②)를 불러오게 되어 있으며, 현재 일반회원 정보(②)는 수정이 가능하나 '20년 하반기에 해당 정보를 수정할 수 없게 시스템이 개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1) 기업회원이 입력한 정보의 변경(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절차를 통해 정보를 수정하여야 함

2) 일반회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일반회원을 지정하여 등록하거나, 일반회원이 신청한 정보를 승인하여야 함(Ⅱ장 참조)

iv) 신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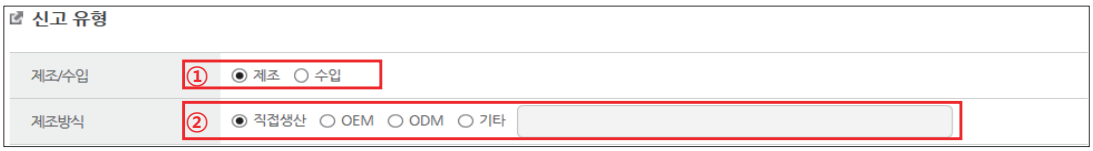

1) 국내 제조 제품인 경우, 제조/수입 입력 란에는 "제조"를 선택하여 체크하고,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가) '직접생산'은 자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생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주문자상표부착 제조방식으로 타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주문자의 제품명을 부착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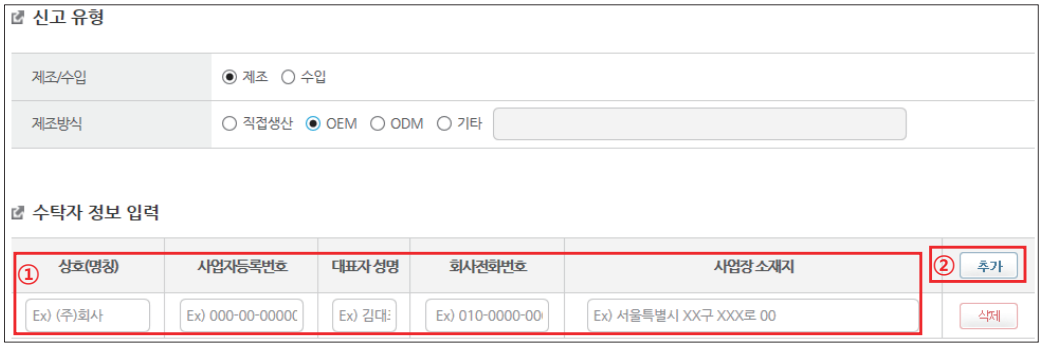

(ⅰ) 'OEM'으로 체크한 경우, '①수탁자 정보 입력' 사항이 나타나며, 제품을 제조하는 수탁자의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회사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ⅱ) '①수탁자 정보 입력' 사항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②추가"를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ⅲ) 'OEM'에서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6항, 고시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표시견본 제출 시, '12. 제조자, 주소, 연락처'에는 신고자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력한 '수탁자 정보'는 표시도안 견본에 표기되는 사항이 아님

다)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은 제조자개발 제조방식으로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유통업체의 제품명을 부착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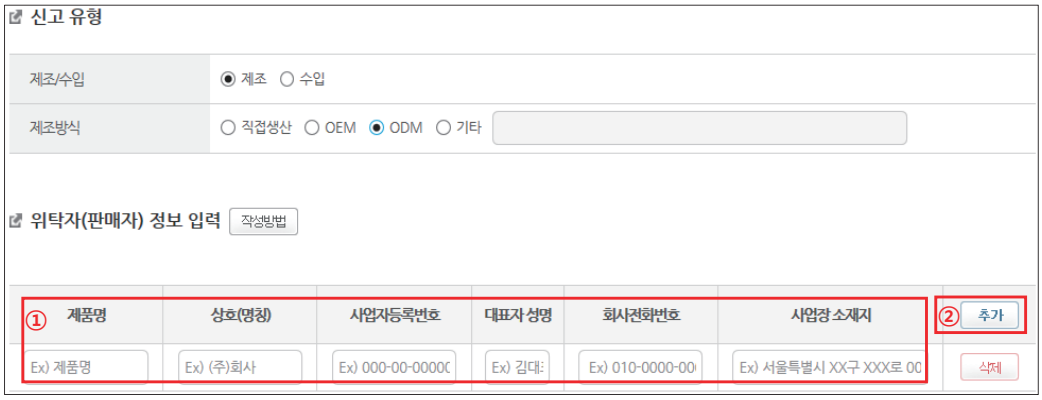

(ⅰ) 'ODM'으로 체크한 경우, '①위탁자(판매자) 정보 입력' 사항이 나타나며, 판매자의 정보(제품명,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회사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위탁자(판매자) 정보를 입력한 경우, 시스템 하단의 기타 첨부서류에 신고자와 위탁(판매자) 간의 계약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업로드하여야 함(계약서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양 사간의 계약관계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ⅱ) '①위탁자(판매자) 정보 입력' 사항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②추가"를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 위탁자(판매자)가 하나 이상이 경우에 각각의 위탁자(판매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함(계약서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양 사간의 계약관계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ⅲ) 'ODM'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 고시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표시견본 제출 시, '13. 판매자, 주소, 연락처'에 위탁자(판매자)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는 '직접생산, OEM, ODM'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조방식(JDM; Joint Development Manufacturing)으로, '기타'에 체크하는 경우에는 제조방식에 대하여 직접 입력하고 입력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 또는 유통하는 경우, 제조/수입란에 "수입"으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가) 수입 체크 시, "①제조국, ②제조회사" 입력 창이 활성화되며, 입력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와 함께 표시하는 경우, 시스템 하단에 업로드하는 표시도안 견본의 '제조국명, 제조회사'에 표기 시에 영문 활자의 크기는 고시 P.107에 따라 한글 활자의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여야 함

v) 신고 대상 정보

1) 제품명

가) "제품명"이란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라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합니다.

나) "제품명"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상의 제품명과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 시의 제품명,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되는 제품명은 모두 동일하여야 합니다.

※ '제품명'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명과 동일하거나, 유통물류진흥원을 통해 유통표준코드(바코드) 부여 시의 제품명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유통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정한 제품명으로 진행할 수 있음

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에 표기된 제품명이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른 제품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제품명을 변경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변경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하단의 기타 첨부서류에 첨부한 후 제품명을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분류·품목

가) 분류·품목은 고시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확인하여 순서대로 '①분류 → ②품목 → ③용도 → ④세부용도' 순으로 각각의 목록에서

선택하여 "⑤추가(필수)"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합니다.

나) "⑤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와 같이 표출이 된 경우에 신청하는 제품에 대하여 '분류·품목' 선택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의 그림에서 '①'에 표시된 사항이 신청한 제품의 분류·품목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②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 후에 '가)'항에 따라 분류·품목을 다시 선택하여 '⑤추가(필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 신청한 제품이 여러 용도의 기능을 갖는 '다 용도 제품(①)' 이거나, 여러 품목의 기능을 갖는 '다 품목 제품(②)'인 경우에는 "가)"에 따라 분류·품목을 추가로 선택하여 용도를 추가하거나 품목을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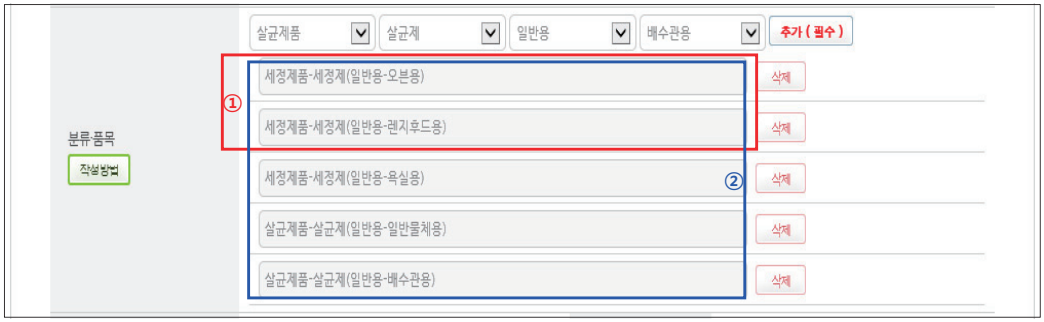

※ 확인결과서에 표기된 품목과 시스템에 입력한 분류품목이 상이한 경우, 해당 신고 제출 건은 RPA(Robotic Process Automaition) 접수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음(예시 : 초 품목을 방향제 품목으로 신고한 경우)

마) 고시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설정시 반영되지 않는 용도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의 자료를 고시 별지 제6호서식과 함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형

가) 신청 제품의 제형은 고시 별표 2에 따른 제형의 분류는 아래와 같으며, 분류의 제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되,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별도 제형이 제시된 경우(물체도색제,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스프레이)에는 해당 제형 기준이 공통기준의 제형보다 우선하므로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형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번호	구분	분류
①	분사형	분무기형(폼형 포함), 스프레이형(1), 훈증형, 연소형, 연무형, 필터형, 보충형(2), 기타(3)
⑤	비분사형	액체형, 에멀션형(페이스트형, 로션형, 젤형 포함), 폼형, 고체형(타블릿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핫멜트형, 분말형, 티슈형, 캡슐형, 카트리지형, 펜형, 붓형, 팔찌형, 패치형, 함침물형, 탱크형, 보충형(2), 기타(3)

※ 1) 고압가스, 저압가스 등을 이용한 분사 방식의 제품을 말함
2) 원제품의 제형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3) 세부 제형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i) 고시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설정 시 반영되지 않는 제형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의 자료를 고시 별지 제6호서식과 함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의 제형 구분을 참고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에 표기된 제형을 '①구분' 목록에서 '분사형, 비분사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후에 '②분류 선택' 목록에서 세부 제형을 선택합니다.

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상에 여러 제형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항에 선택한 제형 이외에 확인결과서 상에 표기된 나머지 제형을 '②'항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4) 유통기한

가) 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의 경우에는 '①'항에 유통기한을 개월 단위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②'항의 "해당없음"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5) 어는점

가) 어는점은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품목에 한하여 활성화되어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나) 어는점은 물과의 혼합비율과 혼합비율에 따른 어는점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 '가)'항과 '나)'항에 따라, '①'에는 '어는점(혼합비율)'을 입력한 후에 '②'에 단위를 목록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6) 액성

가) 액성은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및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품목에 한하여 활성화되어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 액성은 '액체'제품에 한하여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고체나 분말 등의 제품이나 사용과정에서 물과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표기를 원하는 기업에 한하여 표기할 수 있음

나) 액성은 원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소이온농도(pH)에 따른 액성을 아래 표에 따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번호	수소이온 농도(pH)	액성
①	11.0을 초과하는 것	알칼리성
②	8.0 초과 ~ 11.0 이하	약알칼리성
③	6.0 이상 ~ 8.0 이하	중성
④	3.0 이상 ~ 6.0 미만	약산성
⑤	3.0 미만	산성

다) 원액에 대한 액성을 선택한 경우, 나타나는 "②"에는 표준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소이온농도(pH)에 따른 액성을 표시하되, 표준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선택안함"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7) 중량/용량/매수/크기

가) 제품별 중량·용량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ⅰ) 신고 제품이 용량 또는 중량 등이 다양하게 판매되는 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용량 또는 중량을 모두 표시하되 계량단위는 하나로 통일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ⅱ) 중량 5g짜리 제품이 12개가 1세트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5(12개입)g" 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입력하여야 합니다.

※ 만일, 해당 제품을 총 중량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5g X 12개입)g"으로 표시할 수 있음

나) 카트리지형 등 매수로 표시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는 중량·용량 대신 인쇄가능매수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 '①'항에는 '중량·용량 등'에 대하여 수치로 입력하고, '②'항에 입력하는 계량단위를 목록에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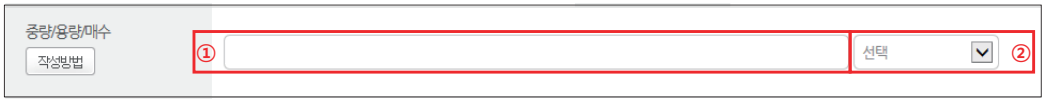

※ 만약, 확인결과서의 용량은 100mL로 표기되어 있으나, 신고 시에 '50mL, 100mL, 150mL, 200mL'를 신고한 경우, 용기(몸체, 뚜껑(실링제 포함)) 재질이 다른 경우에는 고시 별표 3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용기 재질이 같은 경우에는 용기 재질이 같음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하단의 '기타 첨부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8) 표준사용량

가) 표준사용량은 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의 효과적인 기능을 낼 수 있는 적정 사용량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희석해서 사용하는 농축제품의 경우에는 희석비율에 따른 표준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없는 제품인 경우에는 '①'항의 '해당 없음'에 체크하고, 표준사용량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표준사용량을 '②'항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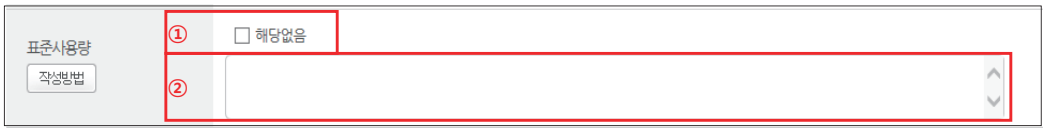

9)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여부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아래의 품목의 경우에는 고시 별표 4에 따른 "Ⅱ.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 Ⅲ.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i)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ii)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iii) 액체형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이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iv) 캡슐형 세탁세제

나) 고시 별표 4에 따른 "Ⅱ.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 제품 내 함유된 물질이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인 경우에는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i) 다음의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각 물질의 CAS No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적용되는 CAS No를 표기한 것으로 향후,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에 따른 CAS No가 추가될 수 있음)

번호	물질명	CAS No	함량기준	적용 제외
①	에틸렌글리콜	107-21-1	10 %(W/W) 이상	
②	메틸알콜	67-56-1	3 %(W/W) 이상	
③	디클로로메탄	75-09-2	1 %(W/W) 이상	
④	1,2-디클로로에탄	107-06-2	10 %(W/W) 이상	
⑤	살리실산메틸	119-36-8	5 %(W/W) 이상	
⑥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	1310-73-2 1310-58-3	제품내 NaOH로서 2 %(W/W) 이상	
⑦	메타크릴산	79-41-4	5 %(W/W) 이상	펜 마커와 같이 용기 흡수제로 쓰인 경우
⑧	개미산(포름산)	64-18-6	5 %(W/W) 이상	
⑨	하이포(차아)염소산염	7790-92-3	2 %(W/W) 이상	
⑩	과산화수소	7722-84-1	5 %(W/W) 이상	
⑪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105-36-2	모든 농도	
⑫	모르폴린	110-91-8	5 %(W/W) 이상	
⑬	아세토니트릴※ ㉡	75-05-8	500 mg 초과	

※ ㉠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제품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염기 농도임

㉡ 접착제, 제거제에 함유된 경우에 한함

(ii) 제품 내 함유된 다음 항목의 물질 총합이 10 % 이상의 액상 제품이고, 40 ℃에서 동점도 20.5 mm^2/s 이하인 경우

(1)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직쇄형 1차 알코올※

※ 1-propanol, 1-butanol, 1-pentanol, 1-hexanol, 1-heptanol, 1-octanol, 1-nonanol, 1-decanol, 1-undecanol, 1-dodecanol, 1-tridecanol

(2) 이소부틸 알코올 (isobutyl alcohol)

(3) 테르펜 알코올 (terpene alcohol)

(4)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5)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ii) 제품 내 최종 함유물이 pH 2.0이하 또는 pH 11.5이상의 액상 제품이고, 40 ℃에서 동점도 20.5 mm^2/s이하인 경우

다) 제품과 제형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시 별표 4의 "Ⅱ.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ⅰ)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하여야 하는 용기

(ii)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용기

(iii) 개봉 후 1회에 전량이 소모되는 1회용 용기

(iv) 개봉 후 내용물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용기(예: 카트리지형, 티슈형, 팔찌형, 패치형, 거치형, 탱크형 제품 등)

(v) 실제 중량 15 kg 이상의 제품

(vi) 제품의 특성상 별도의 용기나 포장이 어려운 제품(예: 함침물형 석고 방향제, 초 등)

마) '가) ~ 다)'항의 내용 검토 후, 시험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어린이보호포장 시험을 진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기반으로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해당" 또는 "미해당"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10) 사용방법

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의 여는 방법(필요 시 닫는 방법 포함), 특정 용법이 적용되는 등 소비자의 사전 숙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①"의 사용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품목 사용 시 일반적인 사용방법으로 사전 숙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11) 사용상 주의사항

가) 신청제품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입력하되 반드시 하나 이상의 문구는 입력하고, 고시 별표 5의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의 구분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시에 표기된 문구를 그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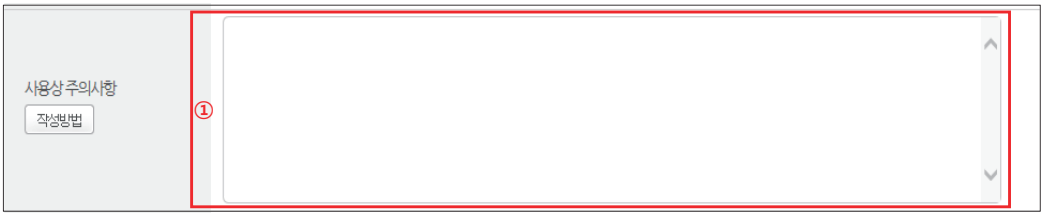

(i) '가)'에 따라 필수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구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①	세정제(염산 또는 황산이 사용된 제품에 한함. 다만, 산도조절제로 사용된 경우 제외)	ㅇ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ㅇ장갑,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②	접착제(톨루엔, 초산에틸, 메탄올 중 어느 하나의 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에 한함)	ㅇ직접 흡입 등 오·남용을 하지 마시오.
③	자동차용 부동액	ㅇ보관 시에는 부동액임을 알 수 있도록 기존의 용기 또는 부동액 표시가 된 별도의 용기를 사용하고, 밀봉하시오. ㅇ에틸렌글리콜형의 부동액과 프로필렌글리콜형의 부동액을 섞어 쓰면 어느점 등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므로 혼용하지 마시오.
④	자동차용 워셔액	ㅇ알코올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내기 순환모드에서 사용하시오. ㅇ워셔액을 사용 후에는 창문을 1~2분간 내려 환기를 하시오.

번호	구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⑤	인쇄용 잉크·토너	ㅇ제품을 교체·제거할 때 내용물의 누출에 주의하시오. ㅇ내용물 누출 시, 분진·미스트·증기의 흡입 또는 피부 접촉에 주의하시오. ㅇ가정용 진공청소기로 토너를 청소하지 말고, 젖은 천으로 닦아내시오.
⑥	초(전용 받침대가 없는 제품에 한함)	ㅇ불에 타지 않는 초 받침대를 사용하시오.
⑦	습기제거제	ㅇ투습막을 찢거나 벗기지 마시오(투습막이 있는 제품에 한하며, 투습막에 직접 표시할 수 있음) ㅇ흡습제는 물과 닿으면 발열 반응이 나타나 위험하니, 흡습제를 꺼내지 마시오. ㅇ흡습제나 조해액이 누출되어 닿으면 식물의 생장이나 금속의 품질에 악형향을 줄 수 있습니다. ㅇ습기제거제를 불에 대고 건조시키지 마시오.
⑧	제품의 용도가 자동차 외부용인 경우	ㅇ자동차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마시오.
⑨	제품의 용도가 칫솔 살균용인 경우	ㅇ제품 사용 후 칫솔을 반드시 헹구시오.
⑩	제품의 제형이 캡슐형인 경우	ㅇ어린이가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⑪	제품의 제형이 액체형인 경우	ㅇ제품의 내용물을 분무기 등에 담아 분사하지 마시오.
⑫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제품	ㅇ주변에 불꽃(spark)이 발생되는지 확인하고, 일정량을 분사한 후 가스가 흩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사용하시오. ㅇ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⑬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제품	ㅇ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ㅇ용기와 결합된 뚜껑을 억지로 벗기지 마시오.
⑭	특정조건(전문가용 등)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예외 제품	ㅇ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⑮	별표 6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 가능물질 사용 제품	ㅇ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⑯	강도시험 대상에서 제외된 유리용기 사용 제품	ㅇ용기를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마시오. ※ 다만, 고체형 초 제품에 적용된 유리 컵은 용기가 아닌 받침대로 적용하므로 해당 문구는 제외됨
⑰	일회성 전량 소모 제품	ㅇ개봉 후 내용물을 즉시 사용하시오.
⑱	공연용 포그액	ㅇ공연 등을 위해 직접 사용 시에는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ii) '나)'의 필수표시 주의사항 문구 이외에 다음 표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선택하여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는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분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①	일반 사항	ㅇ사용하기 전에 표시사항을 확인하시오. ㅇ표시된 사용방법, 표준사용량 등을 지켜 사용하시오.
②	인체 노출 관련 사항	ㅇ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오. ㅇ내용물이 눈이나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시오. ㅇ흡입하거나 마시지 마시오.

번호	구분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ㅇ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ㅇ다량 흡입 시 위해가 우려되니 사람이나 동물,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마시오. ㅇ장갑,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ㅇ사람에게 직접 뿌리거나 분사되는 내용물을 흡입하지 마시오. ㅇ눈보다 높은 곳에서 사용하면 분사액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오.
③	용도 관련 사항	ㅇ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ㅇ용기를 임의로 바꿔 사용하지 마시오. ㅇ변색, 탈색이 우려될 경우에는 먼저 눈에 띄지 않는 부위를 정해 소량으로 시험해 본 후 사용하시오.
④	화재·폭발 관련 사항	ㅇ화기를 가까이 하지 마시오. ㅇ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ㅇ화재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오.
⑤	내용물 누출 관련 사항	ㅇ넘어진 채로 두면 액이 흘러나올 수 있으니 방치하지 마시오. ㅇ용기를 떨어뜨리는 등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 ㅇ넘어지거나 기울어진 상태로 사용하지 마시오. ㅇ제품의 용기를 억지로 분리하거나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 ㅇ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내용물이 잔류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이 닦으시오.
⑥	보관·저장 관련 사항	ㅇ화기 또는 열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시오. ㅇ사용 후 잔량은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보관하시오. ㅇ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오. ㅇ용기를 항상 밀봉하여 보관하시오.

12) 응급처치

가) 신청제품 사용시 응급처치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입력하되 반드시 하나 이상의 문구는 입력하고, 고시 별표 5의 '제품별 필수 응급처치 문구'의 구분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시에 표기된 문구를 그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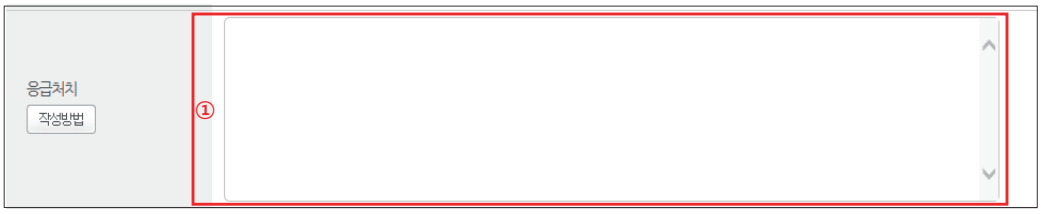

(ⅰ) '가)'에 따라 필수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응급처치'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구분	필수 응급처치 문구
①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ㅇ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시오. ㅇ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보여주시오.
②	별표 6에 따른 알레르기반응 가능물질 사용 제품	ㅇ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받으시오.

(ⅱ) '나)'의 필수표시 응급처치 문구 이외에 다음 표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처치 문구를 선택하여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응급처치 문구는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분	권장 응급처치 문구
①	일반 사항	ㅇ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보여주시오. ㅇ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ㅇ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②	경구 노출 사항	ㅇ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시오.
③	경피·안구 노출 사항	ㅇ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ㅇ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시오. ㅇ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시오.
④	흡입 노출 사항	ㅇ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v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1)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 받은 확인결과서를 업로드하고 확인결과서 상에 표기된 화학물질 확인결과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2) '①, ②, ③, ④'항은 다음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 '①'항의 발행번호 란에는 해당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 받은 확인결과서 상의 발행번호를 입력합니다.

나) '②'항의 시험검사기관 이름 란에는 해당 확인결과서를 발급한 시험검사기관명을 입력합니다.

다) '③'항의 확인결과서 유효기간 시작일은 달력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유효기간 시작일을 입력하면 유효기간 종료일이 자동계산되어 입력됩니다.

※ 확인결과서는 발급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건만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시험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④'항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란에는 해당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 받은 확인결과서 전체 페이지를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i) 시험검사기관에서 이메일을 통해 받은 확인결과서를 업로드할 수 있으나, 확인결과서 1페이지 하단에 해당 시험검사기관 직인이 찍혀 있는 확인결과서를 업로드해 주세요

(ii) 이메일을 통해 확인결과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은 확인결과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해 주세요

※ 만일, 연속 스캐너가 없는 경우에는 한글 문서 1페이지당 사진 1장을 붙여넣는 방식으로 확인결과서 페이지 수 만큼의 페이지를 만든 다음 'PDF로 인쇄하기' 또는 'PDF로 저장하기'를 클릭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할 수 있음

2) 시스템의 화학물질 확인결과는 시스템의 '신고 대상 정보'에서 선택하여 입력한 '분류·품목·용도·세부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①확인항목, ②단위, ③확인기준"이 자동 입력되며 "④확인결과, ⑤판정"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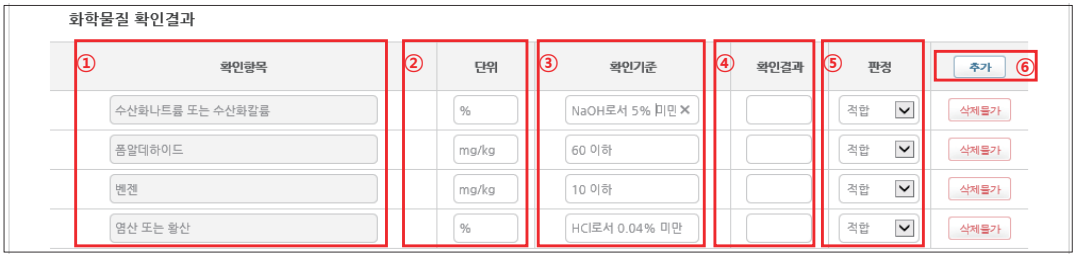

※ 자동차용 부동액 품목의 경우, 시스템에서 화학물질 확인결과 항목이 자동 표출되지 않으므로 확인결과서 상에 표기된 화학물질 확인결과에 대하여 '⑥'항의 추가 버튼을 눌러 모두 입력하여 함('20년 3/4분기 내 자동 표출 예정)

가) 발급 받은 확인결과서의 '1. 화학물질 확인결과'란과 '①확인항목, ②단위, ③확인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확인항목에 대한 "④확인결과"와 "⑤판정" 값을 입력합니다.

(i) '①확인항목'이 발급 받은 확인결과서 P.2에 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④확인결과, ⑤판정' 란에 "해당없음"으로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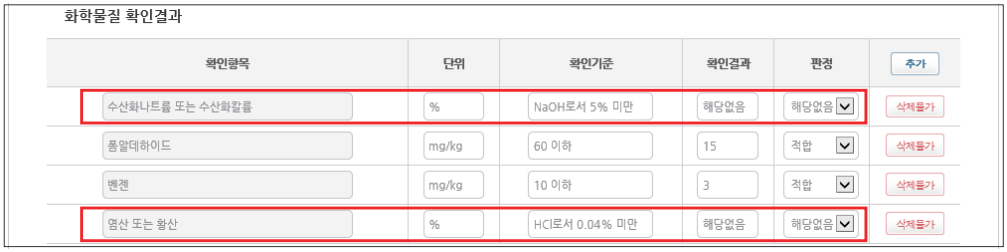

(ii) 시스템에 표시된 '①확인항목' 보다 발급 받은 확인결과서의 '1. 화학물질 확인결과'에 표기된 확인항목이 더 많은 경우에는 '⑥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결과서의 '1. 화학물질 확인결과'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시스템의 확인항목에 표기되지 않은 '확인항목, 단위, 확인기준, 확인결과, 판정' 값을 모두 입력하여야 합니다.

※ 1) 이 경우, 추가하려는 확인항목이 "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사용물질)"인 경우에는 항목을 추가하여 입력하지 아니함

2) '⑥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확인항목의 경우, "임시저장" 후에 추가로 입력한 확인항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류품목을 삭제한 후 다시 선택하여 확인결과서에 표기된 확인항목을 다시 입력하여야 함

나) 시스템에 입력하는 화학물질 확인결과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에 표기된 "분류·품목·용도·세부용도"별로 각각 화학물질 확인결과를 입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vii) 함유성분(전성분)

1) '물질'이란 '불순물, 비(非)화학물질, 화학물질 등'을 포함한 제품 내 함유되어 확인 가능한 개별 물질을 말하며, 해당 제품 생산 시 사용하는 모든 '단일물질 및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전체를 파악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2) 신고인은 제품 생산시 사용하는 물질이 '혼합물질'인지 '단일물질'인지를 파악하여 해당 물질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 CAS No가 있는 단일물질을 입력하는 경우

(i) '①'항에 "단일물질"로 체크한 후, '②'항의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ii) 화학물질 조회 창이 뜨면, '①'항을 선택하여 "CAS No" 검색할 것인지 "KE No"로 검색할 것인지 선택한 후, '②'항에 CAS No 또는 KE No를 입력한 후 '③'의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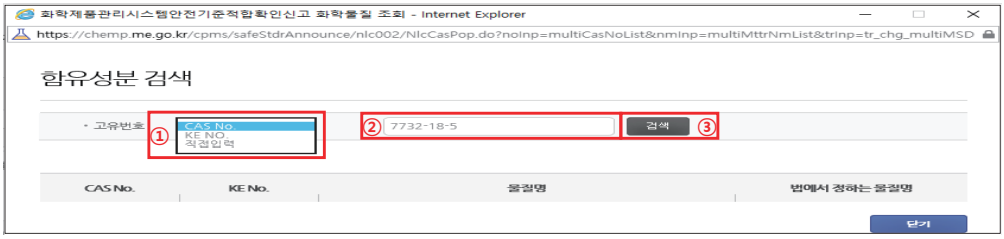

※ 'KE No'로 검색하는 경우, 여러 물질이 검색될 수 있으므로 "CAS No"로 검색하는 것을 권장함

(iii) 화학물질 조회 창의 하단 부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면, '①'항에 표시된 물질이 입력한 CAS No와 같은지 확인하고, '①'항에 표기된 글자를 클릭합니다.

(iv) 검색한 CAS No를 토대로 '①'항에 표기된 값이 서로 같은지 먼저 확인한 후, '②'항에 표기된 물질명을 '③'항에 입력한 후, '④'항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웹 페이지 메시지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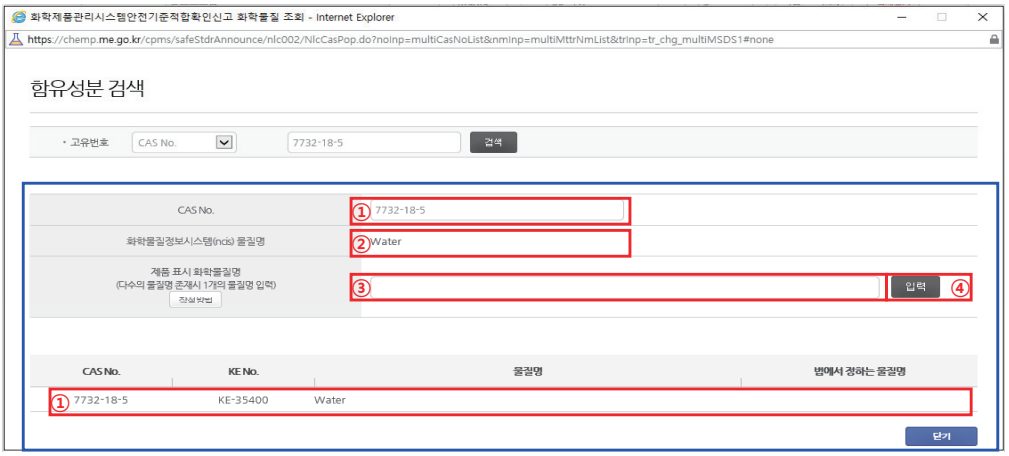

※ 1) '③'항에 입력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은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명을 우선 기재

2) '③'항에 입력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 등재된 물질명,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용명으로 대신 기재할 수 있음

3) 이 경우, 해당 물질의 용도(기능)이 고시 P.116~120에 따른 "주요물질(최대함량, 주요기능),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중점관리물질,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문신용 염료에 사용된 모든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질명을 한글로 입력하여야 함

(v) '(ii)'항에 따라 CAS No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하였 때 "검색결과가 없습니다"란 메시지가 뜨면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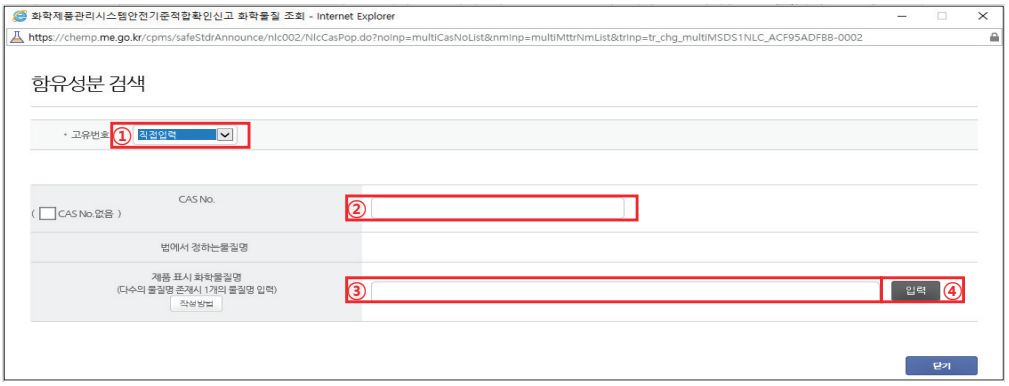

(1) '①'항에서 "직접입력"을 선택합니다.

(2) '②'항에 CAS No를 입력합니다.

(3) '③'항에 물질명을 입력합니다.

※ 1) '③'항에 입력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은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명을 우선 기재

2) '③'항에 입력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 등재된 물질명,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용명으로 대신 기재할 수 있음

3) 제품에 착향제로 사용된 물질이 1개 이상인 경우에 아래와 같이 '①'항의 용도(기능)에 "착향제"로 표기되어 있으나, '②'항의 표시사항대상물질에 "주요물질"로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③'항의 물질명은 MSDS에 표기된 물질명 또는 관용명을 그대로 표기함

4) '3)'항에도 불구하고, '①'항의 용도(기능)에 "착향제"로 표기되고, '②'항의 표시사항대상물질도 "주요물질"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③'항의 물질명은 고시 P.117에 따라 "향료(피톤치드)"로 물질명을 입력하여야 함

(4) '①~③'까지의 절차를 통해 물질명 입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④'항의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화학물질 조회를 완료해 주세요

(vi) 신고인이 입력한 물질이 파란색 테두리 안에 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①'항에는 해당물질의 배합비를 입력하고, '②'항에 입력된 배합비의 합산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③'항의 용도(기능)과 '④'항의 표시사항대상물질에 "주요물질" 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1) '①'항에 입력하는 물질의 배합비는 신고제품 생산시 투입하는 배합비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모든 물질을 입력한 뒤 '②'항에 표기된 배합비의 총합이 100%가 되도록 입력하여야 합니다.

(2) '③'항의 용도(기능)은 해당 화학물질이 제품 내에서 갖는 기능을 아래의 표에서 선택하여 입력하되, 부합하는 용도(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직접입력)"을 선택하고, '기타(직접입력)' 바로 아래에 나타는 입력 창에 세부 용도를 입력합니다.

번호	구분	번호	구분	번호	구분
①	계면활성제	⑨	소포제	⑰	형광증백제
②	보존제	⑩	연화제	⑱	흡습제
③	발열제	⑪	안정제(보존제 제외)	⑲	항균제
④	발포제	⑫	용매제	⑳	소독제
⑤	산화방지제	⑬	응집제	㉑	살균제
⑥	산도조절제	⑭	점도조절제	㉒	표백제
⑦	착색제	⑮	접착제	㉓	기타(직접 입력)
⑧	성능보조제	⑯	착향제		

(가) '③'항의 용도(기능)에서 "계면활성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계면활성제' 선택창 바로 아래에 입력창이 새로이 나타나므로 고시 P.118를 참고하여 해당 물질의 계열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③'항의 용도(기능)에서 "보존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④'항의 표시사항대상물질 구분에서 "살생물물질"이 자동 체크되므로 입력한 물질이 보존제 물질이 맞는지 용도(기능)을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고시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보존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고시 P.14 및 신고 제품에 대한 품목별 안전기준 참조)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해당 물질에 대하여 보존제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③'항의 용도(기능)에서 "기타(직접입력)"을 선택한 후에 급한 용무로 시스템 하단의 "임시저장"을 클릭한 다음 일정 시간이 경과한 다음 다시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타(직접입력)"을 다시 선택하더라도 수기 입력 창이 활성화 되지 않으므로 삭제한 후 다시 입력하여야 함

(3) '④'항의 표시사항대상물질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물질"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가) 제품의 상당부분(최대 함량 등)을 구성하는 대표 물질[다만, 해당하는 물질이 물(정제수)인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물질의 명칭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함]

(나) 제품의 주요 기능을 발현시키는 대표 물질

(4) '④'항의 표시사항대상물질에서 "나노물질"이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 이상이 나노크기(1 ~ 100 nm)인 1차 입자 또는 비표면적이 60 m^2/cm^3 이상인 물질로 의도적으로 제조한 물질을 말합니다. (환경부 고시 제2015-32호 제2조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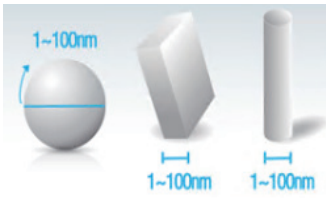

나) CAS No가 없는 단일물질을 입력하는 경우

(i) '①'항에 "단일물질"로 체크한 후, '②'항의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ii) 화학물질 조회 창이 뜨면 '①'항에서 "직접입력"을 선택한 후 '②'항에서 "CAS No. 없음"을 선택하고, '③'항에 물질명을 입력하고, '④'항의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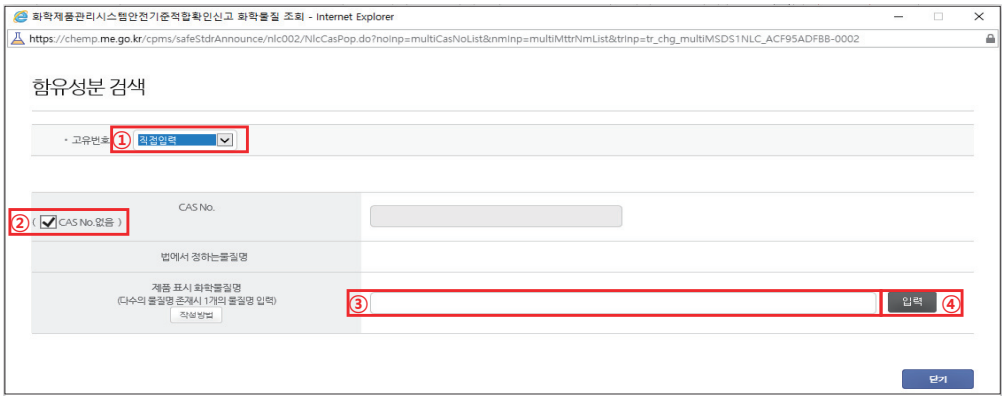

※ 1) '③'항에 입력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은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명을 우선 기재

2) '③'항에 입력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 등재된 물질명,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용명으로 대신 기재할 수 있음

3) 이 경우, 해당 물질의 용도(기능)이 고시 P.116~120에 따른 "주요물질(최대함량, 주요기능),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중점관리물질,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문신용 염료에 사용된 모든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질명을 한글로 입력하여야 함

(iii) '①'항에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②'항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MSDS 또는 물질 제조자가 제공한 정보를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고유번호가 없는 단일물질인 경우에는 고시 별표 7(표 2)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국내·외에서 인정한 물질의 안전성 자료, 제품의 안전보건자료(SDS), 제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다만, 물질정보 자체가 생성·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해당 물질명 및 제조자 정보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함]

(iv) "배합비, 용도(기능), 표시사항대상물질" 입력과 관련하여서는 P.39~40의 "(vi)"항을 참고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 혼합물질을 입력하는 경우

(i) '①'항의 "혼합물질"을 선택하고, '②'항의 검색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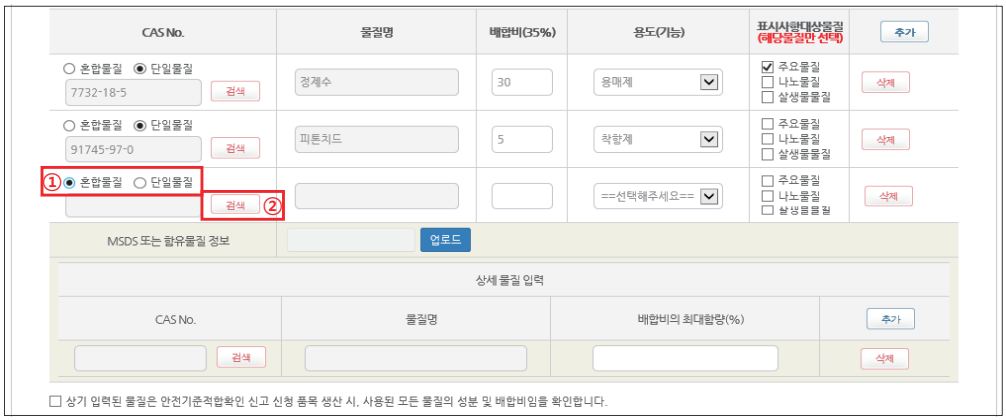

(ii) 화학물질 조회 창이 뜨면 '①'항에서 "직접입력"을 선택한 후 '②'항에서 "CAS No. 없음"을 선택하고, '③'항에 물질명을 입력하고, '④'항의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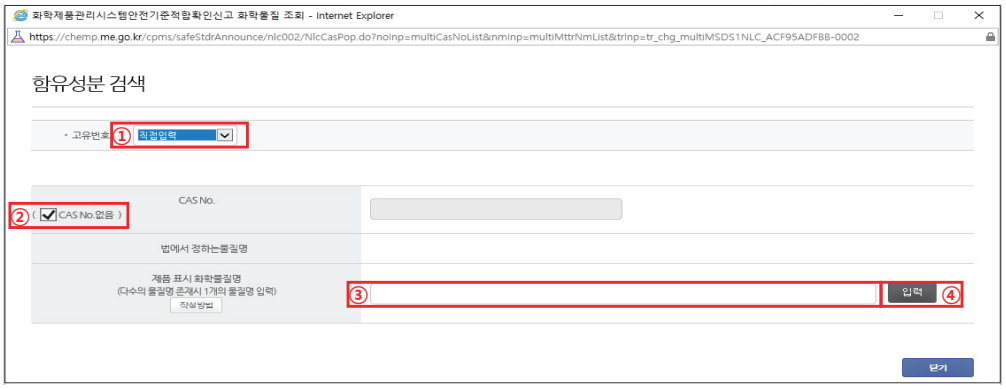

※ '③'항의 물질명은 해당 혼합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질기능(주요물질명 등)*"의 방식과 같이 표기해 주세요(아래의 표는 작성 예시이므로 참고하여 제품명을 표기)

번호	구분	MSDS 상의 주요물질	제품 표시 화학물질명 표기방법 우선순위
①	계면활성제가 혼합물질인 경우	ㅇ다이프로필렌글리콜(최대 함량 물질) ㅇ아주까리기름,수소첨가,에톡실레이티드(주요기능물질)	ㅇ계면활성제(아주까리기름, 수소첨가, 에톡실레이티드 등) ㅇ계면활성제(다이프로필렌글리콜 등)
②	향료가 혼합물질인 경우	ㅇ아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최대 함량 물질) ㅇ벤질벤조에이트(주요기능물질)	ㅇ향료(아이소프로필 미리시테이트 등) ㅇ향료(벤질벤조에이트 등)
③	레드 색상의 염료가 혼합물질인 경우	ㅇ미네랄 오일, 석유 증류액, (심하게) 수소처리된 경질 나프텐 (최대 함량 물질) ㅇ솔벤트 레드 003(주요기능물질)	ㅇ레드 염료(미네랄 오일, 석유 증류액, (심하게) 수소처리된 경질 나프텐 등) ㅇ레드 염료(솔벤트 레드 003 등)
③	방향제 베이스 물질이 혼합물질인 경우	ㅇ에탄올(최대 함량 물질) ㅇ리모넨(주요기능물질)	ㅇ베이스(에탄올 등) ㅇ베이스(리모넨 등)

(iii) '(ii)'항에 따라 혼합물질에 대한 물질명 입력 후, "배합비, 용도(기능), 표시사사항 대상물질" 항목을 입력 또는 체크합니다.

※ 1) 다만, 혼합물질이 계면활성제의 경우에는 용도(기능)에서 "계면활성제(①)"를 선택하는 경우, '계면활성제' 선택사항 바로 아래에 입력 창이 새로이 생성되며, 해당 입력 창에는 고시 P.118에 따라 해당 계면활성제 물질에 대한 계열(②)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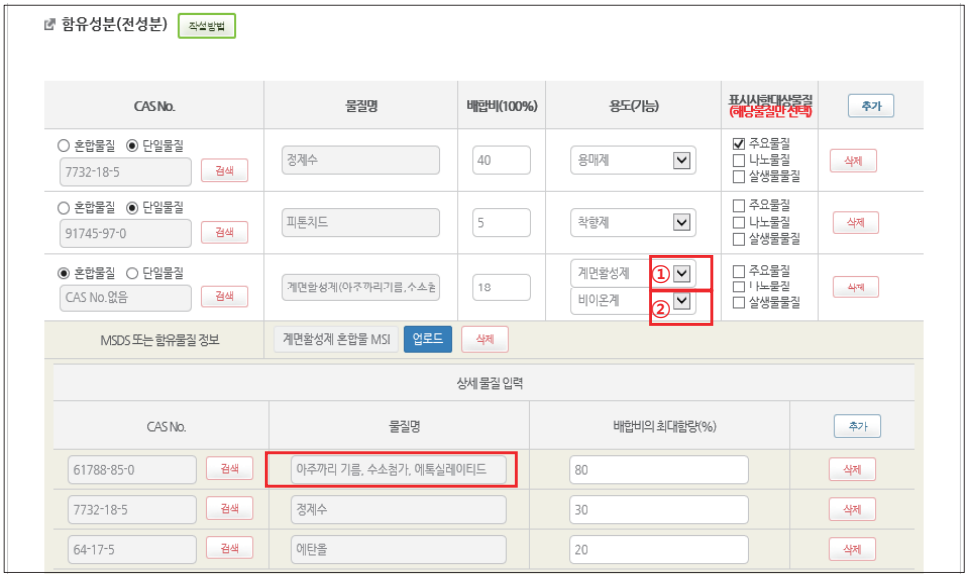

2) 다만, 표시도안 견본의 '계면활성제' 항목에 표기하는 물질명은 '계면활성제(아주까리기름, 수소첨가,에톡실레이티드 등)'으로 표기하지 않고, 해당 혼합물의 구성물질 중에서 실제 계면활성제 기능을 하는 물질명인 "아주까리기름,수소첨가,에톡실레이티드"를 계열을 함께 표기하여야 함[표시도안 견본 예시 : 아주까리기름,수소첨가,에톡실레이티드(비이온계)]

(iv) 혼합물질에 대한 상세물질 입력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고시 별표 7(표 2)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국내·외에서 인정한 물질의 안전성 자료, 제품의 안전보건자료(SDS), 제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①'항의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물질정보 자체가 생성·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해당 물질명 및 제조자 정보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함

(2) 혼합물질의 MSDS를 확인하여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표기된 모든 물질을 상세물질입력 란에 아래에 따라 모두 입력해 주세요.

(가) '①, ④'항의 각각의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물질명을 입력하시되, 고시 P.117~118에 따른 알레르기물질이 사용된 경우에는 고시에 표기된 한글물질명으로 입력해 주세요

※ 1) 만일, MSDS 자료에 표기된 구성성분 중 "Other aromatic materials" 또는 "Fragrance compound" 또는 "기타" 등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물질 제조자에게 문의하여 알러젠리스트 또는 화학물질독성정보(LOC) 등을 공급받아 시스템 하단의 "첨부서류-기타 첨부서류"에 해당자료를 업로드하여야 함

2) 물질제조자에게 알러젠리스트 또는 화학물질독성정보(LOC) 등을 공급받은 경우, 알러젠리스트 또는 화학물질독성정보(LOC) 등에 표기된 물질 중 Total에 값이 표기된 모든 물질을 상세물질입력 란에 추가로 입력하여야 함(이 경우, Other aromatic materials 또는 Fragrance compound 또는 기타 등의 표기는 하지 않음)

3) 고시 P.117~118의 알레르기물질 목록

번호	CAS No	한글 물질명	번호	CAS No	한글 물질명
①	120-40-7	아밀신남알	⑭	105-13-5	아니스에탄올
②	100-51-6	벤질알코올	⑮	103-41-3	벤질신나메이트
③	104-54-1	신나밀알코올	⑯	4602-84-0	파네솔
④	5392-40-5	시트랄	⑰	80-54-6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⑤	97-53-0	유제놀	⑱	78-70-6	리날로올
⑥	107-75-5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⑲	120-51-4	벤질벤조에이트
⑦	97-54-1	이소유제놀	⑳	106-22-9	시트로넬롤
⑧	101-85-9	아밀신나밀알코올	㉑	101-86-0	헥실신남알
⑨	118-58-1	벤질살리실레이트	㉒	111-12-6	메칠-2-옥티노에이트
⑩	104-55-2	신남알	㉓	127-51-5	알파-이소메칠이오논
⑪	91-64-5	쿠마린	㉔	9002-68-5	참나무이끼추출물
⑫	106-24-1	제라니올	㉕	90028-67-4	나무이끼추출물
⑬	138-86-3, 5989-27-5, 5989-54-8	리모넨	㉖	31906-04-4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나) 혼합물질의 MSDS 자료에 표기된 함유량 정보를 확인하여 '③, ⑥'항의 각각의 물질에 대한 "배합비의 최대함량"을 입력해 주세요

※ 1) MSDS 자료의 함유량 정보가 '5-50'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배합비의 최대 함량은 "50"으로 표기하여야 함

2) MSDS 자료의 함유량 정보가 '<10'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배합비의 최대 함량은 소수 점 이하 세 번째 자리까지 최대 함량인 "9.999"로 표기하여야 함

(v) 초 제품과 같이 제품명은 동일하나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여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되는 모든 색상(안료)를 함유성분(전성분)에 입력하되, 배합비는 "0"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vi) 초 제품의 경우, 심지는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CAS No가 없으므로 MSDS 또는 물질정보 등의 자료를 업로드하고, 배합비는 "0"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신고제품에 대한 함유성분(전성분) 내역을 모두 입력한 경우에는 '①'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체크박스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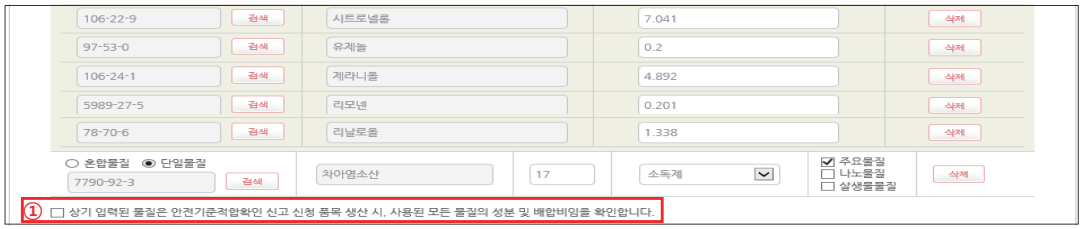

4) 함유성분(전성분)은 작성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함유성분(전성분)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 건이 반려될 수 있으며,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혼합물질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종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국·내외에서 인정한 물질의 안전성 자료, 물질 제조자가 제공한 물질 정보 등 물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나) 물질의 중화반응 또는 전기분해로 인하여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어 제품 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생성된 물질에 대해서도 함유성분(전성분)에 입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A물질과 B물질이 반응하여 제품에는 C물질만 남고 A물질과 B물질이 모두 소실된 경우, 함유성분(전성분)에 입력 시에는 A물질과 B물질은 배합비를 "0"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표시도안 견본에는 A물질과 B물질의 물질명은 표기하지 않아도 됨

다) 2액형(주제 및 경화제) 제품 등과 같이 각각 따로 판매하거나 하나의 제품에 주제와 경화제를 하나의 키트로 결합하여 포장된 제품의 경우, 함유성분(전성분) 입력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시스템의 함유성분(전성분) 입력 란에는 "주제"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하여 P.35 ~ P.42를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ii) "경화제"로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아래의 양식을 활용하여 "경화제"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용도 등을 작성한 후 시스템 하단의 '첨부서류 – 기타 첨부서류' 란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제품의 함유성분(전성분) 추가 내역**

상호명	접수번호	제품명	구분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번호	구분	CAS No.	물질명	배합비 (%)	용도(기능)	표시사항 대상물질
1						
2						
3						
4						
5						
6						
7						
8						
9						

○ 상기 입력된 물질은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 품목 생산시, 사용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20 . . .
상 호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작성 예시>

붙임 1 **제품의 함유성분(전성분) 추가 내역**

상호명	접수번호	제품명	구분	작성자
테스트기업	A-200515-0000	접착제	경화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번호	구분	CAS No.	물질명	배합비 (%)	용도(기능)	표시사항 대상물질
1	단일물질	64-17-5	에탄올	25	용매제	주요물질
2	단일물질	20567-01-0	아크릴에멀션	15	접착제	
3	혼합물질	CAS No.없음	우레탄코팅(폴리비닐아세테이트 등)	27	접착/코팅	주요물질
3-1	혼합물의 구성원료	7732-18-5	정제수	25	-	-
3-2	혼합물의 구성원료	25265-77-4	텍사놀	25	-	-
3-3	혼합물의 구성원료	9003-20-7	폴리비닐아세테이트	50	-	-
3-4	혼합물의 구성원료	112-34-5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에테르	25	-	-
4	단일물질	25322-69-4	폴리비닐아세테이트	33	접착제	주요물질

○ 상기 입력된 물질은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 품목 생산시, 사용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2020. ** . ** .
상 호 명 : 테스트기업
대 표 자 : 백소저 (서명 또는 인)

viii) 첨부서류

1) 표시도안 견본

가) 일반사항

(i) 표시도안 견본의 표시사항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자나 외국어의 활자 크기를 한글 활자의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ii) 표시도안 견본의 표시사항은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iii) 표시도안 견본의 표기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표시 위치

(i) 제품 겉면의 표시 방법

(1) 표시도안 견본은 제품 겉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제품의 내용물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 용기가 구성품으로 있는 경우, 해당 용기에도 부착하여야 합니다.

※ 1) 제품에 부착하는 표시도안 견본의 표시사항은 고시 별표 5(고시 P.99 ~ 100)에 따른 각 항목별 표시사항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함

2) 다만, 해당 사항이 없거나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도안 견본에 해당 항목을 표시하지 않음

구분	적용 표시면적	표시도안 견본 예시
표시도안 견본 1안 (대)	100cm^2 이상	ㅇ 고시 별표 6, 부록 2(고시 P.125 참조)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면의 면적이 좁아 표기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반드시 첨부문서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구분	적용 표시면적	표시도안 견본 예시
표시도안 견본 2안 (중)	50cm^2 ~ 100cm^2	ㅇ 고시 별표 6, 부록 2(고시 P.126 상단 도안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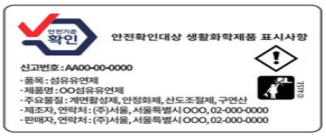
표시도안 견본 3안 (소)	50cm^2 미만	ㅇ 고시 별표 6, 부록 2(고시 P.126 하단 도안 참조) 품목: **000** 제품명: 000 신고번호: **0000**

※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 도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 부위 및 용기의 위·아래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함

(ii) 제품 겉면 이외의 표시 방법

(1)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1) 다만,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사항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품 겉면의 표시면적이 100cm^2 이상으로 표시도안 견본 1안이 부착된 경우에 한함)

2) 포장이란, 제품 겉면을 보호하거나 둘러싸는 것으로서 운송·보관 등의 취급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이 아닌 소비자에게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판매 또는 유통 시 보여지는 포장을 말함

(2) '(1)'항에도 불구하고, 표시면의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P.46 '(2)'에서 규정하는 방법과 같이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제품 겉면의 표시면적이 좁아 나머지 표시사항을 첨부문서로 이미 첨부되어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첨부문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

(3)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품 겉면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할 실익이 낮은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포장의 표시면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할 수 있으며, 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등을 사용하여 부착할 수 있습니다.

(가) 제품이 고형으로써 그 자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나)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이 훼손될 경우 제품의 상품성에 영향을 주는 수입 제품

(다) 제품 사용 시 제품 겉면에 부착된 라벨의 연소 등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제품 : 초 등의 제품

(라) 복사기, 공기청정기 등 기기의 보이지 않는 내부에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제조되는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한함

(iii) 표시 활자의 크기는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활자 크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번호	표시면의 면적	활자 크기
①	200 cm^2 이상	8 포인트 이상
②	200 cm^2 미만	6 포인트 이상

다) 적합한 표시도안 견본 선택 및 표시면적 계산 방법

(i) 제품 겉면, 포장의 표시면적에 다른 표시도안 견본 제출 방법

(1) 표시면적이 100 cm^2 이상인 경우 : 표시도안 견본 1안(대, 고시 P.125 도안)만 작성하여 제출

(2) 표시면적이 50 ~ 100 cm^2 인 경우 : 표시도안 견본 1안과 표시도안 견본 2안(중, 고시 P.126 상단 도안)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

(3) 표시면적이 50 cm^2 미만인 경우 : 표시도안 견본 1안과 표시도안 견본 3안(소, 고시 P.126 하단 도안)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

(ii) 제품 겉면, 포장 형태별 표시면적 측정 방법

번호	포장형태	표시면적 계산	비고
①	원통형 제품용기의 표시면적 (cm^2)	= 높이 X 둘레길이 ㅇ(높이) 바닥면부터 용기 마개를 끼우기 위해 굴곡이 지는 부분 전까지 ㅇ(둘레길이) 줄자를 이용하여 용기의 둘레를 측정	
②	납작한 원통형 용기의 표시면적 (cm^2)	= 높이 X 둘레길이 ㅇ(높이) 바닥면부터 용기 마개를 끼우기 위해 굴곡이 지는 부분 전까지(cm) ㅇ(둘레길이) 줄자를 이용하여 용기의 둘레를 측정(cm)	
③	납작한 유선형 용기의 표시면적 (cm^2)	= (가로 X 세로) X 2 ※ 용기 안쪽에 직사각형을 그려 가로(cm)와 세로(cm)를 측정하되, 앞면과 뒷면의 표시면적을 합산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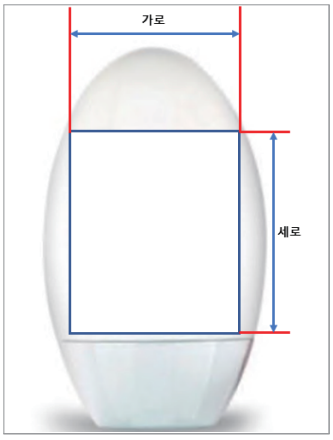

번호	포장형태	표시면적 계산	비고
④	손잡이형 용기의 표시면적 (cm^2)	= 높이 X 둘레길이 ㅇ(높이) 라벨부착 표시선의 높이(cm) ㅇ(둘레길이) 줄자를 이용하여 용기의 둘레를 측정(cm)	
⑤	구 모양의 용기 표시면적	※ 표시면적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Tag를 이용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토록 함	
⑥	사각 제품용기의 표시면적 (cm^2)	= (가로 X 세로) X 4 ※ 측정 단위는 cm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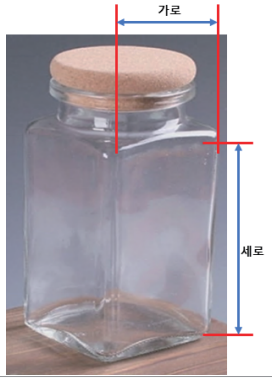
⑦	납작한 정사각형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cm^2)	= [(가로 X 세로) X 2] + [(가로 X 높이) X 4] ※ 측정 단위는 cm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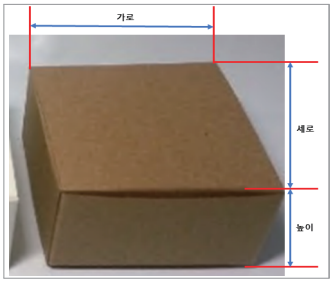
⑧	납작한 직사각형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cm^2)	= [(가로 X 세로) X 2] + [(가로 X 높이) X 2] + [(세로 X 높이) X 2] ※ 측정 단위는 cm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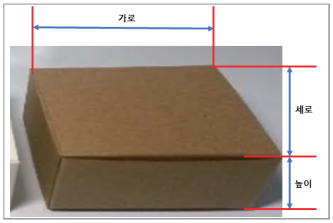

번호	포장형태	표시면적 계산	비고
⑨	선물용 직사각형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cm^2)	※ 윗면(⑤)은 모양으로 인해 표시면적에서 제외하되, 바닥면(⑥)은 계산하고, 전면(①)과 뒷면(③)의 면적이 같고, 양 측면(②, ④)의 면적이 같으므로 5개면(①, ②, ③, ④, ⑥)의 표시면적을 계산(측정단위는 cm 임) = (가로 X 세로) + [(가로 X 높이) X 2] + [(세로 X 높이) X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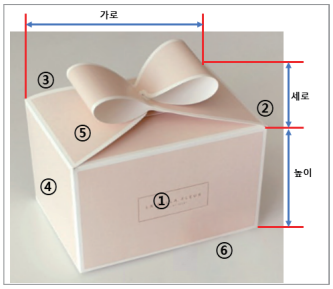
⑩	손잡이가 있는 선물용 직사각형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cm^2)	※ 포장상자의 전면과 뒷면, 바닥면의 표시면적을 측정(측정단위는 cm 임) = [(가로 X 세로) X 2] + (세로 X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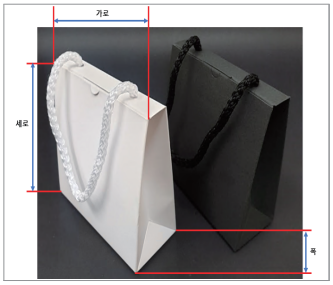

※ 1) 상기 예시에서 제시된 제품 용기 및 포장상자의 형태는 모든 형태의 제품의 용기 및 포장상자를 모두 고려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 제품의 용기 및 포장형태를 고려하여 유사한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계산방법을 참고하여 계산하여야 함

2) 또한,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계산결과를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스템 하단의 "기타 첨부서류"에 업로드하여야 함

붙임 2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계산 결과**

상호명	접수번호	제품명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번호	구분	중량 / 용량 등	용기 / 포장 형태	측정치수 (cm)	표시면적 (cm^2)	표시도안 견본 적용 여부
1						
2						
⋮						

신고 제품에 대한 용기 및 포장상자에 대한 표시면적 계산결과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20 . . .
상 호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다) 표시도안 견본 작성 및 업로드

(i) ①' 항의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 받은 후,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계산결과에 부합하는 표시도안 견본을 선택하여 작성한 뒤에 '②' 항의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합니다.

(1) 작성 시, '표시도안 미리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는 있으나, 고시 별표 6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고시 별표 6(고시 P.107~126)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시 별표 6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번호	작성항목	작성방법
①	품목	ㅇ고시 별표 1에 따라 분류된 제품의 종류를 **밑줄을 긋거나 활자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 눈에 띄는 방법**(이하 "눈에 띄는 방법"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품목 작성 예시 : **세정제**] - 시스템에 입력한 품목과 동일하여야 함 - 다 품목 제품으로 신고한 경우, 시스템에 입력한 품목 중 어느 하나의 품목만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없으며, 다 품목 제품으로 받은 품목을 모두 표기하여 판매하여야 함
②	제품명	ㅇ제품명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으로써, 시스템에 입력한 제품명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시스템에 입력한 제품명과 동일하여야 함 - 시스템에 입력한 제품명과 동일하여야 하며, 제품명에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 경우에는 '한글(영문)'의 방법으로 표기하되, 영문 활자의 크기는 한글 활자의 크기보다 작게 표기하여야 함 - 제품명 이외에 "품명"을 별도로 기재할 수 없음
③	용도	ㅇ고시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분류한 용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세정제 작성 예시 : 일반용(오븐용, 렌지후드용), 자동차용(실내용)] - 시스템에 입력한 용도와 동일하게 표기하여야 함 - 다 용도 제품의 경우, 시스템에 입력한 용도 중 어느 하나의 용도만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없으며, 다 용도 제품으로 받은 용도를 모두 표기하여 판매하여야 함 ※ 작성 예시('세정제, 살균제' 품목으로 동시에 받은 제품의 경우) : 세정제[일반용(오븐용, 렌지후드용, 욕실용), 자동차용(실내용)], 살균제[일반용(일반물체용, 배수관용), 특수목적용(공기소독용)] - 다만, 품목이 표백제인 경우에는 아래의 계열을 추가하여 표시하여야 함 [표백제 작성 예시 : 섬유용(과탄산나트륨계)] < 표백제의 계열 > 과탄산나트륨계, 과붕산나트륨계, 과산화수소계, 염소계, 기타 등
④	제형	ㅇ고시 별표 2에 따른 제형의 구분 중 분류 란의 제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세정제 작성 예시 : 액체형] - 시스템에 입력한 제형과 동일하게 표기하여야 함(단, 확인결과서의 제형은 '분무기형' 이나, 보충형 제품을 함께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표시도안 견본의 제형에 "보충형(분무기형)"으로 표기하여야 함) - 다 제형 제품의 경우, 시스템에 입력한 제형 중 어느 하나의 제형만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없으며, 다 제형 제품으로 받은 제형을 모두 표기하여 판매하여야 함
⑤	제조 연월	ㅇ제조 연월은 "○○년○○월", "○○○○년○○월", "○○.○○.(연.월.)", "○○○○.○○.(연.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제조 연월의 표시위치가 별도로 기재된 경우에는 제조 연월이 기재된 위치를 문구로 표시하거나 별도표시 등의 안내문구로 표시하여야 함 [제조 연월 작성 예시: 제품 상단 표시]

<table>
<tr><th>번호</th><th>작성항목</th><th>작성방법</th></tr>
<tr><td></td><td></td><td>- 또한, 수입 제품에 기 표시된 제조 연월의 형식이 국내와 달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아래 표와 같이 읽는 법에 대한 설명을 부연하여 표시하여야 함 [수입 제품 제조연월 작성 예시: AU9131 → 9(2019년)131(1월 31일)]
< 수입 제품에 표시된 제조 연월 표시방법 예시 >
· PROD19365 → 19(2019년)365(해당연도 365일째 일에 생산)
· 2019, 365 → 2019년 365일째 만들어짐(2019년 12월 31일)
· 19123130876 → 19(2019년)12(12월)31(31일)
· 19365123404028316 → 19(2019년)365(해당연도 365일째)
· AU9131 → 9(2019년)131(1월 31일)
· 9E261 → 9(2019년)E(5월)26(26일)</td></tr>
<tr><td>⑥</td><td>유통기한(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td><td>ㅇ유통기한은 제조 연월을 기준으로 "까지" 또는 "연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 입력한 유통기한과 동일하여야 함
- 다만, 시스템에는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입력하였으나 표시도안 견본에는 "제조일로부터 2년"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표기한 경우에는 적합하게 표기된 것으로 간주함</td></tr>
<tr><td>⑦</td><td>중량·용량·매수·크기</td><td>ㅇ제품별 중량·용량의 표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 입력한 중량·용량·매수·크기와 동일하여야 함
- 시스템에 여러 용량(25mL, 50mL, 80mL, 100mL, 150mL, 180mL, 200mL, 250mL)으로 표시된 경우,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에 부착하는 표시도안 견본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표시도안 견본이 달라지는 구분에서의 표시도안 견본이 모두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카트리지형, 필터형 등 매수 또는 크기로 표시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는 중량·용량 대신 인쇄 가능매수 또는 제품 크기 등의 표시로 대신할 수 있음</td></tr>
<tr><td>⑧</td><td>어는점(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에 한함)</td><td>ㅇ어는점은 물과의 혼합비율과 혼합비율에 따른 어는점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 또는 그래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 입력한 어는점과 동일하여야 함
- 다만, 표 또는 그래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적합하게 표시된 것으로 간주함</td></tr>
<tr><td>⑨</td><td>액성(세정제품 및 세탁제품에 한함)</td><td>ㅇ액성은 원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소이온농도(pH)에 따른 액성을 표3에 따라 "원액(액성)"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액성 작성 예시: 원액(알칼리성)]
- 시스템에 입력한 액성과 동일하여야 함
- 다만, 표준사용량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원액과 표준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소이온농도(pH)를 각각 표시할 수 있음
[액성 작성 예시: 원액(알칼리성), 표준사용량(약알칼리성)]
- 또한, 액성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든 액성을 표시하되, 수소이온농도의 범위값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액성 예시: 원액(중성, 약알칼리성, pH 7.0~10.0)], 수용성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유성" 등의 표시로 대신할 수 있음
< 수소이온농도(pH)에 따른 액성의 표시 문구 >
11.0을 초과하는 것 : 알칼리성
8.0 초과 ~ 11.0 이하 : 약알칼리성
6.0 이상 ~ 8.0 이하 : 중성
3.0 이상 ~ 6.0 미만 : 약산성
3.0 미만 : 산성</td></tr>
<tr><td>⑩</td><td>표준사용량(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td><td>ㅇ표준사용량은 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의 효과적인 기능을 낼 수 있는 적정 사용량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 입력한 표준사용량과 동일하여야 함
- 희석해서 사용하는 농축제품의 경우에는 희석비율에 따른 표준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함</td></tr>
</table>

번호	작성항목	작성방법
⑪	효과·효능(승인 대상 제품에 한함)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없으므로 작성방법 설명 생략
⑫	제조자,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제품을 제조한 자의 상호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조자, 주소, 연락처 작성 예시: ㈜서울, 서울특별시 OOO, 02-OOO-OOOO] - 시스템에 입력한 신고인정보와 동일하여야 함 - 신고인 기업 내에 신고 신청 제품에 대한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는 "고객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를 "연락처"에 표기할 수 있음
⑬	판매자, 주소, 연락처(제조자개발생산 방식(ODM)의 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ODM 제품을 주문·판매하는 자의 상호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판매자, 주소, 연락처 작성 예시: ㈜서울, 서울특별시 OOO, 02-OOO-OOOO] - 시스템에 입력한 판매자인정보와 동일하여야 함 - 신고인 기업 내에 신고 신청 제품에 대한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는 "고객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를 "연락처"에 표기할 수 있음
⑭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 제품에 한함)	○수입 제품을 최종 제조한 국가와 상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조국명, 제조회사 예시: 미국(U.S.A.), 아메리칸&코리안(American & Korean)] - 시스템에 입력한 '제조국명, 제조회사'와 동일하여야 하며, '한글(영문)'의 방식으로 표기한 경우에 영문 활자의 크기는 한글 활자의 크기보다 작게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재생용 잉크·토너의 원료 유통업체가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생용 잉크·토너의 재제조 및 재생업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원료 제조회사의 상호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⑮	수입자, 주소, 연락처 (수입 제품에 한함)	○제품을 수입한 자의 상호 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작성 예시: ㈜코리아, 서울특별시 OOO, 02-OOO-OOOO] - 시스템에 입력한 신고인정보와 동일하여야 함 - 신고인 기업 내에 신고 신청 제품에 대한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는 "고객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를 "연락처"에 표기할 수 있음
⑯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 비대상 제품의 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인 경우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였음을 나타내는 안내문을 제품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 지는 면(이하 "주표시면"이라 한다)에 표시하여야 함 **어린이보호포장** - 안내문의 표시는 그림1과 같이 분명히 보이는 충분한 폭의 적색 테두리(선 굵기 0.5 mm 이상) 안에 흰 배경 위의 적색 글씨(고딕체류)로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함 - 이 경우 도안의 모양은 바로 세워진 직사각형 형태여야 하며 활자 크기는 6 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가로·세로비율 및 테두리선 굵기를 조정할 수 있음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 -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제품 중 가정용 이외의 목적으로 제품을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가정용 제품이 아님" 또는 특정 사용처[자동차용 워셔액의 경우 작성 예시: 카센터용, 순간접착제의 경우 작성 예시: 산업용]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표시하여야 함 **가정용 제품이 아님**

번호	작성항목	작성방법
⑰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ㅇ제품에 사용된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계면활성제, 기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 ㉠을 아래의 구분 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 화학물질의 명칭 기재 방법 1) 화학제품안전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명을 우선 기재 2) 화학제품안전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물질의 명칭은 '굴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에 등재된 물질명,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용명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다만,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주요물질, 보존제, 계면활성제'의 구분에서 중복되는 경우에 그 물질을 대표하는 해당 구분에서만 표시할 수 있음 ㅇ주요물질 [주요물질 작성 예시: 파라핀왁스, 폴리다이메틸실록산] - 제품에 사용된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 제품의 상당부분(최대함량 등)을 구성하는 대표 물질(다만, 해당하는 물질이 물(정제수)인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물질의 명칭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함) · 제품의 주요 기능을 발현시키는 대표 물질 - 다만, 인쇄용 잉크·토너의 경우 '제품의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대표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만 표시할 수 있음 - 해당하는 물질이 향료일 경우에는 기능을 부가하여 "향료(물질명)"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두 개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에는 "향료(대표물질명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향료 주요물질 작성 예시: 향료(리모넨 등)] ㅇ보존제 [보존제 작성 예시: 에탄올] - 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물질로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ㅇ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알레르기물질 작성 예시: 아밀신남알] - 표4(고시 P.116~117)의 물질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목록 >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4. 시트랄 (CAS No 5392-40-5) 5. 유제놀 (CAS No 97-53-0)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7.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10. 신남알 (CAS No 104-55-2) 11. 쿠마린 (CAS No 91-64-5)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13.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14.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15. 파네솔 (CAS No 4602-84-0) 16.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17. 리날로올 (CAS No 78-70-6) 18.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19.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20.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21. 리모넨(CAS No 138-86-3, 5989-27-5, 5989-54-8) 22.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23.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24.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CAS No 31906-04-4) 25. 참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8-5)주) 26. 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7-4)주) 주) 아트라놀(CAS No 526-37-4)과 클로로아트라놀(CAS No 57074-21- 2)은 참나무이끼추출물과 나무이끼추출물의 구성성분임

번호	작성항목	작성방법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의 표시사항 명칭은 "알레르기물질"로 축약할 수 있음 ㅇ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 작성 예시: 알킬벤젠술폰산염(음이온계)] - 제품에 계면활성제로 사용된 모든 물질 및 아래표에 따른 계열을 "물질명(계열)"로 표시하여야 함 < 계면활성제의 계열 > 음이온계, 비이온계, 양쪽성 이온계, 양이온계, 기타 등 - 계면활성제로 사용된 물질에 대한 계열이 '음이온계, 비이온계, 양쪽성 이온계, 양이온계' 이외의 계열인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계열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열을 표시하되, 계열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로 표시할 수 있음 ㅇ기타물질 [기타물질 작성 예시: 수산화나트륨, 이소프로필벤젠] - 제품에 아래의 구분에 따른 물질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그 함량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유독물질의 지정고시」또는 환경부 고시「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포함)※ ㉡ ※ ㉡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의 물질 표시방법 1) 안전기준 확인 신고 이후에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의 유효기간 동안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2) 확인의 유효기간 갱신 및 신고를 한 제품 중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갱신된 확인의 유효기간 동안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 ·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 · 문신용 염료에 사용된 모든 물질※ ㉢(다만,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물질은 생략 가능) 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없을 수준의 소량 함유 물질 나) 생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는 물질 다) 안정화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물질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물질 ※ ㉢ 문신용 염료에 사용된 물질의 표시방법 1) 문신용 염료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물질부터 표시(다만, 1% 이하로 사용된 물질은 그 함량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표시할 수 있음) 2)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물질의 명칭을 표시 3) 수소이온농도(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그 물질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표시할 수 있음 - 해당 물질이 산도조절제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기능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기타물질 작성 예시: 황산(산도조절제)] - 다만, 해당 물질이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의 구분 중 어느 하나의 구분에서 그 물질의 명칭이 이미 표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⑱	신호어 및 그림문자	ㅇ제품에「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그 함량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또는 환경부 고시「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에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따른 신호어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번호	작성항목	작성방법
		- 다만, 해당 물질이 산도조절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신호어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표시를 말하며, **<u>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u>**하여야 함 - 그림문자는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표시를 말하며,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면적이 1 cm^2이상이 되도록 표시하여야 함
⑲	사용방법(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은 **<u>'어린이보호포장 용기의 여는 방법(필요시 닫는 방법 포함)'에 대한 문구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u>**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 입력한 사용방법과 동일하여야 함 - 이 경우, 표시면이 아니라 어린이보호포장 용기의 외면 덮개 등에 해당 방법에 대한 문구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⑳	사용상 주의사항	○고시 별표 5에 따른 사용상 주의사항 **<u>필수표시 문구에 한하여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u>**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 입력한 사용상 주의사항과 동일하여야 함 - 다만, 중복되는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거나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상세정보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음 ○시스템에 입력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중 고시 별표 6의 부록 1(그림기호 표시방법, P.124)에 따른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가 사용되어 해당 문구 대신 그에 상응하는 그림기호로 표시한 경우에는 부록 1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림기호와 해당 문구를 중복으로 표기하지 않아야 함
㉑	응급처치	○고시 별표 5에 따른 응급처치 **<u>필수표시 문구에 한하여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u>**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 입력한 응급처치 사항과 동일하여야 함 - 다만, 중복되는 응급처치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거나 응급처치를 위한 상세정보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음 ○시스템에 입력한 응급처치 문구 중 고시 별표 6의 부록 1(그림기호 표시방법, P.124)에 따른 응급처치 문구가 사용되어 해당 문구 대신 그에 상응하는 그림기호로 표시한 경우에는 부록 1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림기호와 해당 문구를 중복으로 표기하지 않아야 함
㉒	안전기준확인 마크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기준확인 마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마크(유색/단색) | 비율 - 이 경우, 마크의 색상은 유색 또는 단색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마크의 크기는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함
㉓	안전기준적합 확인 신고번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번호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u>신고번호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u>**하여야 한다. [작성 예시: **<u>OOOO</u>**] - 신고번호는 향후 발급되는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10자리 번호를 표기하는 것이나 신고증명서 발급 전이므로 "0000"으로 표기하는 것임 - 다만,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후에는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10자리 번호를 표시도안 견본에 표기(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한 후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여 제품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함

※ 1) 표시도안 견본 작성 시, 시스템에 첨부된 양식은 신고인이 '글자체, 줄간격, 셀병합 등'을 신고제품의 표시면적을 고려하여 수정 후 사용하여야 함

2) 표시도안 견본 양식을 수정하는 경우, 고시 별표 6(고시 P.107~122)을 준수하여 수정하여야 함(아래의 표시도안 견본 1안 작성 예시 참조, 제품용기의 표시면적 115cm^2, 포장상자의 표시면적은 185cm^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0000** / •품목: **세정제, 살균제** / •제품명:123qqq_테스트

•용도: 세정제[일반용(욕실용, 렌지후드용, 오븐용)], 살균제[일반용(배수관용, 일반물체용)] / •제형:분무기형 / •용량:150mL / •제조 연월:제품 하단 별도표시 / •액성:원액(약산성)

•제조자, 주소, 연락처: 테스트기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02-2284-1862

•사용 물질 주요물질: 정제수, 향료(디옥틸아디페이트 등), 차아염소산 / 알레르기물질: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시트로넬롤, 유제놀, 제라니올, 리모넨, 리날로올 / 계면활성제: 아주까리기름,수소첨가,에톡실레이티드(비이온계)

•사용방법: ① 사용 전 용기를 충분히 흔들어 줍니다. / ② 제품 사용 전, 굵은 오염물질은 간단한 제거 후 이용해 줍니다. / ③ 본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좀더 깨끗한 세정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 ① 용기를 항상 밀봉하여 보관하시오. / ② **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 ③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 ④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 시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응급처치: ①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오. / ② **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받으시오.** / ③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3) 제품용기를 전용 포장상자에 담아 판매하거나, 전용 용기가 구성품으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 포장상자와 전용 용기의 표시면적을 계산하여 적합한 표시도안 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표시도안이 제품에 부착된 견본 사진

가) 제품의 사진은 앞면과 뒷면을 구분하고 제품의 전체 형태가 드러나도록 찍은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경우에 제품 용기의 주표시면에 "어린이보호포장"이 표시되어야 하고, 제품 뒷면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견본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1) 만일, 고시 P.96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 기준에는 해당되나,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거나, 고시 P.98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용 제품이 아님 또는 카센터용 또는 산업용 등" 표시를 제품 용기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용기 또는 전용 포장상자에 부착한 표시도안 견본의 표시내용 이외의 나머지 사항을 첨부문서에 작성하여 제품 판매시에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후면사진을 촬영 시에도 나머지 표시사항이 기재된 첨부문서와 함께 제품용기 또는 전용 포장상자에 부착한 표시도안 견본의 내용이 보이게 나란히 배열하여 함께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하여야 함

- 전용 포장상자가 없고 제품용기의 표시면적이 좁아 표시도안 견본 2안(중) 또는 표시도안 견본 3안(소)이 부착된 경우
- 전용 포장상자 및 제품용기 모두 표시면적이 좁아 표시도안 견본 2안(중) 또는 표시도안 견본 3안(소)이 부착된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제품 중 가정용 이외의 제품>

<표시도안이 제품에 부착된 전면사진 예시>

<표시도안이 제품에 부착된 후면사진 예시>

나) 신고제품은 제품 판매 전의 제품이므로 표시도안이 제품에 부착된 견본사진에 대하여 디자인을 완료하여 업로드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전면사진 및 후면사진 촬영시 한글파일 또는 프린트물을 이용하여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에 부착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 '가)'항을 내용을 참고하여 '①'에는 제품의 전면 사진을 업로드하고, '②'에는 제품 후면 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ⅰ) 전면사진은 제품의 전면이 보이게 사진을 촬영하여 주시되, 전용 포장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포장상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여 주세요.

※ 만일, 신고제품에 대하여 중량·용량·매수·크기를 복수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제품을 나란히 배열하여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하기 사진은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요망)

(ⅱ) 후면사진은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의 표시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적합한 표시도안 견본을 부착한 후 제품용기와 포장상자에 부착된 표시도안 견본이 보이게 나란히 배열하여 사진을 촬영한 뒤 후면사진에 업로드해 주세요

(1) 만일, 신고제품에 대하여 중량·용량·매수·크기를 복수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각의 중량·용량·매수·크기의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에 표시도안 견본을 부착하여 나란히 배열한 뒤 한번에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해 주세요

(2) '(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중량·용량·매수·크기가 많아 한번에 사진을 촬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에 부착하는 표시도안 견본의 구분별로 하나의 제품만을 나란히 배열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제품에 대한 용량이 '15mL, 25mL, 35mL, 50mL, 75mL, 100mL, 120mL' 7개 용량으로 신고한 경우 표시도안 견안 견본은 우측 그림과 같이 제품용기에 부착하는 표시도안 견본은 상이하나 포장상자에 부착하는 표시도안 견본은 동일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정리

- 제품용기 표시도안 견본 구분
  - 표시도안 견본 1안 : 100mL, 120mL
  - 표시도안 견본 2안 : 50mL, 75mL
  - 표시도안 견본 3안 : 15mL, 25mL, 35mL
- 포장상자 표시도안 견본 : 모든 용량에 표시도안견본 1안을 부착

(3) 제품용기를 전용 포장상자에 담아 판매하거나, 전용 용기가 구성품으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 포장상자와 전용 용기에 대해서도 함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여 전용 포장상자 및 전용 용기에도 표시도안 견본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안전기준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가) 해당 서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 시 작성·제출했던 고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말합니다.

나) 시험검사기관에 작성·제출했던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본(단, 직인이 찍혀 있거나 대표자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기타 첨부 서류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두 개 이상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 버튼을 추가로 생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ⅰ) "제조자개발 제조방식(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주문자별로 납품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ODM 제품을 여러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문자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납품계약서 사본 등 포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ⅱ) '(ⅰ)'과 관련하여 1개 이상의 기업을 거쳐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ⅲ) '(ⅰ)'과 관련하여 납품계약서 상의 가격 정보를 숨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격과 관련된 부분을 가린 상태에서 복사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납품계약서 상에 제품명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ODM제조자가 기술원장에게 발송하는 공문 형식으로 해당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ⅳ) 시스템의 함유성분(전성분)에 업로드한 혼합물질의 MSDS 자료에 "Other aromatic materials" 또는 "Fragrance compound" 또는 "기타" 등으로 표기된 경우, 물질 제조자에게 문의하여 알러젠리스트 또는 화학물질독성정보(LOC) 등을 공급받아 해당 자료를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ⅴ) 여러 개의 중량 또는 용량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각 중량 또는 용량 등의 제품용기 및 포장에 대한 고시 별표 3에 따른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용기 재질이 상이한 경우 : 용기 재질이 상이한 추가 제품에 대하여 확인결과서 발급 기관에 문의하여 고시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의뢰 신청 후,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기타 첨부서류에 업로드 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2) 용기 재질이 동일한 경우 : 확인결과서를 받은 제품용기 재질과 추가한 중량/용량/매수/크기 재질이 동일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타 첨부서류에 첨부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을 요청(작성 양식 참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중량 / □용량 / □매수 / □크기 추가 용기 재질 동일 여부 확인서**

상호명	접수번호	제품명	확인결과서 외 추가된 중량/용량/매수/크기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구분	몸체 재질	두껑(덮개) 재질	실링제 재질
확인결과서를 받은 제품의 용기 재질			

번호	구분	몸체 재질	두껑(덮개) 재질	실링제 재질
1				
2				
3				
4				
5				
6				
7				
8				
9				
⋮				

○ 확인결과서 상의 용기 재질과 □중량 / □용량 / □매수 / □크기 추가 제품의 용기 재질은 상기 작성 내역과 같으며, 작성 내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20 . . .
상 호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작성 예시>

붙임 3 **□중량 / ■용량 / □매수 / □크기 추가 용기 재질 동일 여부 확인서**

상호명	접수번호	제품명	확인결과서 외 추가된 용량	작성자
테스트기업	A-200515-0000	123qqq_테스트	50mL, 75mL, 150mL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구분	몸체 재질	두껑(덮개) 재질	실링제 재질
확인결과서를 받은 제품의 용기 재질	LDPE	PP	silicone

번호	구분	몸체 재질	두껑(덮개) 재질	실링제 재질
1	50 mL	LDPE	PP	silicone
2	75 mL	LDPE	PP	silicone
3	150 mL	LDPE	PP	silicone

○ 확인결과서 상의 용기 재질과 □중량 / ■용량 / □매수 / □크기 추가 제품의 용기 재질은 상기 작성 내역과 같으며, 작성 내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2020. 05. 20.
상 호 명 : 테스트기업
대 표 자 : 백 소 저 (서명 또는 인)

(vii) 2액형 등의 제품의 경우, 1제 또는 주제에 대하여 시스템의 함유성분(전성분)에 입력한 후, 나머지 2제 또는 경화제에 대하여 별도의 양식에 모든 함유성분을 작성하여 기타 첨부서류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매뉴얼 P.45 참조)

ix)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내용 확인 및 제출

1)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iii) ~ viii)'항까지 시스템에 입력(첨부자료 등록 포함)한 경우에 '①'의 표시 사항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표시사항 미리보기는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6항과 고시 별표 5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23개 항목에 대하여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시스템에 입력한 사항이 표출된 것입니다.

※ '20년 상반기까지 '표시도안 미리보기'로 표출된 사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고시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년 하반기에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고시와 부합화 예정임

4) 표시도안 미리보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경우, '①' 정합성검사 버튼을 클릭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②'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가.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요청 메일 확인

ⅰ) 일반회원은 신고 신청 시 등록한 메일을 통해 아래와 같은 메일이 수신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메일 수신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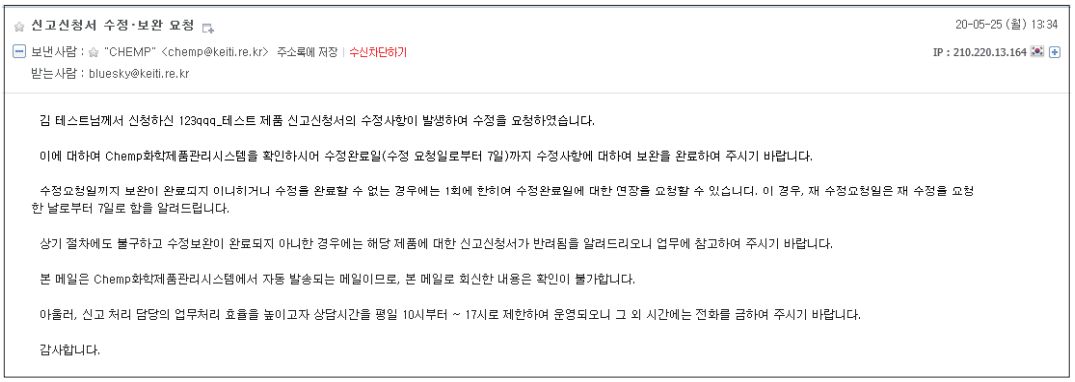

ⅱ) 해당 메일은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되는 메일이므로 수신된 메일로 답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 답장을 한 경우, 기술원의 신고검토자가 확인이 불가하오니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평일 10시부터 17시 사이에 유선전화를 통해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내용 확인

ⅰ) 시스템에 접속하여 '①'항의 신청현황정보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신청현황 정보에 표기된 '②'항의 제품명을 클릭하여 수정보완 내역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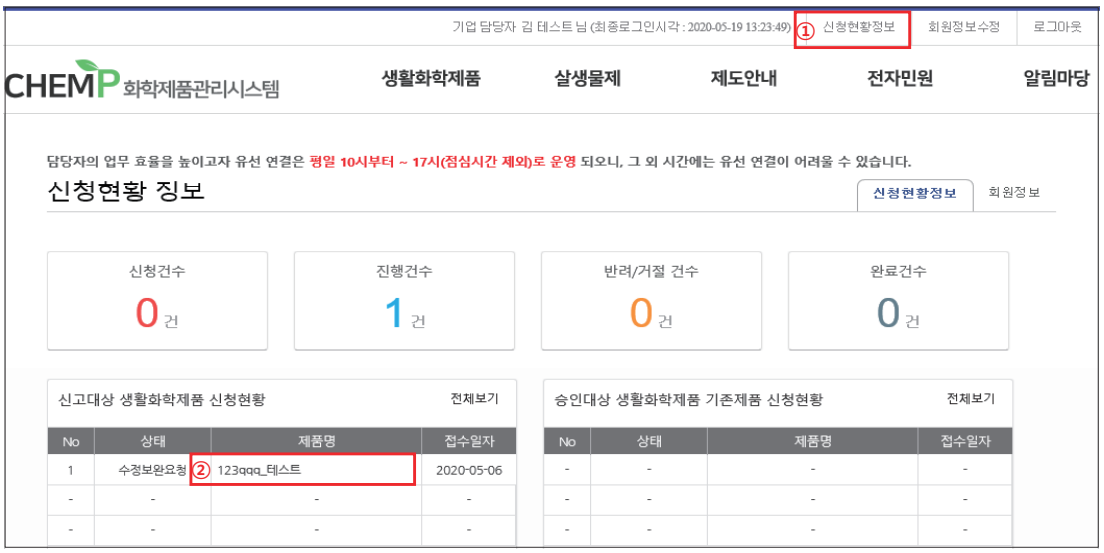

ⅱ) 또는, 시스템 접속 후 나타나는 초기화면 상단의 '①'항의 생활화학제품 글씨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나타나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②)"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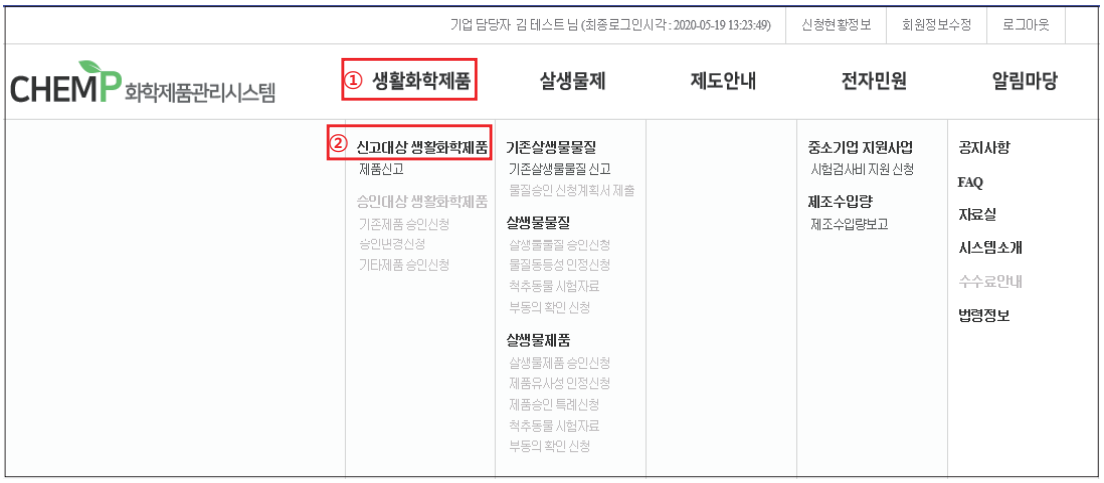

1) 아래와 같이 화면이 바뀌면 '①'항의 제품명을 클릭합니다.

2) 아래와 같이 해당 제품에 대한 신고 신청 화면에서 붉은색(적색)으로 표시된 항목이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수정보완사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일반회원은 각 항목별 수정보완사유를 확인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고시 별표 5 및 별표 6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스템 상단에 표기된 기술원 담당에게 문의(평일 10시부터 17시 사이)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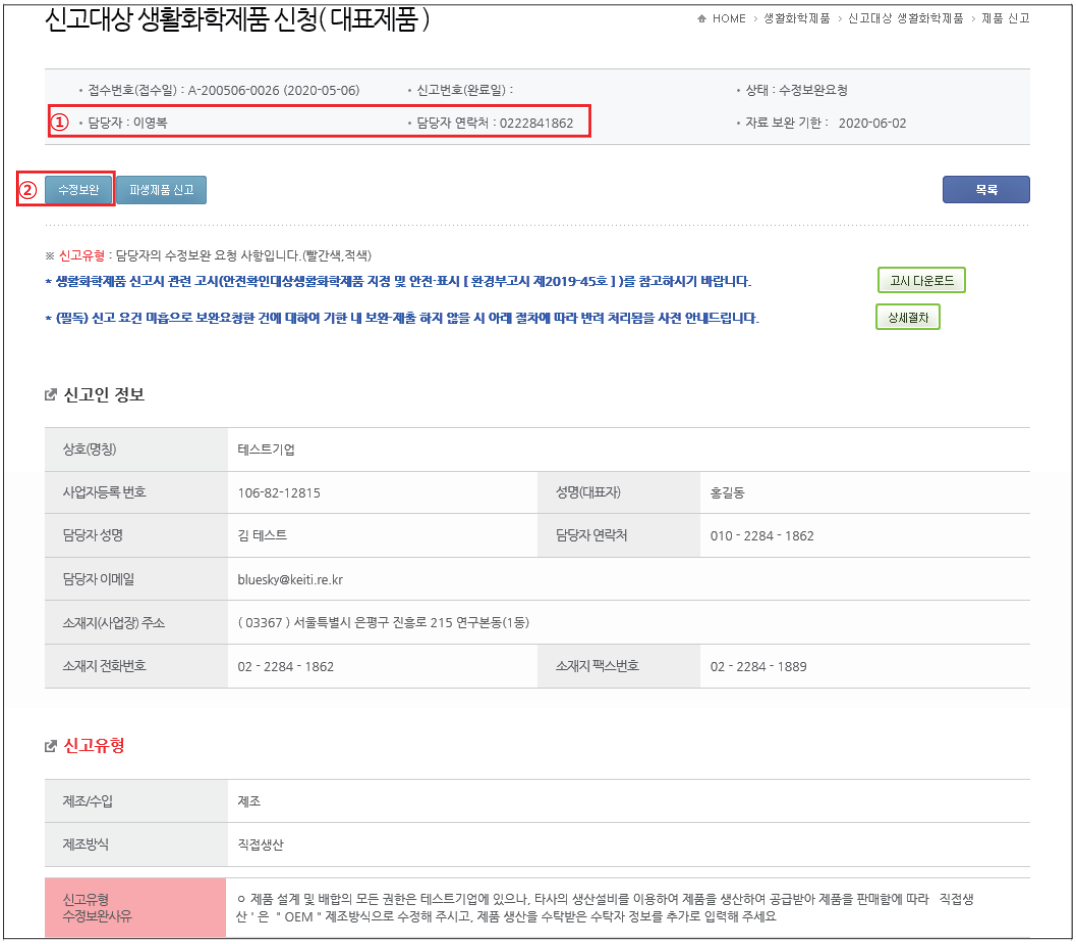

4) 일반회원은 수정보완요청 사항을 모두 이해한 경우, '②'항의 "수정보완"을 클릭하여 수정보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ⅰ) 일반원칙

1)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제품에 대하여 수정보완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회원으로 등록자가 입력한 메일로 '신고신청서 수정보완 요청' 메일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발송되며,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메일과 시스템의 수정보완 사항을 확인하여 수정보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수정보완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보완을 완료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3) 협력업체 자료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 보완 기한까지 수정보완제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술원 담당과 협의하여 자료 보완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4) 특별한 사유없이 자료 보완 기한까지 수정보완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메일 등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자료 보완 기한이 연장(추가 7일)됨을 알려드립니다.

5) '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수정보완제출을 하지 않는 대표제품의 경우에는 장기 미보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공문이 발송되며,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보완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건이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 파생제품 신고 건은 특별한 사유없이 자료 보완 기한까지 수정보완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메일 등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자료 보완 기한이 연장(추가 7일)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보완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 보완 기한 완료일 다음 날에 해당 신고 제출 건이 즉시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ⅱ) 수정보완 및 수정보완 제출

1) 일반회원은 수정보완요청 사항을 모두 이해한 경우, '①'항의 "수정보완"을 클릭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수정 화면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라는 메세지가 나타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수정보완 페이지로 전환되면 '①'항과 같이 각 항목의 글씨가 붉은색(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항목이므로 각 항목별 수정보완사유(②)를 확인하여 수정보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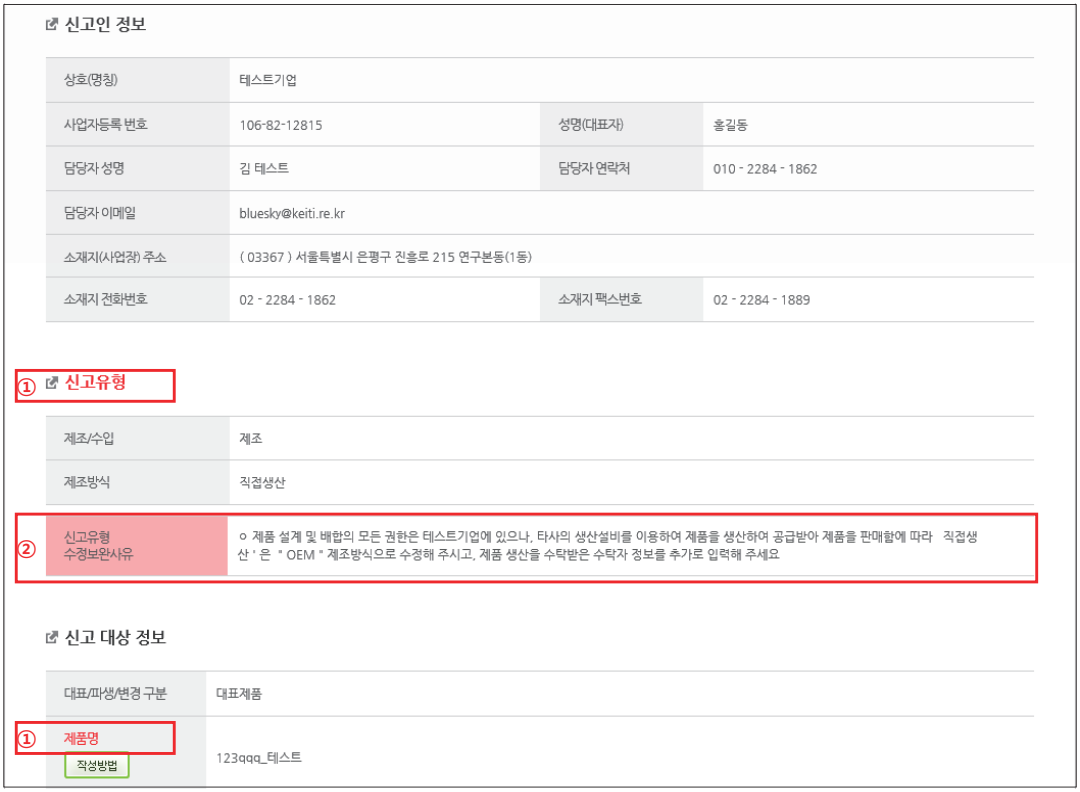

4) 각 항목별 수정보완사유에 따라 수정보완을 완료한 후 수정보완사유와 수정보완한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5) 수정보완사유에 대하여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첨부서류 – 표시도안 견본' 오른쪽에 있는 '①'항의 표시도안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수정한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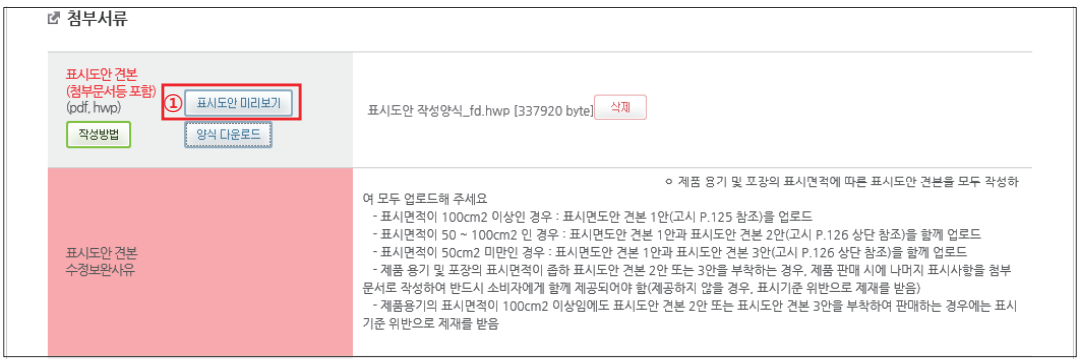

※ 표시도안 미리보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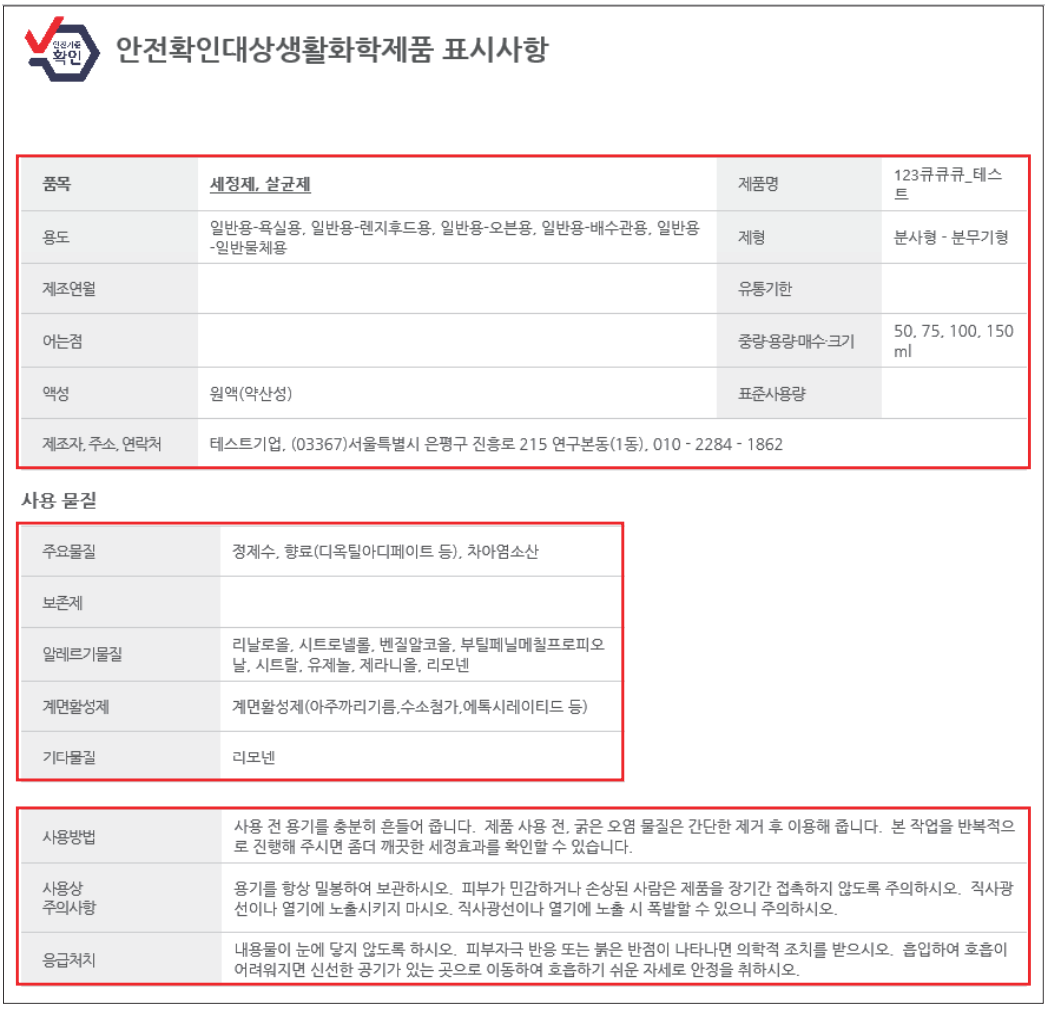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품목	세정제, 살균제	제품명	123큐큐큐_테스트
용도	일반용-욕실용, 일반용-렌지후드용, 일반용-오븐용, 일반용-배수관용, 일반용-일반물체용	제형	분사형 - 분무기형
제조연월		유통기한	
어는점		중량·용량·매수·크기	50, 75, 100, 150 ml
액성	원액(약산성)	표준사용량	
제조자, 주소, 연락처	테스트기업, (03367)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연구본동(1동), 010 - 2284 - 1862		

사용 물질

주요물질	정제수, 향료(디옥틸아디페이트 등), 차아염소산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리날로올, 시트로넬롤, 벤질알코올,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시트랄, 유제놀, 제라니올, 리모넨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아주까리기름,수소첨가,에톡시레이티드 등)
기타물질	리모넨

사용방법	사용 전 용기를 충분히 흔들어 줍니다. 제품 사용 전, 굵은 오염 물질은 간단한 제거 후 이용해 줍니다. 본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좀더 깨끗한 세정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용기를 항상 밀봉하여 보관하시오. 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 시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응급처치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오. 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받으시오.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5) 수정보완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①'항의 "수정보완 제출"을 클릭하여 수정보완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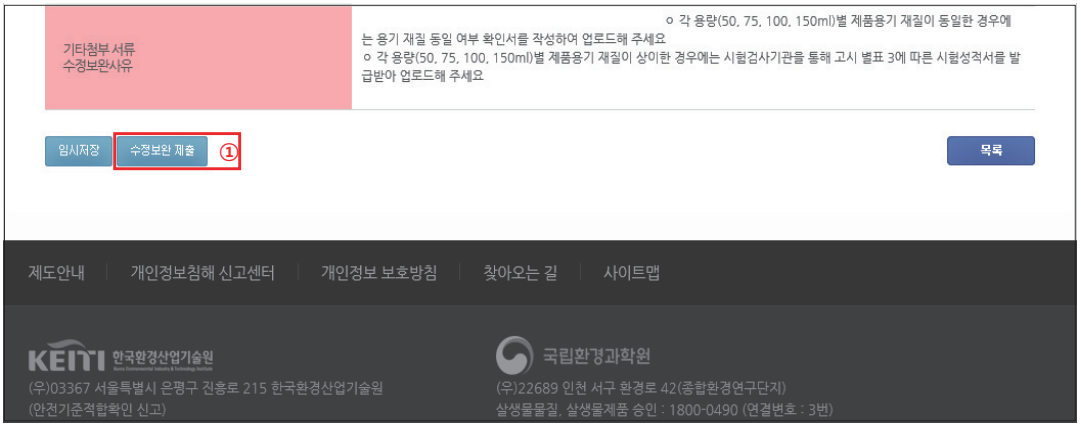

6) 수정보완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기술원의 신고검토자가 검토한 결과 화학제품안전법 및 고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재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본 매뉴얼 P.22 ~ P.62 절차를 준용하여 다시 수정보완을 완료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확인 및 활용

가.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검토 단계 메일 확인

ⅰ) 일반회원이 신고한 신청 제품에 대하여 더 이상의 수정보완이 필요하지 않다고 기술원의 신고검토자가 판단하여 증명서 발급 검토 단계로 이송한 건에 대해서는 일반회원이 등록한 메일로 "신고증명서 발급 검토" 메일이 발송됩니다.

ⅱ) 'ⅰ)'항에 따른 메일을 받은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및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메일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ⅲ) 'ⅱ)'항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 및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 요청'은 반려되며, 해당 신고 제품에 대하여 다시 수정보완 요청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메일 확인

ⅰ) 일반회원이 신고한 신청 제품에 대하여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일반회원이 등록한 메일로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메일이 발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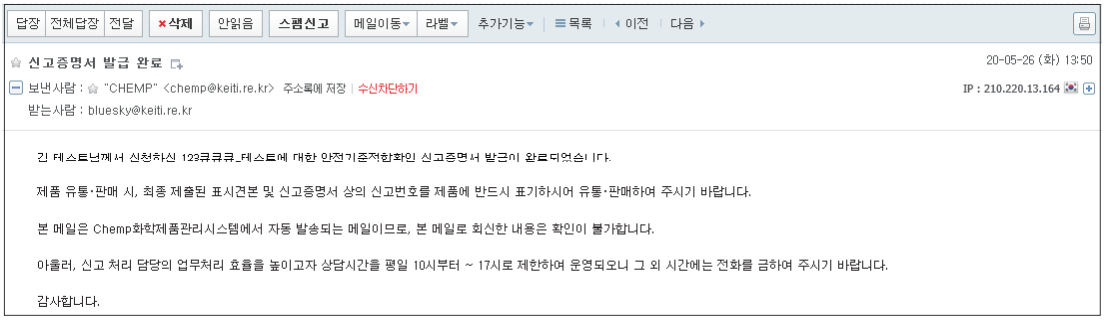

ⅱ) 'ⅰ)'항에 따라 메일을 받은 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①'항의 신청현황정보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신청현황에 표기된 '②'항의 제품명을 클릭합니다.

iii) 또는, 시스템 접속 후 나타나는 초기화면 상단의 '①'항의 생활화학제품 글씨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나타나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②)"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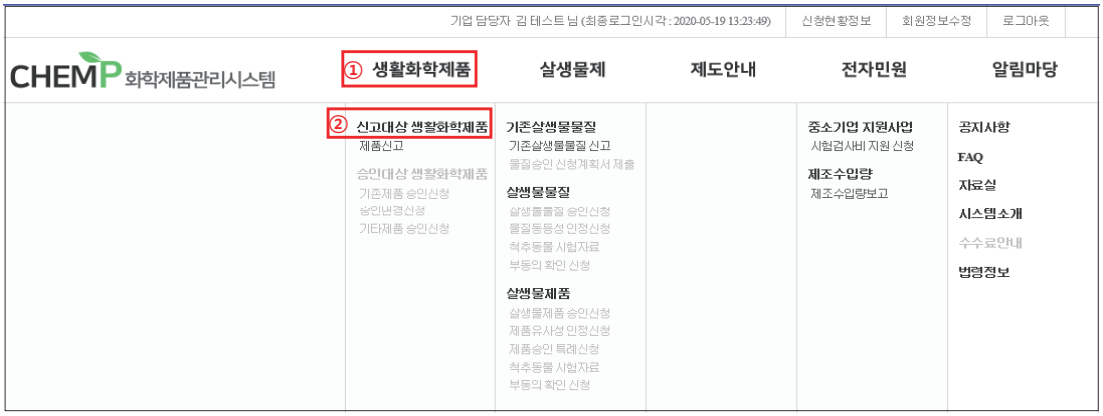

1) 아래와 같이 화면이 바뀌면 '①'항의 제품명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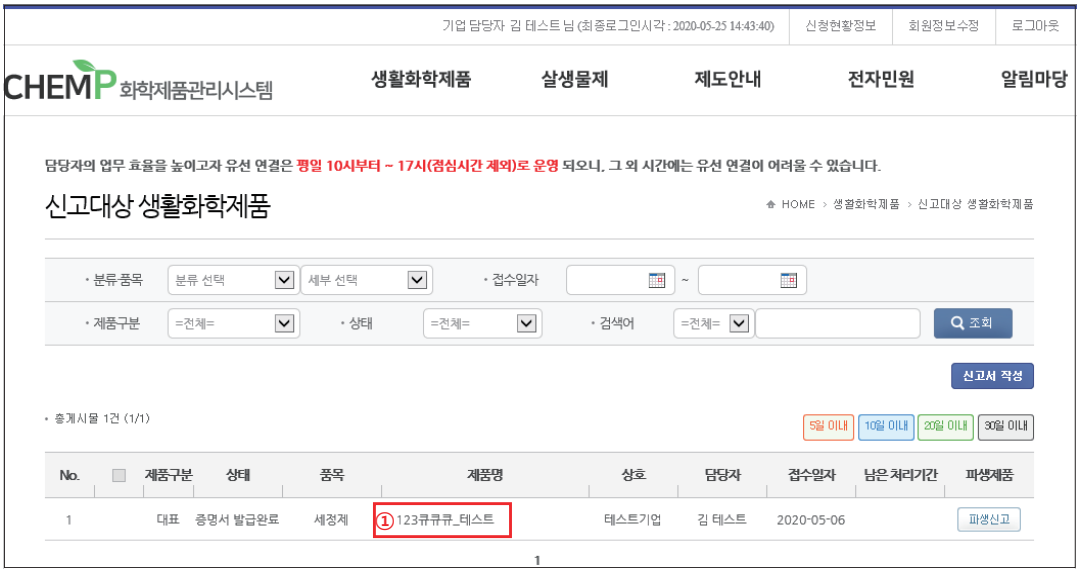

iv) ‘ⅱ)’항 또는 ‘ⅲ)’항에 따른 제품명 클릭하면 나타나는 신고 제품 내역에서 ‘①’항의 “신고 증명서 출력” 버튼을 클릭한 후 해당 신고증명서를 인쇄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출력 예시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전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제 CB20-01-0450 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신고인	상호(명칭) 테스트기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06-82-12815
	성명(대표자) 홍길동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김 테스트 010-2284-1862 (전자우편 :bluesky@keiti.re.kr)
	소재지(사업장)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연구본동(1동)	(전화번호 :02-2284-1862) (팩스번호 :02-2284-1889)
신고 제품	제조 수입 [√] 제조 [ ] 수입	품목 살균제, 세정제
	제품명 123큐큐큐_테스트	용도 일반용(욕실용) 외 4 종
	제형 분사형 분무기형	중량·용량·매수 50, 75, 100, 150 ml
	제조국명(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수입의 경우)
	신고사항 기재사항 참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20 년 05 월 26 일

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장

210mm×297mm[백상지(150g/㎡)]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이면 기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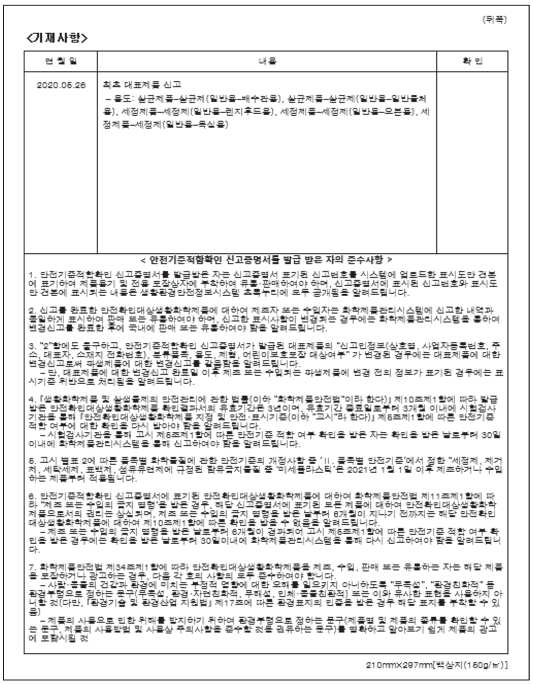

(뒤쪽)

<기재사항>

변 경 일	내용	확 인
2020.05.26	최초 대표제품 신고 - 용도: 살균제품-살균제(일반용-배수관용), 살균제품-살균제(일반용-일반물체용), 세정제품-세정제(일반용-렌지후드용), 세정제품-세정제(일반용-오븐용), 세정제품-세정제(일반용-욕실용)	

<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의 준수사항 >

1.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신고증명서 표기된 신고번호를 시스템에 업로드한 표시도안 견본에 표기하여 제품용기 및 전용 포장상자에 부착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하며, 신고증명서에 표시된 신고번호와 표시도안 견본에 표시되는 내용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 모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2. 신고를 완료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한 내역과 동일하게 표시하여 판매 또는 유통하여야 하며, 신고한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고를 완료한 후에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대표제품의 "신고인정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분류품목, 용도, 제형,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 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로써 파생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를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완료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파생제품에 변경 전의 정보가 표기된 경우에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고시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규정된 함유금지물질 중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6.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의 권리는 상실되며,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
 -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210mm×297mm[백상지(150g/㎡)]

v) 'iv)'항에 따라 인쇄한 신고증명서 상단에 표기된 신고번호(10자리 번호)를 시스템에 업로드한 표시도안 견본에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에 부착한 후 신고제품을 판매 또는 유통하여야 합니다.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신고번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제 CB20-01-0450 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상호(명칭): 테스트기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06-82-12815
표시도안 견본에 신고번호 적용 예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CB20-01-0450** / •품목: **세정제, 살균제** / •제품명:123큐큐큐_테스트 •용도: 세정제[일반용(욕실용, 렌지후드용, 오븐용)], 살균제[일반용(배수관용, 일반물체용)] / •제형:분무기형 / •용량:150mL / •제조 연월:제품 하단 별도표시 / •액성:원액(약산성) •제조자, 주소, 연락처: 테스트기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02-2284-1862 •사용 물질 주요물질: 정제수, 향료(디옥틸아디페이트 등), 차아염소산 / 알레르기물질: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시트로넬롤, 유제놀, 제라니올, 리모넨, 리날로올 / 계면활성제: 아주까리기름,수소첨가,에톡실레이티드(비이온계) •사용방법: ① 사용 전 용기를 충분히 흔들어 줍니다. / ② 제품 사용 전, 굵은 오염물질은 간단한 제거 후 이용해 줍니다. / ③ 본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좀더 깨끗한 세정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 ① 용기를 항상 밀봉하여 보관하시오. / ② **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 ③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 ④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 시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응급처치: ①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오. / ② **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받으시오.** / ③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신고증명서 이면에 기재된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 신고제품을 판매 또는 유통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의 준수사항

i)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신고증명서 표기된 신고번호를 시스템에 업로드한 표시도안 견본에 표기하여 제품용기 및 전용 포장상자에 부착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하며, 신고증명서에 표시된 신고번호와 표시도안 견본에 표시되는 내용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 모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ii) 신고를 완료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한 내역과 동일하게 표시하여 판매 또는 유통하여야 하며, 신고한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고를 완료한 후에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iii) 'ii)'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대표제품의 "신고인정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분류품목, 용도, 제형,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 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로써 파생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를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대표제품에 대한 신고인정보 변경 신고 완료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파생제품에 변경 전의 정보가 표기된 경우에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iv)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v) 고시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규정된 함유금지물질 중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vi)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의 권리는 상실되며,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vii)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환적)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
-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viii)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제10조제6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ix)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x)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2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최초보고 : 2020년 3월 31일, 그 이후의 보고 : 최초보고일이 속한 연도에서 매 2년이 되는 연도의 3월 31일, 제출처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xi)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고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한 자
-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xii)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단, 상기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xiii) 화학제품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xiv) 화학제품안전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Ⅳ

파생제품 안전기준적합 확인 신고 신청·수정보완· 증명서 발급

Ⅳ. 파생제품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신청·수정보완·증명서 발급

1. 파생제품 신고 신청

가. 파생제품 신고 신청 일반사항

ⅰ)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파생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적확인 신고를 신청한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생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가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ⅱ) "ⅰ)"항에 따른 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 신청이 접수된 날을 산입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수정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보완을 완료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자료 보완 기한(7일)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1)"항의 수정보완 독촉에 따른 자료보완 기간까지 수정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 보완 기한 완료일 그 다음 날에 해당 신고 건이 즉시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ⅲ) 시스템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보완 요청, 증명서발급 요청, 증명서발급완료" 단계별로 담당자 메일로 안내 메일이 발송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파생제품"이란 고시 제2조제7호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하 '대표제품'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고시 제5조에 다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 고시 제5조제6항에 따라 파생제품은 대표제품이 파생제품을 대표해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되,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용도 또는 제형의 변경, 안전기준 물질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생제품으로 신고가 불가함

v) 파생제품 신고 시, 기본적으로 대표제품에 대한 신고 정보를 모두 가져오므로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하면 됩니다.

vi) 'v)'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시스템을 통해 대표제품 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용기의 재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고시 별표 3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기타 첨부서류' 란에 업로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vii) 대표제품에 대한 신고증명서 발급 후 기업정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변경,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V. 안전기준적합확인 변경신고"를 참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나. 파생제품 신고 신청

i) 파생제품 신고 신청 절차

1)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①'항의 신청현황정보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신청현황에 표기된 '②'항의 대표제품명을 클릭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제품 정보 화면으로 전환되면 화면 상단에 있는 '①'항의 "파생제품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파생제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또는, 시스템 접속 후 나타나는 초기화면 상단의 '①'항의 생활화학제품 글씨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나타나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②)"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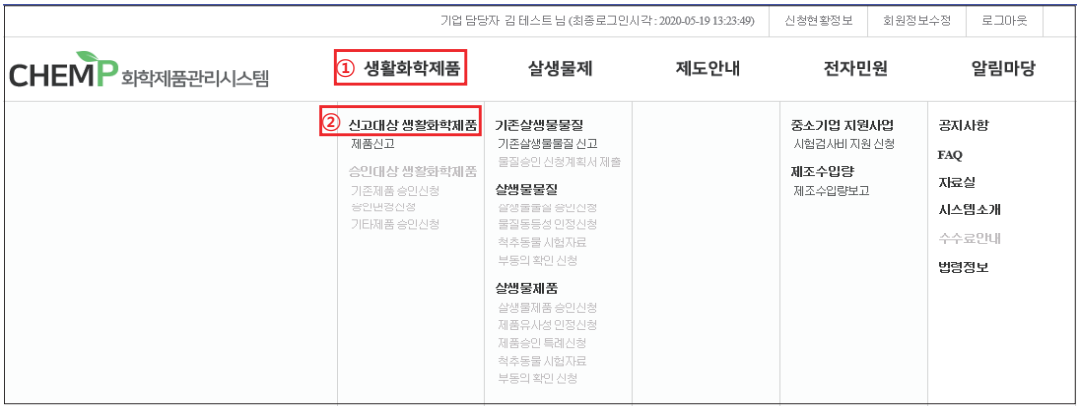

4)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대표제품 오른쪽에 표시된 '①'항의 "파생제품" 버튼을 클릭하면 파생제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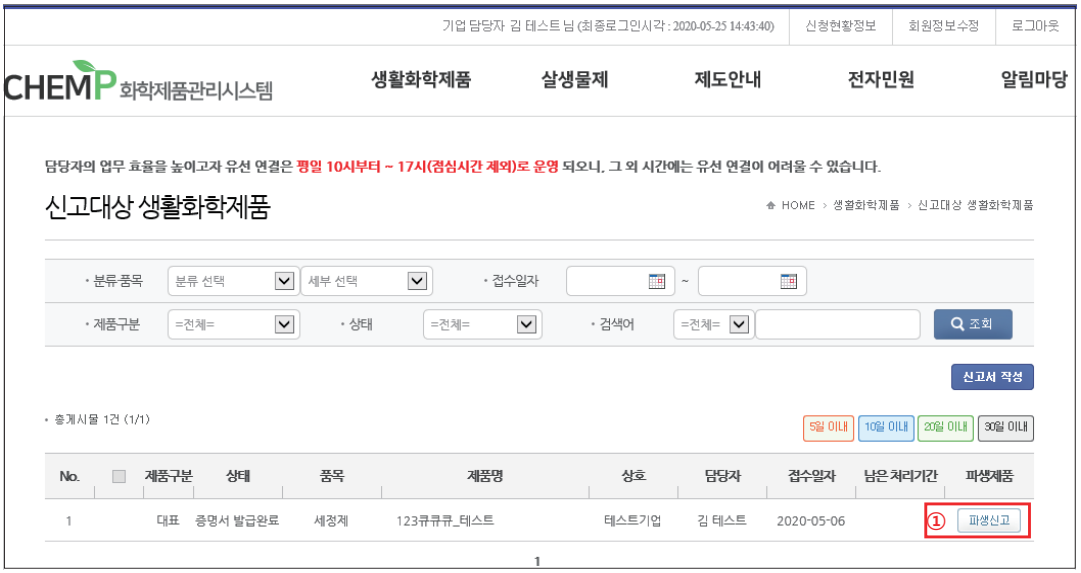

ii) 신고인 정보

1) 신고인 정보는 기업회원이 입력한 정보(①)와 일반회원이 입력한 정보(②)를 불러오게 되어 있으며, 현재 일반회원 정보(②)는 수정이 가능하나 '20년 하반기에 해당 정보를 수정할 수 없게 시스템이 개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1) 기업회원이 입력한 기업정보(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절차를 통해 정보를 수정하여야 함

2) 일반회원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일반회원을 지정하여 등록하거나, 일반회원이 신청한 정보를 승인하여야 함(매뉴얼 II장 참조)

iii) 신고 유형

1)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제조/수입, 제조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달라지는 사항을 본 매뉴얼 P.23 ~ P.25를 참고하여 입력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ix) 신고 대상 정보

1) 제품명

가) 고시 제2조제7호에 따라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으므로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다르게 설정하되, 띄어쓰기 등의 차이로 인하여 구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먼저 신고를 완료한 파생제품이 있는 경우 또는 여러 개의 파생제품을 각각 신고하는 경우,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라 파생제품들 간의 제품명도 동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분류·품목·용도·세부용도

가) 파생제품의 분류·품목·용도는 대표제품의 분류·품목·용도·세부용도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므로 수정할 수 없는 항목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파생제품의 분류·품목·용도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시 제5조제1항의 안전기준 상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표제품의 분류·품목·용도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먼저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제형

가) 파생제품의 제형은 대표제품의 제형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므로 수정할 수 없는 항목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파생제품의 제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시 제5조제1항의 안전기준 상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표제품의 제형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먼저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유통기한

가)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유통기한'이 다른 경우에는 달라지는 사항을 본 매뉴얼 P.27를 참고하여 입력하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5) 어는점

가) 어는점은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품목에 한하여 활성화되어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나)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어는점'이 다른 경우에는 달라지는 사항을 본 매뉴얼 P.27 ~ P.28를 참고하여 입력하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6) 액성

가) 액성은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및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품목에 한하여 활성화되어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 액성은 '액체'제품에 한하여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고체나 분말 제품의 경우에는 표기를 원하는 기업에 한하여 표기합니다.

나)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액성'이 다른 경우에는 달라지는 사항을 본 매뉴얼 P.28를 참고하여 입력하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7) 중량/용량/매수/크기

가)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중량·용량·매수·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달라지는 사항을 본 매뉴얼 P.28 ~ P.29를 참고하여 입력하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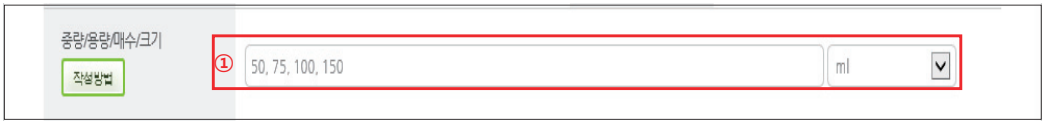

※ 만약, 대표제품에 대한 중량·용량·매수·크기 이외에 중량·용량·매수·크기 추가 시, 용기 재질이 다른 경우에는 고시 별표 3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용기 재질이 같은 경우에는 용기 재질이 같음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하단의 '기타 첨부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8) 표준사용량

가) '표준사용량'은 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의 효과적인 기능을 낼 수 있는 적정 사용량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희석해서 사용하는 농축제품의 경우에는 희석비율에 따른 표준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표준사용량'이 다른 경우에는 달라지는 사항을 본 매뉴얼 P.29를 참고하여 입력하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9)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여부

가) 파생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여부'는 대표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여부'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므로 수정할 수 없는 항목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파생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여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시 제5조제1항의 안전기준 상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표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여부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먼저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0) 사용방법

가)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사용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달라지는 사항을 본 매뉴얼 P.31를 참고하여 입력하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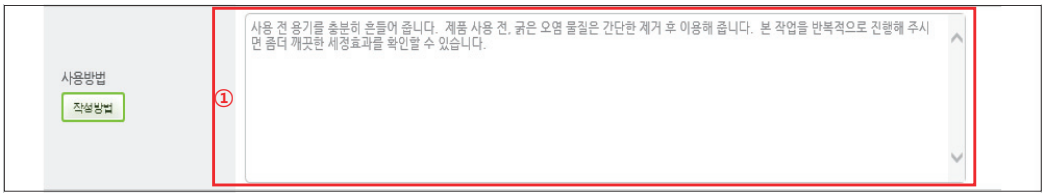

11) 사용상 주의사항

가)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사용상 주의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달라지는 사항을 본 매뉴얼 P.31 ~ P.33를 참고하여 입력하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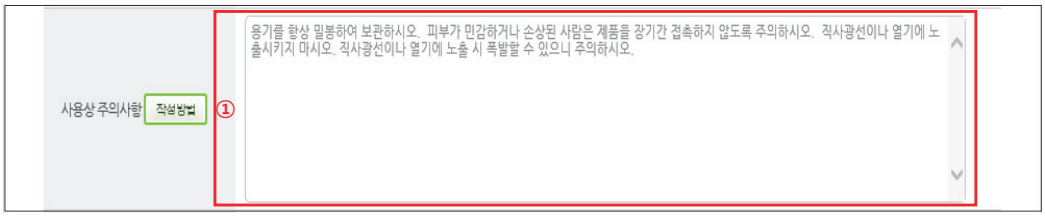

12) 응급처치

가)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사용상 주의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달라지는 사항을 본 매뉴얼 P.33 ~ P.34를 참고하여 입력하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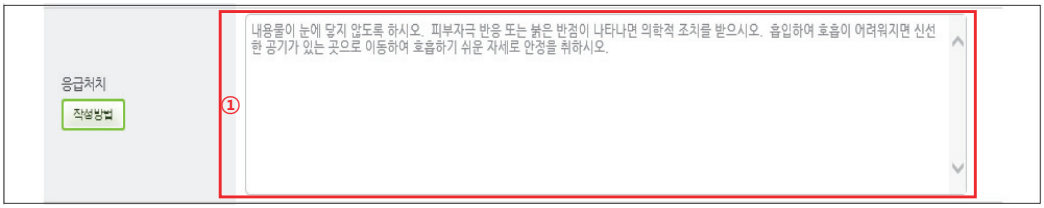

v)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1) 파생제품은 고시 제5조제6항에 따라 대표제품에 대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로 갈음하므로 파생제품은 별도의 확인결과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수정할 수 없는 항목임을 알려드립니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용기 재질 및 형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고시 별표 3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받은 후, 시스템 하단의 '기타 첨부서류'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vi) 함유성분(전성분)

1)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함유성분(전성분)'이 다른 경우에는 달라지는 사항을 본 매뉴얼 P.36 ~ P.45를 참고하여 입력하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2) 파생제품에 대한 함유성분(전성분) 내역을 모두 입력한 경우에는 '②'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체크박스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vii) 첨부서류

1) 표시도안 견본

가)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표시도안 견본'에 표기되는 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고시 P.46~P.57을 참고하여 업로드된 표시도안 견본을 파생제품에 맞게 수정한 후, 다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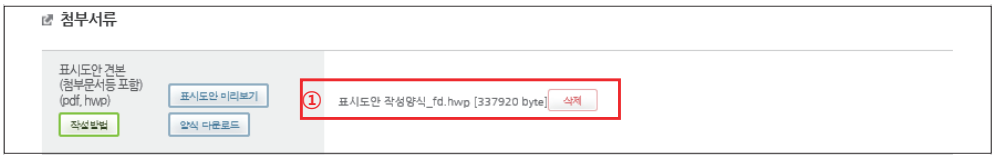

※ 1) 파생제품은 대표제품의 신고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표시도안 견본 제출 시 반드시 대표제품의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신고번호를 표기하여야 함

2) 파생제품이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제품명, 알레르기물질'이 변경된 경우 예시(제품용기의 표시면적 115cm^2, 포장상자의 표시면적은 185cm^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CB20-01-0450** / •품목: **세정제, 살균제** / •제품명:123큐큐알_파생테스트

•용도: 세정제[일반용(욕실용, 렌지후드용, 오븐용)], 살균제[일반용(배수관용, 일반물체용)] / •제형:분무기형 / •용량:150mL / •제조 연월:제품 하단 별도표시 / •액성:원액(약산성)

•제조자, 주소, 연락처: 테스트기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02-2284-1862

•사용 물질 주요물질: 정제수, 향료(디옥틸아디페이트 등), 차아염소산 / 알레르기물질: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시트로넬롤, 유제놀, 제라니올 / 계면활성제: 아주까리기름,수소첨가,에톡실레이티드(비이온계)

•사용방법: ① 사용 전 용기를 충분히 흔들어 줍니다. / ② 제품 사용 전, 굵은 오염 물질은 간단한 제거 후 이용해 줍니다. / ③ 본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좀더 깨끗한 세정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 ① 용기를 항상 밀봉하여 보관하시오. / ② **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 ③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 ④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 시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응급처치: ①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오. / ② **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받으시오.** / ③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나) 파생제품이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중량·용량·매수·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제품용기 및 전용 포장상자의 표시면적을 계산하여 각각의 중량·용량·매수·크기에 적합한 표시도안 견본을 모두 업로드하거나 표시도안 견본이 달라지는 구간에서 한 개씩만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표시도안이 제품에 부착된 견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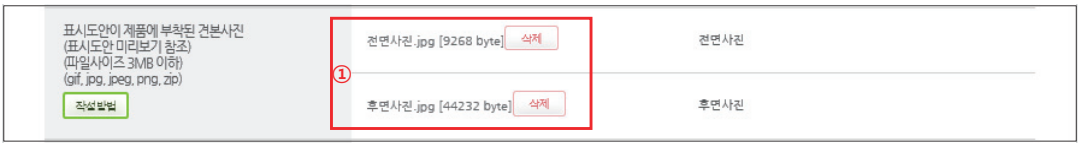

가) 본 매뉴얼 P.57 ~ P.60를 참고하여 파생제품에 대한 전면사진과 표시도안 견본을 제품 후면에 부착한 후면사진을 각각 촬영하여 업로드해 주세요

나) 제품용기를 전용 포장상자에 담아 판매하거나, 전용 용기를 구성품으로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 포장상자와 전용 용기에 대해서도 함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전용 포장상자와 전용 용기에도 표시도안 견본이 각각 부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안전기준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가) 파생제품은 고시 제5조제6항에 따라 대표제품에 대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로 갈음하므로 수정할 수 없는 항목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첨부 서류

가)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기타 첨부 서류'가 다른 경우에는 달라지는 사항을 본 매뉴얼 P.61 ~ P.62를 참고하여 업로드하여 주시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나)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중량 또는 용량 등이 다른 경우에는 각 중량 또는 용량 등의 제품용기 및 전용 포장상자에 대한 고시 별표 3에 따른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ⅰ) 용기 재질이 상이한 경우 : 용기 재질이 상이한 추가 제품에 대하여 확인결과서 발급 기관에 문의하여 고시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의뢰 신청 후,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기타 첨부서류에 업로드 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ⅱ) 용기 재질이 동일한 경우 : 확인결과서를 받은 제품용기 재질과 추가한 중량/용량/매수/크기 재질이 동일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타 첨부서류에 첨부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을 요청(작성양식 참고)하여야 합니다.

5) 신고사항

가)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파생제품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viii) 안전기준적합확인 파생제품 신고 내용 확인 및 제출

1)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본 매뉴얼 P.81 ~ P.88에 따라 시스템에 파생제품 신고사항을 입력(첨부자료 등록 포함)한 경우에 '①'의 표시 사항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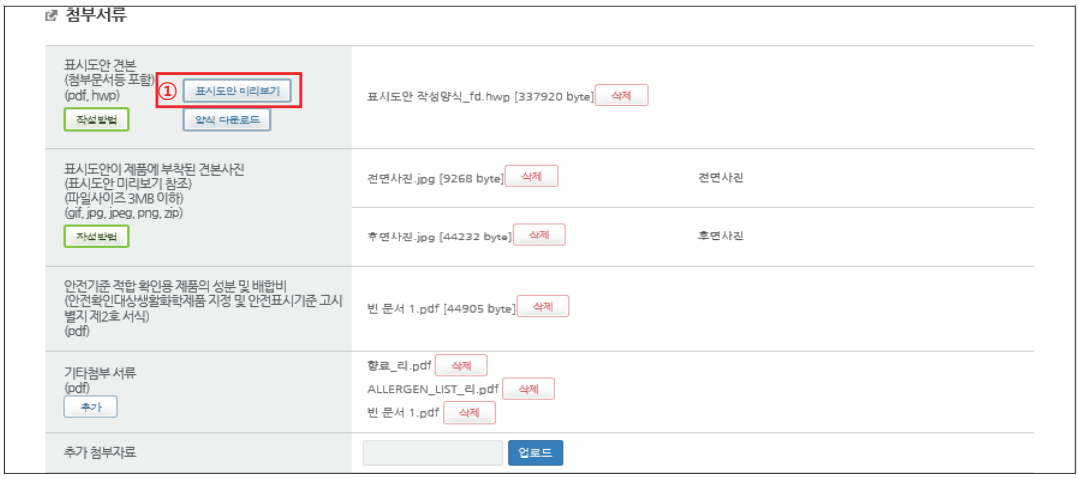

2) 표시사항 미리보기는 법 제10조제6항 및 고시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표시하여야하는 23개 항목에 대하여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시스템에 입력한 사항이 표출된 것입니다.

※ '20년 상반기까지 '표시도안 미리보기'로 표출된 사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고시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년 하반기에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고시와 부합화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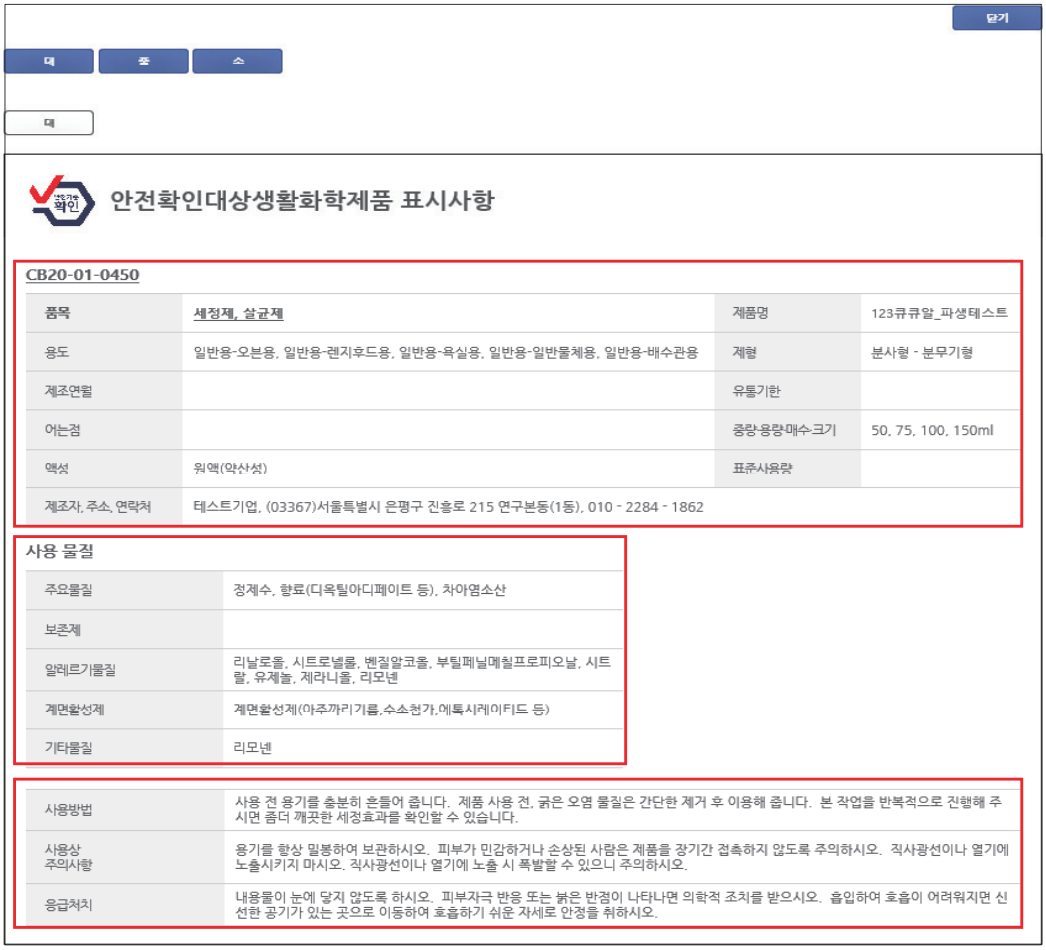

4) 표시도안 미리보기를 통해 내용 확인 및 수정을 완료한 경우, '①' 정합성검사 버튼을 클릭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②'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파생제품 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가. 파생제품 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요청 메일 확인

ⅰ) 일반회원은 파생제품 신고 신청 시 등록한 메일을 통해 아래와 같은 메일이 수신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메일 수신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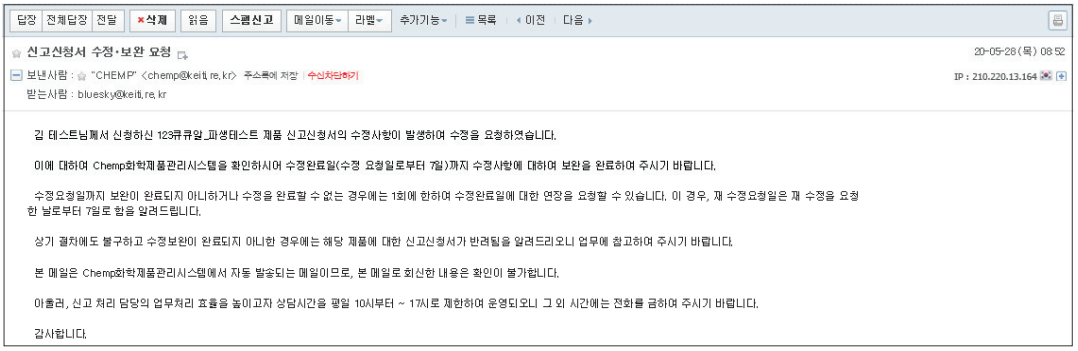

ⅱ) 해당 메일은 시스템에에서 자동 발송되는 메일이므로 수신된 메일로 답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 답장을 한 경우, 기술원의 신고검토자가 확인이 불가하오니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평일 10시부터 17시 사이에 유선전화를 통해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파생제품 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내용 확인

ⅰ) 시스템에 접속하여 '①'항의 신청현황정보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신청현황 정보에 표기된 '②'항의 제품명을 클릭하여 수정보완 내역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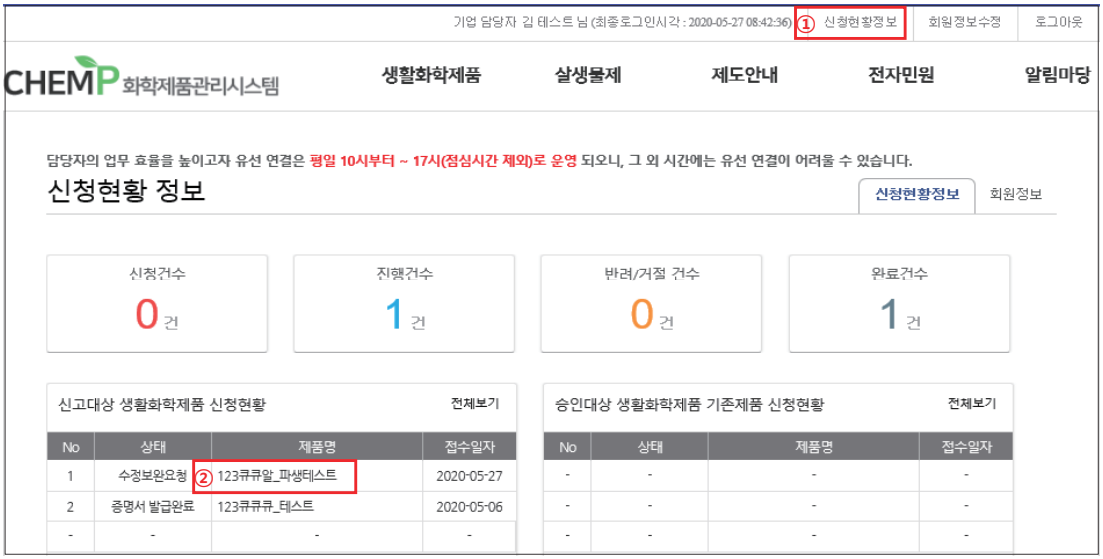

ⅱ) 또는, 시스템 접속 후 나타나는 초기화면 상단의 '①'항의 생활화학제품 글씨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나타나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②)"을 클릭합니다.

1) 아래와 같이 화면이 바뀌면 '①'항의 제품명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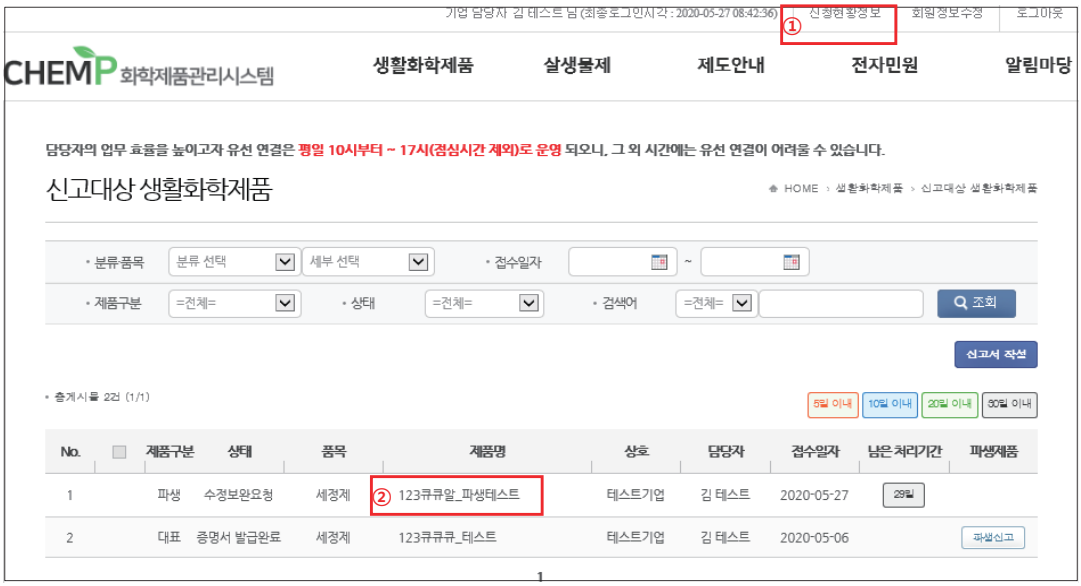

2) 아래와 같이 파생제품 신고 신청 화면에서 '①'항과 같이 표시항목에 붉은색(적색)으로 표시된 항목이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②'항에 표시된 '수정보완사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일반회원은 각 항목별 수정보완사유를 확인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고시 별표 5 및 별표 6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스템 상단에 표기된 기술원 담당에게 문의(평일 10시부터 17시 사이)하여야 합니다.

4) 일반회원은 수정보완요청 사항을 모두 이해한 경우, '①'항의 "수정보완"을 클릭하여 수정보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파생제품 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i) 일반원칙

1)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제품에 대하여 수정보완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회원으로 등록자가 입력한 메일로 '신고신청서 수정보완 요청' 메일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발송되며,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메일과 시스템의 수정보완 사항을 확인하여 수정보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수정보완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보완을 완료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3) 협력업체 자료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 보완 기한까지 수정보완제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술원 담당과 협의하여 자료 보완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4) 특별한 사유없이 자료 보완 기한까지 수정보완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메일 등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자료 보완 기한이 연장(추가 7일)됨을 알려드립니다.

5) '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수정보완제출을 하지 않는 파생제품의 경우에는 추가 자료 보완 기한 완료일 다음 날에 해당 신고 제출 건이 즉시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ii) 수정보완 및 수정보완 제출

1) 일반회원은 수정보완요청 사항을 모두 이해한 경우, '①'항의 "수정보완"을 클릭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수정 화면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라는 메세지가 나타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수정보완 페이지로 전환되면 '①'항과 같이 각 항목의 글씨가 붉은색(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항목이므로 각 항목별 수정보완사유(②)를 확인하여 수정보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각 항목별 수정보완사유에 따라 수정보완을 완료한 후 수정보완사유와 수정보완한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5) 수정보완사유에 대하여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첨부서류 – 표시도안 견본' 오른쪽에 있는 '①'항의 표시도안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수정한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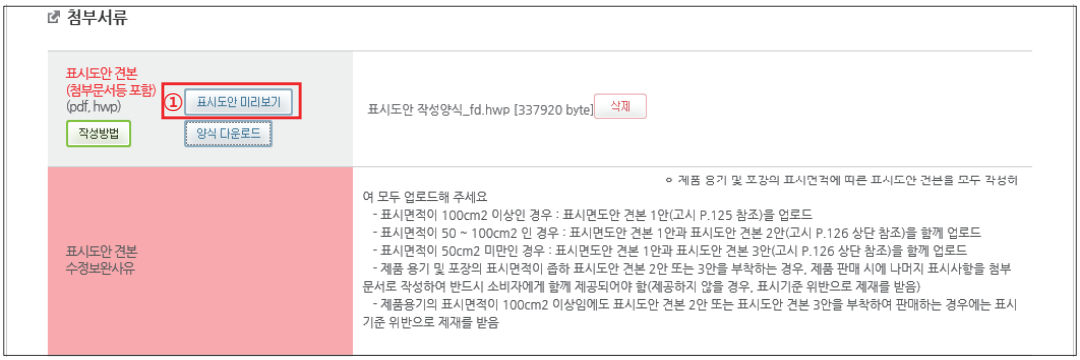

※ 표시도안 미리보기 내용

5) 수정보완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①'항의 "수정보완 제출"을 클릭하여 수정보완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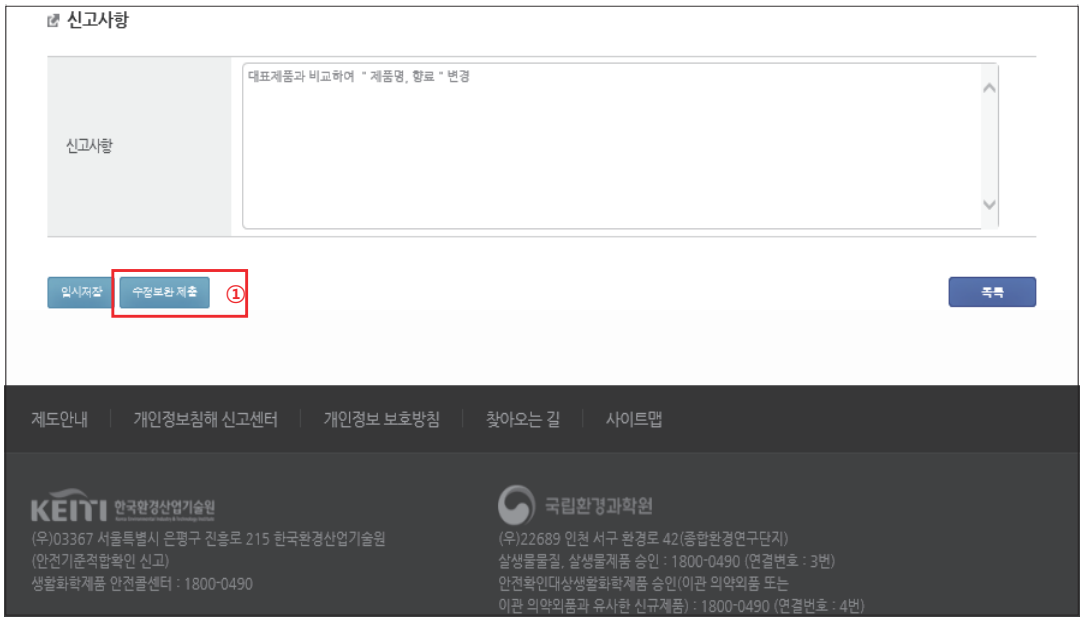

6) 수정보완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기술원의 신고검토자가 검토한 결과 화학제품안전법 및 고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재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본 매뉴얼 P.22 ~ P.69 절차를 준용하여 다시 수정보완을 완료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파생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확인 및 활용

가. 파생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검토 단계 메일 확인

ⅰ) 일반회원이 파생제품으로 신고한 제품에 대하여 더 이상의 수정보완이 필요하지 않다고 기술원의 신고검토자가 판단하여 증명서 발급 검토 단계로 이송한 건에 대해서는 일반회원이 등록한 메일로 "신고증명서 발급 검토" 메일이 발송됩니다.

ⅱ) 'ⅰ)'항에 따른 메일을 받은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및 고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메일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ⅲ) 'ⅱ)'항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 및 고시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 요청'은 반려되며, 해당 신고 제품에 대하여 다시 수정보완 요청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파생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메일 확인 및 활용

ⅰ) 일반회원이 신고한 파생제품 신청 건에 대하여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일반회원이 등록한 메일로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메일이 발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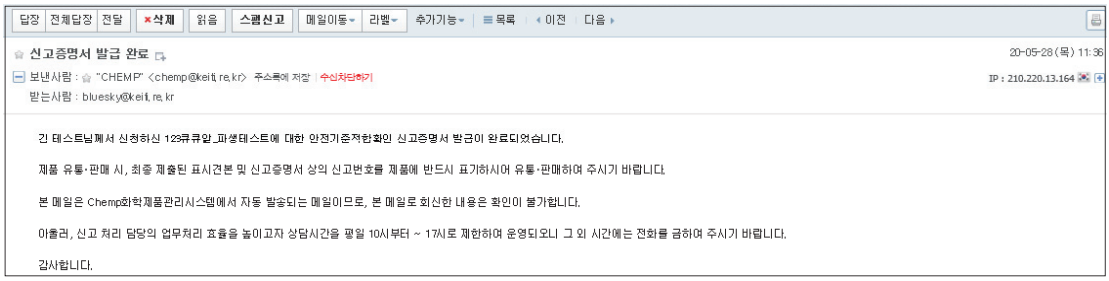

ii) 'ⅰ)'항에 따라 메일을 받은 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①'항의 신청현황 정보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신청현황에 표기된 '②'항의 제품명을 클릭합니다.

iii) 또는, 시스템 접속 후 나타나는 초기화면 상단의 '①'항의 생활화학제품 글씨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나타나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②)"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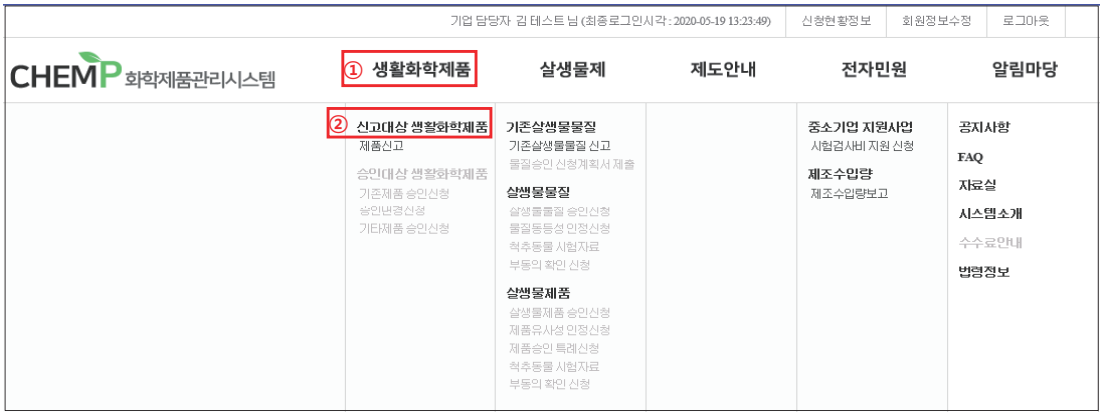

1) 아래와 같이 화면이 바뀌면 '①'항의 제품명을 클릭합니다.

iv) 'ii)'항 또는 'iii)'항에 따른 제품명 클릭하면 나타나는 신고 제품 내역에서 '①'항의 "신고 증명서 출력" 버튼을 클릭한 후 해당 신고증명서를 인쇄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출력 예시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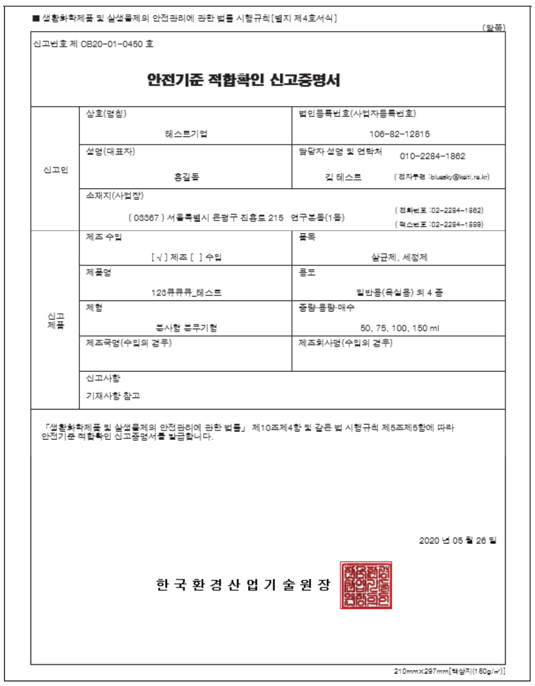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제 CB20-01-0450 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신고인	상호(명칭) 테스트기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06-82-12815	
	성명(대표자) 홍길동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김 테스트	010-2284-1862 (전자우편 :bluesky@keiti.re.kr)
	소재지(사업장)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연구본동(1동)		(전화번호 :02-2284-1862) (팩스번호 :02-2284-1899)
신고제품	제조 수입 [√] 제조 [ ] 수입	품목 살균제, 세정제	
	제품명 123큐큐큐_테스트	용도 일반용(욕실용) 외 4 종	
	제형 분사형 분무기형	중량·용량·매수 50, 75, 100, 150 ml	
	제조국명(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수입의 경우)	
	신고사항 기재사항 참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20 년 05 월 26 일

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장

210mm×297mm[백상지(150g/㎡)]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이면 기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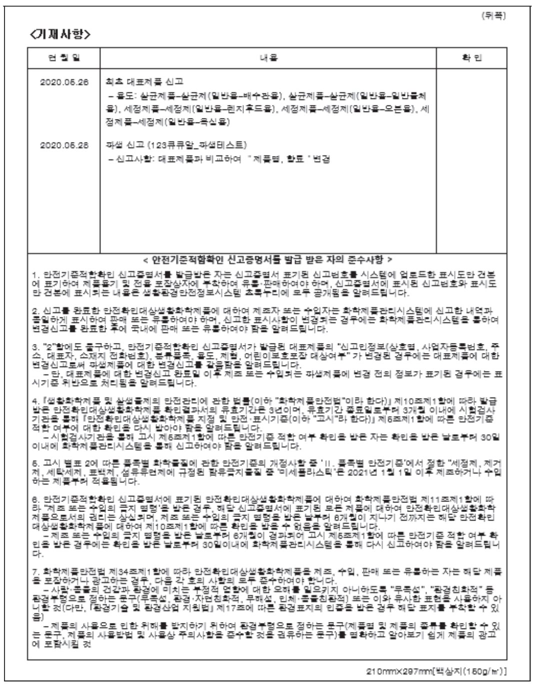

(뒤쪽)

〈기재사항〉

변경일	내용	확인
2020.05.26	최초 대표제품 신고 - 용도: 살균제품-살균제(일반용-배수관용), 살균제품-살균제(일반용-일반물체용), 세정제품-세정제(일반용-렌지후드용), 세정제품-세정제(일반용-오븐용), 세정제품-세정제(일반용-욕실용)	
2020.05.26	파생 신고 (123큐큐알_파생테스트) - 신고사항: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제품명, 함료" 변경	

<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의 준수사항 >

1.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신고증명서 표기된 신고번호를 시스템에 업로드한 표시도안 견본에 표기하여 제품용기 및 전용 포장상자에 부착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하며, 신고증명서에 표시된 신고번호와 표시도안 견본에 표시되는 내용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 모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2. 신고를 완료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한 내역과 동일하게 표시하여 판매 또는 유통하여야 하며, 신고한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고를 완료한 후에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대표제품의 "신고인정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분류품목, 용도, 제형,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로써 파생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를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완료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파생제품에 변경 전의 정보가 표기된 경우에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고시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규정된 함유금지물질 중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6.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의 권리는 상실되며,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
–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210mm×297mm[백상지(150g/㎡)]

v) 파생제품은 대표제품의 신고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파생제품 신고 시에 최종 완성된 표시도안 견본을 제품 후면에 부착하여 판매 또는 유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증명서 이면에 기재된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 신고제품을 판매 또는 유통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본 매뉴얼 P.74 ~ P.77 참조)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V

안전기준적합 확인 변경신고

Ⅴ. 안전기준적합확인 변경신고

1. 대표제품 또는 파생제품의 변경신고 신청

가. 변경신고 신청 일반사항

ⅰ) 변경신고는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제품에 한하여 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변경신고는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대표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모든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변경 신고를 각각 진행하여야 합니다.

1) 다만, '신고인정보, 분류품목, 용도, 제형, 어린이보호포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로써 파생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를 갈음하되, 대표제품 변경신고 완료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파생제품은 변경 후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제품 변경신고 완료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파생제품에 변경 전 정보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ⅲ) 대표제품 또는 파생제품에 대한 변경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변경된 사항을 모두 적용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신고 완료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변경 전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리됨

ⅳ)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표제품 또는 파생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를 신청한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가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ⅴ) "ⅳ)"항에 따른 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 신청이 접수된 날을 산입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수정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보완을 완료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자료 보완 기한(7일)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1)"항의 수정보완 독촉에 따른 자료 보완 기한까지 수정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 보완 기한 완료일 그 다음 날에 해당 신고 건이 즉시 반려됩니다.

나. 변경신고 대상

ⅰ)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은 대표제품 또는 파생제품에 대하여 신고인정보(상호명, 주소,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ⅱ)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은 대표제품 또는 파생제품에 대하여 신고유형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ⅲ)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은 대표제품 또는 파생제품에 대하여 신고인정보(제품명, 분류품목, 용도, 제형, 유통기한, 어는점, 액성, 중량·용량·매수·크기, 표준사용량,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용기 재질 및 형태)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 1) 품목 변경은 단일 품목으로 확인 및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다른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고 다품목 제품으로 안전기준적합확인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2) 용도 변경은 안전기준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용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3) 제형 변경은 안전기준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4)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 변경은 대표제품이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적용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제품을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고시 별표 4에 따른 확인결과서를 재발급 받아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여 변경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 한함

5) 용기 재질 및 형태 변경은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제품에 대하여 용기·포장의 재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어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고시 별표 3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변경 신고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ⅳ)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은 대표제품 또는 파생제품에 대하여 함유성분(전성분)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이 경우, 고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

v) 화학제품안전법 제51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vi)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다시 받은 경우, 대표제품 및 파생제품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연장

vii) 그 밖에 화학제품안전법 및 고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다. 변경신고 신청

i) 대표제품 또는 파생제품의 변경신고 신청 절차

1) 시스템 접속 후 나타나는 초기화면 상단의 '①'항의 생활화학제품 글씨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나타나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②)"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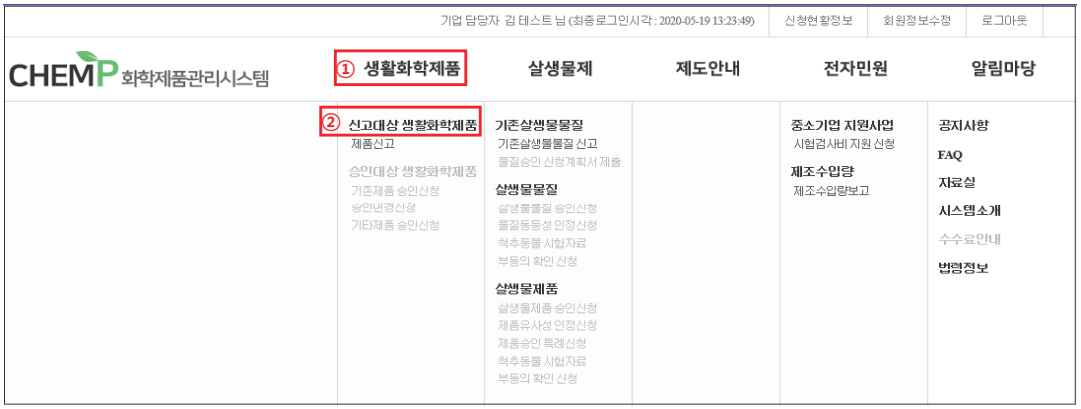

2)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에 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제 대표제품 변경신고를 먼전 신청하고 대표제품 변경신고가 완료된 후에 파생제품 변경신고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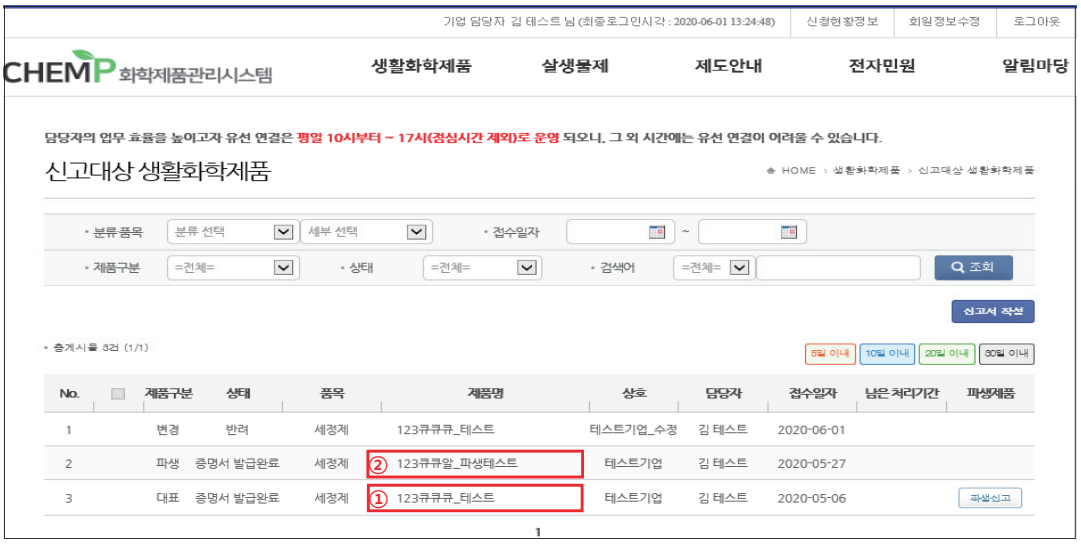

가) 대표제품 변경신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①'항의 대표제품명을 클릭하여 아래와 같이 대표제품 신고 내역을 화면이 전환되면 상단에 있는 '대표변경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가 완료된 경우, 파생제품명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파생변경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ii) 신고인 정보

1) 신고인 정보는 대표제품에 대한 신고인 정보 변경이 완료된 경우, 같은 신고번호를 사용하는 파생제품은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인 정보 변경에 따라 '신고증명서, 표시도안 견본' 모두 수정되어야 하므로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제품 및 파생제품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각각 진행함이 원칙이나, 신고인정보 변경에 한하여 파생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는 대표제품에 대한 신고인 정보 변경신고로 갈음하되,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완료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파생제품에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벌됨

2) 신고인 정보 변경신고는 먼저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업정보를 수정한 후,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신고인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기업회원으로 등록된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스템 상단에 있는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4) 신고인 정보 중 '①'항에 표기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은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직접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②'항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은 삭제한 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업로드한 후 '③'항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5) '4)'항에 따라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에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내 기업관리자 승인 담당에게 전화하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6) '4)'항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직접 수정한 후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7) '5)'항 및 '6)'항에 따라 신고인 정보 변경이 완료된 후,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에게 신고인정보가 변경되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8) '7)'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신고인 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신고를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 일반회원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상단에 표기된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나) 일반회원 상세조회(수정) 화면에서 기원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고지한 내용이 반영되어 정보가 수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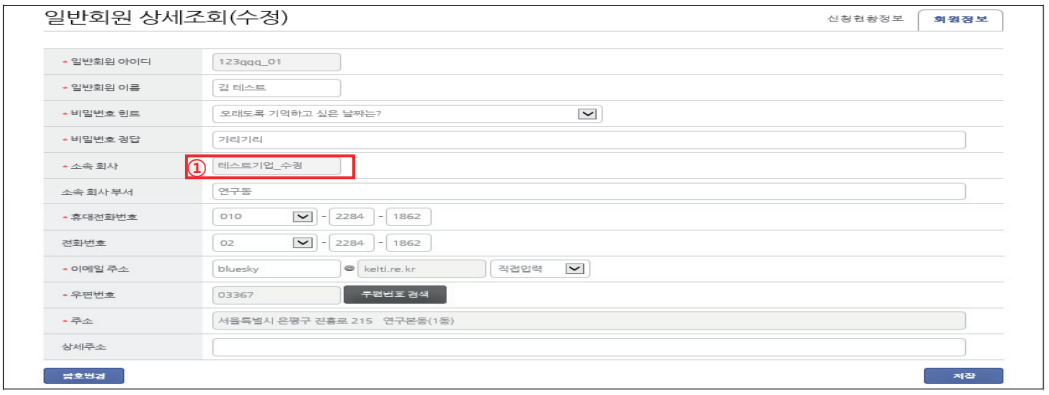

다) 신고인 정보에 표기된 '① ~ ⑥'항까지 중 변경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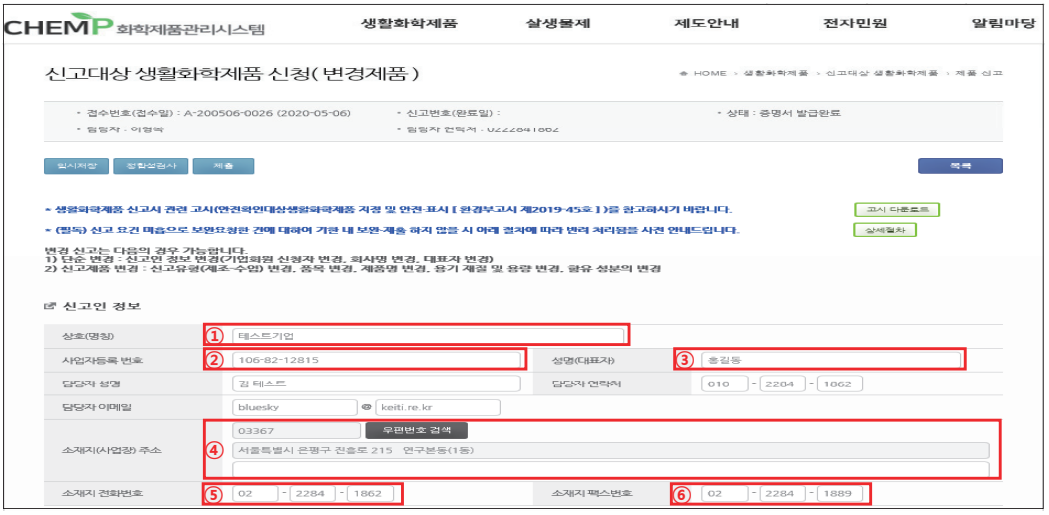

iii) 신고 유형

1) '제조/수입, 제조방식'이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 P.23 ~ P.25를 참고하여 수정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iv) 신고 대상 정보

1) 제품명

가) 제품명이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 P.25를 참고하여 수정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2) 분류·품목

가) 분류·품목·용도가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 P.25 ~ P.26를 참고하여 수정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나) 파생제품의 경우, 대표제품의 분류·품목·용도와 동일하여야 하므로 대표제품에 대한 분류·품목·용도가 변경이 완료된 경우, 같은 신고번호를 사용하는 파생제품은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완료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파생제품에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벌됨

3) 제형

가) 제형이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 P.26 ~ P.27를 참고하여 수정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나) 파생제품의 경우, 대표제품의 제형 동일하여야 하므로 대표제품에 대한 제형 변경이 완료된 경우, 같은 신고번호를 사용하는 파생제품은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완료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파생제품에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벌됨

4) 유통기한

가) 유통기한이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 P.27를 참고하여 수정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5) 어는점

가) 어는점은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품목에 한하여 활성화되어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나) 어는점이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 P.27 ~ P.28를 참고하여 수정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6) 액성

가) 액성은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및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품목에 한하여 활성화되어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나) 액성이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 P.28를 참고하여 수정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7) 중량/용량/매수/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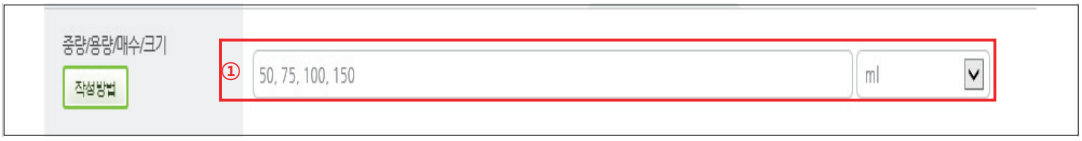

가) 중량·용량·매수·크기가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 P.28 ~ P.29를 참고하여 수정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8) 표준사용량

가) '표준사용량'은 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의 효과적인 기능을 낼 수 있는 적정 사용량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희석해서 사용하는 농축제품의 경우에는 희석비율에 따른 표준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표준사용량이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 P.29를 참고하여 수정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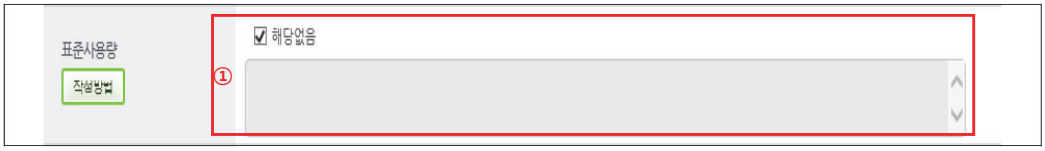

9)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

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가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 P.29 ~ P.31를 참고하여 수정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나) 파생제품의 경우, 대표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와 동일하여야 하므로 대표제품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 변경이 완료된 경우, 같은 신고번호를 사용하는 파생제품은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완료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파생제품에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벌됨

10) 사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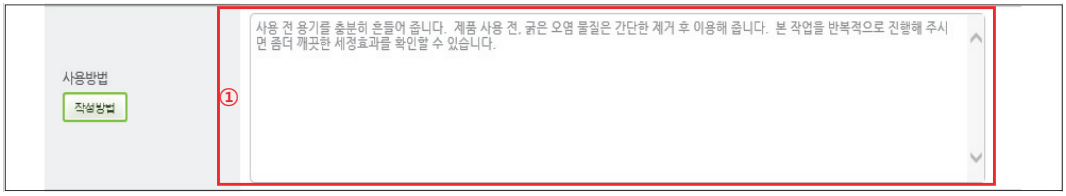

가) 사용방법이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P.31를 참고하여 입력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11) 사용상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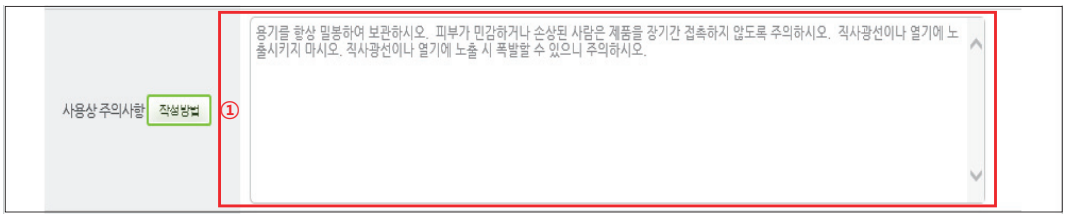

가) 사용상 주의사항이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 P.31 ~ P.33를 참고하여 입력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12) 응급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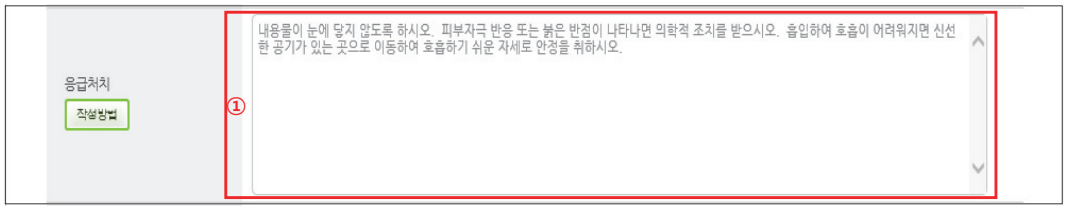

가) 응급처치가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 P.33 ~ P.34를 참고하여 입력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v)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세정제품-세정제(일반용-오븐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정보

발행번호	시험·검사기관 이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유효기간
ABC20-0000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20-04-08 ~ 2023-04-0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pdf)	빈 문서 1.pdf [44905 byte] 삭제	

화학물질 확인결과

	확인항목	단위	확인기준	확인결과	판정	추가
①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	NaOH로서 5%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삭제/추가
	폼알데하이드	mg/kg	60 이하	15	적합	삭제/추가
	벤젠	mg/kg	10 이하	3	적합	삭제/추가
	염산 또는 황산	%	HCl로서 0.04%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삭제/추가
	벤질알코올	%	13 이하	불검출	적합	삭제/추가
	펜에탄올	%	10 이하	0.02	적합	삭제/추가

● 세정제품-세정제(일반용-렌지후드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1) 확인결과서는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 P.34 ~ P.35를 참고하여 수정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2) 파생제품의 경우, 대표제품이 파생제품을 대표해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갈음하므로 대표제품에 대한 확인결과서 변경이 완료된 경우, 같은 신고번호를 사용하는 파생제품은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완료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파생제품에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벌됨

vi) 함유성분(전성분)

1) 함유성분(전성분)이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고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 P.36 ~ P.45를 참고하여 수정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2) 함유성분(전성분)에서 변경된 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에는 '②'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하여야 합니다.

vii) 첨부서류

1) 표시도안 견본

가) 표시도안 견본이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 P.46 ~ P.57 및 P.86 ~ P.87를 참고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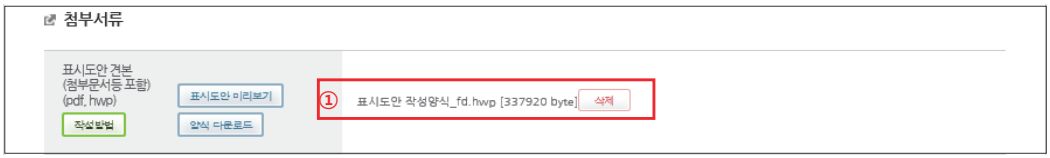

※ 변경신고에 따른 표시도안 견본 작성 시,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신고번호를 표기하여 견본을 작성하여야 함

나) 파생제품이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중량·용량·매수·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제품용기 및 전용 포장상자의 표시면적을 계산하여 각각의 중량·용량·매수·크기에 적합한 표시도안 견본을 모두 업로드하거나 표시도안 견본이 달라지는 구간에서 한 개씩만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표시도안이 제품에 부착된 견본 사진

가) 표시도안이 제품에 부착된 견본 사진은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 P.57 ~ P.60를 참고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나) 제품용기를 전용 포장상자에 담아 판매하거나, 전용 용기를 구성품으로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 포장상자와 전용 용기에 대해서도 함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전용 포장상자와 전용 용기에도 표시도안 견본이 각각 부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안전기준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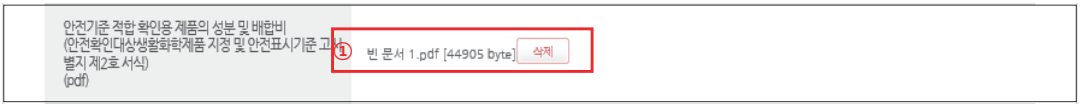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발급 요청 시에 시험검사기관에 작성하여 제출했던 별지 제2호서식을 업로드하는 것이므로, 확인결과서의 화학물질 확인결과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확인결과서 상에 화학물질 확인결과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에 수정하여 제출했던 별지 제2호서식을 다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첨부 서류

가) 기타 첨부 서류는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 P.60 ~ P.62를 참고하여 수정하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추가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신고인정보, 분류품목, 용도, 제형,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변경 후의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로서 파생제품의 변경신고를 갈음하므로, 대표제품 변경신고 완료일부터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파생제품은 대표제품의 변경신고 사항을 적용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3) '(1)'항의 내용에는 '대표제품 변경신고 완료일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파생제품에 변경 전의 정보를 표기하여 유통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벌받게 됨을 인지합니다' 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ⅱ)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용기 재질이 상이한 경우

(1) 용기 재질이 상이한 추가 제품에 대하여 확인결과서 발급 기관에 문의하여 고시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의뢰 신청 후,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기타 첨부서류에 업로드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ⅲ)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용기 재질이 동일한 경우

(1) 확인결과서를 받은 제품용기 재질과 추가한 중량·용량·매수·크기 재질이 동일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타 첨부서류에 업로드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본 매뉴얼 P.61 ~ P.62 참조)

(ⅳ) 중량·용량 등의 추가에 따라 제품용기, 전용 포장상자가 상이한 경우

(1) 각 중량·용량별 표시면적에 따른 표시면적 계산 결과(본 매뉴얼 P.48 ~ P.50 참조)를 작성하여 기타 첨부서류에 업로드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viii) 신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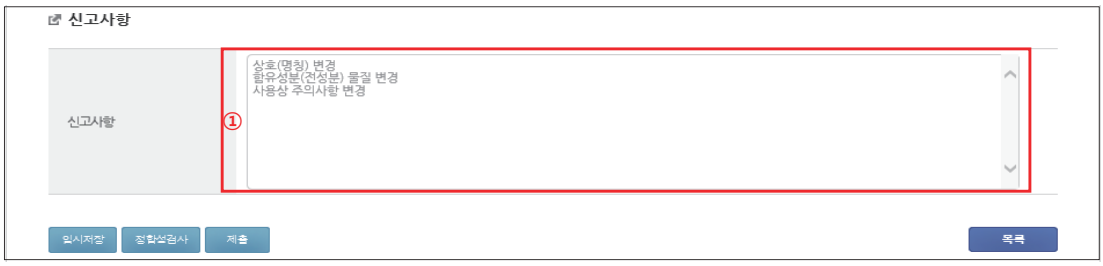

가) 'ⅱ) ~ ⅶ)'항(P.103 ~ P.113)까지 내용 중에서 변경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ix) 안전기준적합확인 변경신고 내용 확인 및 제출

1)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ii) ~ vii)'항까지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 사항을 입력(첨부자료 등록 포함)한 경우에 "표시도안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표시도안 미리보기를 통해 내용 확인 및 수정을 완료한 경우, '①' 정합성검사 버튼을 클릭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②'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변경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가. 변경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요청 메일 확인

i) 일반회원은 변경신고 신청 시 등록한 메일을 통해 아래와 같은 메일이 수신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메일 수신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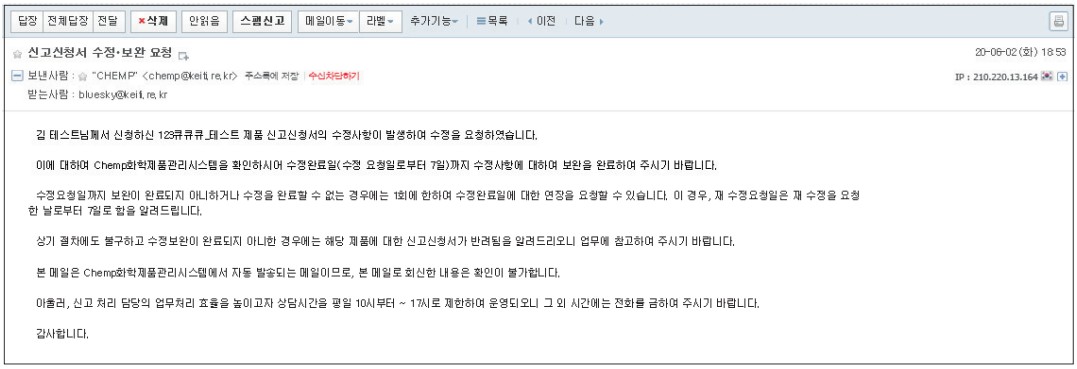

ii) 해당 메일은 시스템에에서 자동 발송되는 메일이므로 수신된 메일로 답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 답장을 한 경우, 기술원의 신고검토자가 확인이 불가하오니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평일 10시부터 17시 사이에 유선전화를 통해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변경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내용 확인

i) 시스템 접속 후 초기화면 상단 "생활화학제품(①)" 글씨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나타나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②)"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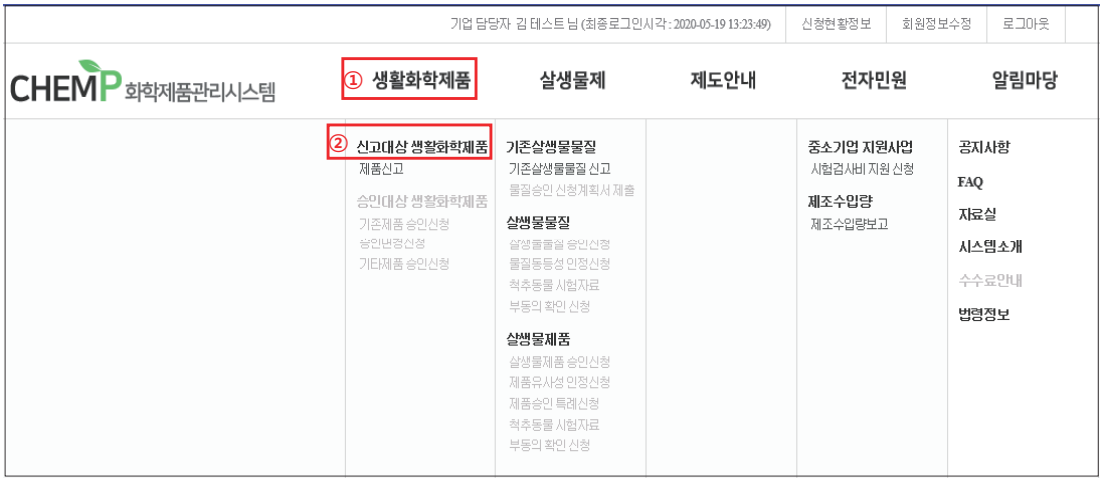

1) 아래와 같이 화면이 바뀌면 '①'항의 제품명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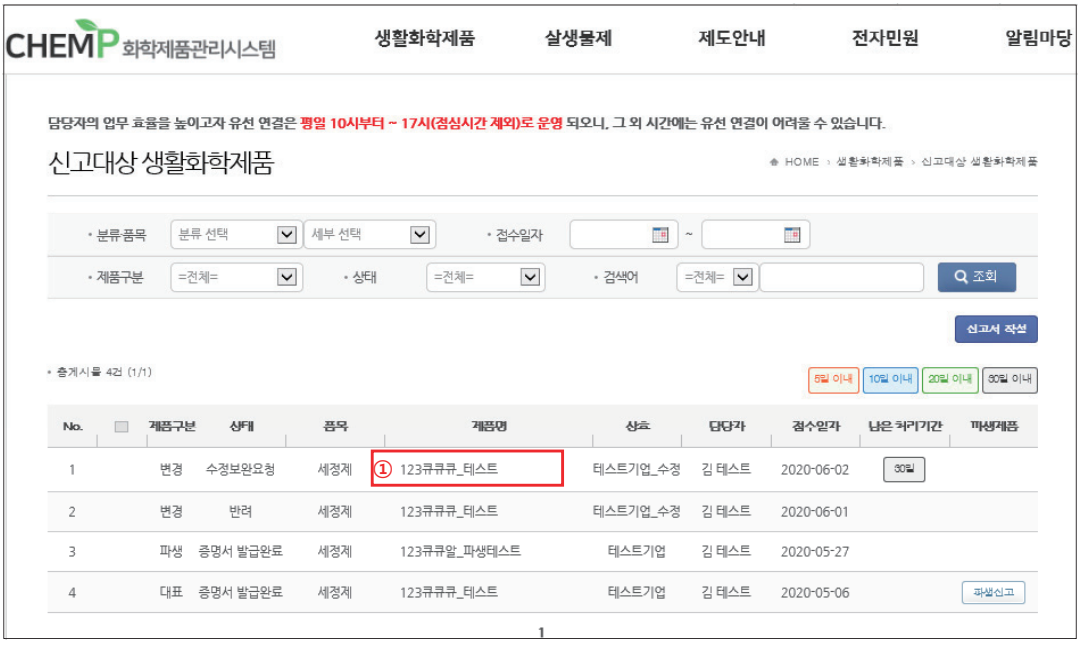

2) 아래와 같이 변경제품 신고 신청 화면에서 각 표시항목에 붉은색(적색)으로 표시된 항목이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각 항목별 "수정보완사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일반회원은 각 항목별 수정보완사유를 확인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고시 별표 5 및 별표 6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스템 상단에 표기된 기술원 담당에게 문의(평일 10시부터 17시 사이)하여야 합니다.

다. 변경신고 신청 내역 수정보완 및 제출

ⅰ) 일반원칙

1)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한 제품에 대하여 수정보완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회원으로 등록자가 입력한 메일로 '신고신청서 수정보완 요청' 메일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발송되며,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메일과 시스템의 수정보완 사항을 확인하여 수정보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수정보완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보완을 완료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3) 협력업체 자료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 보완 기한까지 수정보완제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술원 담당과 협의하여 자료 보완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4) 특별한 사유없이 자료 보완 기한까지 수정보완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메일 등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자료 보완 기한이 연장(추가 7일)됨을 알려드립니다.

5) '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수정보완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 보완 기한 완료일 다음 날에 해당 변경신고 제출 건이 즉시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ⅱ) 수정보완 및 수정보완 제출

1) 일반회원은 수정보완요청 사항을 모두 이해한 경우, '①'항의 "수정보완"을 클릭합니다.

2) '수정 화면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나타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수정보완 페이지로 전환되면 각 항목의 글씨가 빨간색(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항목이므로 각 항목별 수정보완사유를 확인하여 수정보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각 항목별 수정보완사유에 따라 수정보완을 완료한 후 수정보완사유와 수정보완한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5) 수정보완사유에 대하여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첨부서류 – 표시도안 견본' 오른쪽에 있는 '①'항의 표시도안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수정한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표시도안 미리보기 내용

5) 수정보완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①'항의 "수정보완 제출"을 클릭하여 수정보완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6) 수정보완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기술원의 신고검토자가 검토한 결과 화학제품안전법 및 고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재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본 매뉴얼 P.17 ~ P.69 절차를 준용하여 다시 수정보완을 완료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변경신고증명서 발급 확인 및 활용

가. 변경신고증명서 발급 검토 단계 메일 확인

ⅰ) 일반회원이 변경신고한 제품에 대하여 더 이상의 수정보완이 필요하지 않다고 기술원의 신고검토자가 판단하여 증명서 발급 검토 단계로 이송한 건에 대해서는 일반회원이 등록한 메일로 "신고증명서 발급 검토" 메일이 발송됩니다.

ⅱ) 'ⅰ)'항에 따른 메일을 받은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및 고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메일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ⅲ) 'ⅱ)'항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 및 고시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 요청'은 반려되며, 해당 신고 제품에 대하여 다시 수정보완 요청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변경신고증명서 발급 메일 확인 및 활용

ⅰ) 일반회원이 신고한 파생제품 신청 건에 대하여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일반회원이 등록한 메일로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메일이 발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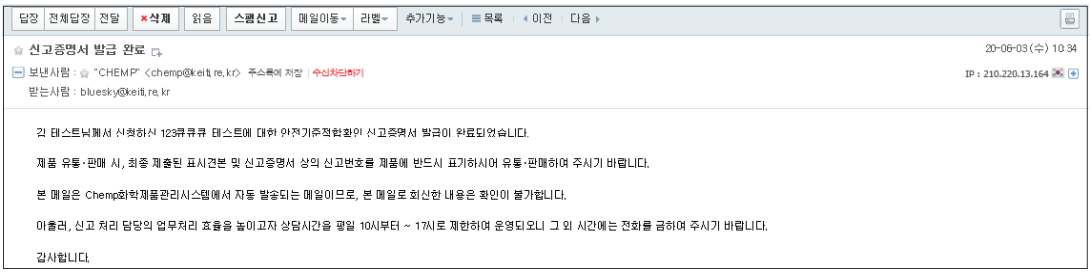

ii) 'ⅰ)'항에 따라 메일을 받은 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①'항의 신청현황 정보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신청현황에 표기된 '②'항의 제품명을 클릭합니다.

iii) 또는, 시스템 접속 후 나타나는 초기화면 상단의 '①'항의 생활화학제품 글씨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나타나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②)"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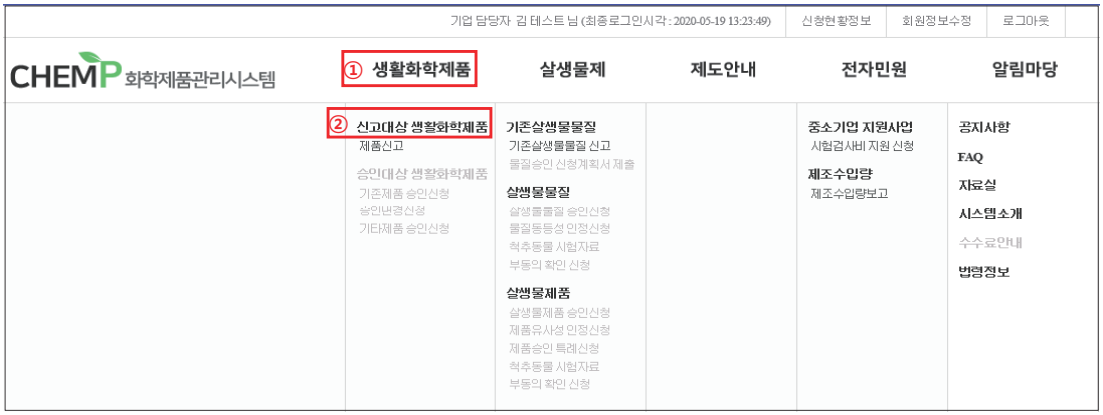

1) 아래와 같이 화면이 바뀌면 '①'항의 제품명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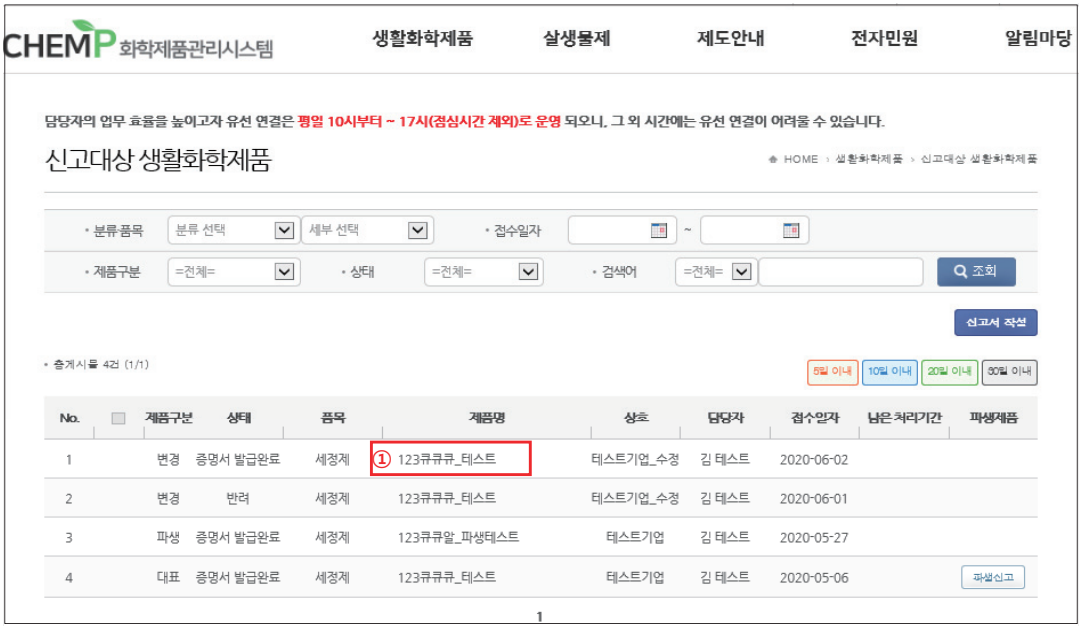

iv) 'ii)'항 또는 'iii)'항에 따른 제품명 클릭하면 나타나는 신고 제품 내역에서 '①'항의 "신고 증명서 출력" 버튼을 클릭한 후 해당 신고증명서를 인쇄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제품의 변경신고 완료 사항이 '신고인정보, 분류품목, 용도, 제형,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생제품에 대하여 별도로 변경신고를 진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로써 파생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를 갈음함)

2) '1)'항의 신고사항 이외에 대표제품 변경신고 사항이 파생제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대표제품 변경신고가 완료된 후, 같은 신고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파생제품에 대하여 각각 건별로 변경신고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출력 예시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전면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이면 기재사항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전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제 CB20-01-0450 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구분			
신고인	상호(명칭): 테스트기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06-82-12815
	성명(대표자): 홍길동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김 테스트 010-2284-1862 (전자우편 :bluesky@keiti.re.kr)
	소재지(사업장):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연구본동(1동) (전화번호 :02-2284-1862) (팩스번호 :02-2284-1899)	
신고제품	제조 수입: [√] 제조 [ ] 수입	품목: 살균제, 세정제
	제품명: 123큐큐큐_테스트	용도: 일반용(욕실용) 외 4 종
	제형: 분사형 분무기형	중량·용량·매수: 50, 75, 100, 150 ml
	제조국명(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수입의 경우)
	신고사항: 기재사항 참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20 년 05 월 26 일

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장

210mm×297mm[백상지(150g/㎡)]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이면 기재사항]

(뒤쪽)

<기재사항>

연 월 일	내용	확 인
2020.05.26	최초 대표제품 신고 - 용도: 살균제품-살균제(일반용-배수관용), 살균제품-살균제(일반용-일반물체용), 세정제품-세정제(일반용-렌지후드용), 세정제품-세정제(일반용-오븐용), 세정제품-세정제(일반용-욕실용)	
2020.05.28	파생 신고 (123큐큐알_파생테스트) - 신고사항: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 제품명, 향료 " 변경	
2020.06.03	대표제품 변경 신고 (123큐큐큐_테스트) - 신고사항: 상호(명칭) 변경 함유성분(전성분) 물질 변경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	

<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의 준수사항 >

1.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신고증명서 표기된 신고번호를 시스템에 업로드한 표시도안 견본에 표기하여 제품용기 및 전용 포장상자에 부착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하며, 신고증명서에 표시된 신고번호와 표시도안 견본에 표시되는 내용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 모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2. 신고를 완료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한 내역과 동일하게 표시하여 판매 또는 유통하여야 하며, 신고한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고를 완료한 후에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대표제품의 "신고인정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분류품목, 용도, 제형,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 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로써 파생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를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완료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파생제품에 변경 전의 정보가 표기된 경우에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고시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규정된 함유금지물질 중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6.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의 권리는 상실되며,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
   -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210mm×297mm[백상지(150g/㎡)]

v) 변경신고가 완료된 이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에 변경신고 사항이 반영된 표시도안 견본을 제품용기, 전용 포장상자 등에 부착하여 판매 또는 유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증명서 이면에 기재된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 신고제품을 판매 또는 유통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본 매뉴얼 P.74 ~ P.76 참조)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VI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Ⅵ.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영문증명 신청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영문증명이란 자유판매증명서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발급하는 자유판매증명서의 범위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한합니다.

다.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ⅰ)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사본

ⅱ) 수입업체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

ⅲ) 그 밖에 자유판매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2. 자유판매증명신청서 접수·검토 및 발급

가. 자유판매증명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자유판매증명신청서 접수 및 발급 대장>

접수정보		신청인 정보(기 신고자)							신청사항									발급정보	
접수번호	접수일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업장 소재지	제품명	신고번호	유효기간		수입국	수출업체명	수출업체 주소	수입업체명	수입업체 주소	비고	발급일	발급번호
2019-0001	2019-03-03									0000-00-0000	2019-03-03	2022-03-02							2019-03-08	COF5-2019-0001

나. 자유판매증명서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 자유판매증명신청서 검토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린 기간은 '가'항에 따른 처리기간(7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 '다'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7일로 하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첫날을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업 내부 사정 등으로 7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문서로서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완료에 소요되는 전체 기간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라'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장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장은 자유판매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한 사항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완료가 되지 않았음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ⅱ) 'ⅰ)'에 따른 문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기간을 연장하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7일임'을 명시하고, 해당 재 보완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 내역이 반려됨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ⅲ) 'ⅰ), ⅱ)'항에도 불구하고 자유판매증명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내역을 반려하되, 반려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자유판매증명신청서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장에게 자유판매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 자유판매증명서 발급번호 채번 원칙 : (영문기관명) - (연도 4자리) - (일련번호 4자리)
㉡ 19년 4월 23일 발급 시 발급번호 예시 : KEITI-2019-0001

신고 및 문의처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문의 : 고객지원센터 1800 - 0490
기업회원등록 관련 문의 : (전화) 02-2284-1875, 1876, (전자우편) yooty@keiti.re.kr, loveyh@keiti.re.kr
권리의무승계 관련 문의 : (전화) 02-2284-1870, (전자우편) jmyang@keiti.re.kr
자유판매증명서 관련 문의 : (전화) 02-2284-1895, (전자우편) cdb1126@keiti.re.kr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